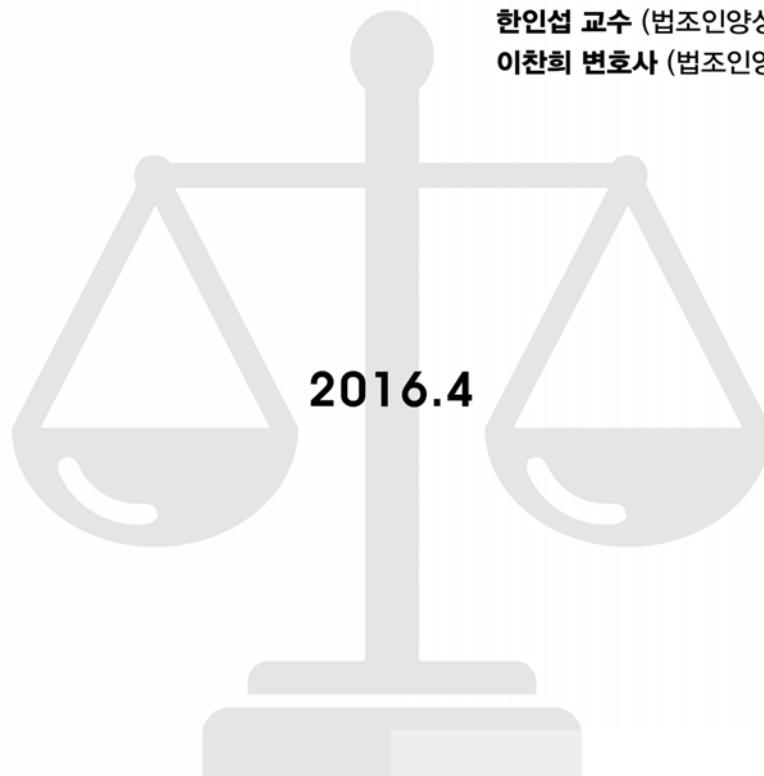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활동보고서

오수근 교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한인섭 교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이찬희 변호사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Contents

목 차

I. 최종보고서

오수근 교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5
한인섭 교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11
이찬희 변호사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19

II. 의견서

오수근 교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27
한인섭 교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119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오 수 근 교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15-2016)

최종보고서 5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최종의견

오수근 교수

1. 자문위원회는 사시존치론의 근거를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이번 설치 운영된 자문위원회는 처음으로 사시존폐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이들과 법무부, 교육부 그리고 법원행정처의 고위 담당자가 한 자리에서 주장의 당부를 따져보는 자리였습니다.
-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수 년간 사시존치 주장은 그 근거나 논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론조성을 위한 선전의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번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선전과 사실을 구분하여 걸러냄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틀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법조인 양성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이번 설치 운영된 자문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분명한 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입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전원의 문제점이 사법시험 존치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대한 비난에서 출발합니다.
- 그 비난의 당부는 차치하고라도 법전원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법전원의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3. 사법시험은 그 폐해가 심해서 폐지된 제도입니다.

- 사법시험은 다음과 같이 그 폐해가 심하여 폐지되었습니다.
 - * 한번의 필기시험으로는 역량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사법시험을 통해서 법률가가 되었는데 지난 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의 무역 역조는 약 1조 1천억원(10억달러)를 넘었습니다.
 - *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공부를 제쳐두고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하여 학부교육을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이러한 폐해가 재현될 것이 분명합니다.

4. 사법시험은 폐지는 국민에 대한 엄중한 약속입니다.

- 사법시험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13년 동안의 논의 끝에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 사법시험은 2008년(법과대학이 폐지되기 전 마지막 입학) 입학한 학생에게 10년의 응시기회를 주고 폐지되는 것입니다.
- 수 많은 국민이 국가가 10년 전에 한 약속을 믿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법을 신뢰한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5.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법조사회는 완전히 양분되어 대립과 갈등이 계속됩니다.

- 사법시험 존폐에 대한 논란 속에서 사법시험 출신 법률가와 법전원 출신 법률가들은 상호 극심한 대립을 보였습니다.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이러한 대립구도는 고착될 것이고 분열된 법조사회로 인해 국민은 사법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6. 사법시험은 결코 취약계층에게 열려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 사법시험은 형식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 사법시험 응시자격은 대학과정에서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고 영어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부여됩니다. 따라서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사법시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예는 없습니다.

- 사법시험은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고 시험 준비에는 학원비와 교재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더욱이 합격할 확률이 3%에 못 미치고, 합격생의 경우 평균 소요기간이 5년 가까이 되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낮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법시험에 경제적인 취약계층은 사실상 도전할 수 없습니다.
-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라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고 시험을 더 잘 보는 학생이 합격하게 됩니다.
-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문호를 개방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고 직접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특별전형을 통해서 법전원에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214명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누구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사법시험에서 합격한 예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7.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오픈 로스쿨이 해답입니다.

-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오픈 로스쿨이 해답입니다.
- 한국방송통신대에 오픈 로스쿨을 설치하여 학사학위 소지자는 누구든지 입학하고, 졸업정원제로 운영하여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법률가가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리게 됩니다.
- 오픈로스쿨은 교육에 의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대 원칙과 법전원의 문호 확대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제도입니다.



법조인양성제도의 현안과 과제에 관한 의견정리

한 인 섭 교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2014-2015)

최종보고서 11





법조인양성제도의 현안과 과제에 관한 의견정리

최종의견

한인섭 교수

1. 로스쿨·사시 병존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률에서 정한 대로 사시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 사법개혁을 위한 로스쿨의 도입은 장기간의 정책검토의 산물이며, 사법시험에 대한 경과적 신뢰는 충분히 보호되었다.

- 로스쿨 도입은 13년간의 범정부차원의 논의(세추위, 사개위, 사개추위 등) 및 사회적 토론의 결과이며, 국회의 법률을 통해 완성한 것이다. 일각에서 로스쿨 도입을 '날치기'라거나 '정략적 타협의 산물'일 뿐이라고 폄훼하나, 이는 사법부-행정부-입법부-시민사회-학계가 관여한 범정부적 정책논의와 입법과정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하다.
- 사시의 점진적 약화와 종국적 폐지는 10년의 과도적 이행과정을 예고한 것이다. 우리 국가정책 중에서 기존 제도로부터의 이행기간을 이토록 장기간 보호했던 예는 이제껏 없었다. 현재 사시 지원인원은 장기적으로 급감하고 있다.
-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시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최근 점차 노골화되어가는 주장들을 보면 사시존치론자 중 일부는 <사시와 로스쿨의 발전적 공존>이 아니라 <로스쿨 폐지를 통한 사시로의 회귀>를 주장하기까지 한다. 이는 사법개혁의 오랜 노력을 일거에 無化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다. 사시존치론의 존재는 끝없는 갈등과 반목, 신 제도의 정착을 혼란시키게 한다. 그러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킬 시점이라고 본다.

나. 사시존치는 단순한 <사시의 연장>이 아니라 <사법시험의 新도입>이다.

- 폐지가 법률로써 확정된 것을 법 개정의 형태로 재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사시의 연장>이 아니라 <사법시험의 新도입>과 마찬가지로. 사시로부터 로스쿨로 전환한 것은 일개 시험의 변화가 아니라, 법조양성시스템 전체의 근본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법학부 폐지, 사법연수원 폐지, 법조일원화 등 많은 부분적 변화가 그 시스템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미 폐지된 사시의 新도입을 위해서는 새로운 범국민적 논의를 장기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할 뿐이다.

- 지난 10년에 걸쳐 사시 폐지를 확고하게 신뢰하고서 직업과 전공을 선택한 수십 만의 시민들이 있다. 대학입시와 전공선택에 있어서의 변화, 사시준비자들의 대폭적 감소가 그 예이다.

다. 사시 부활/新도입이 다투어지면서 법조계는 갈등과 반목으로 황폐화되었고, 일부 기성법조인의 편하와 낙인찍기로 로스쿨 출신 소장 법조인들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입혔다.

- 폐지가 예정된 사시를 억지로 부활/新도입하자고 하면서 소모적 갈등이 격화되었고, 상호존중해야 할 법조계 내부는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 일부 기성법조인들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 및 로스쿨 학생들에 대해 객관적 근거도 없이 금수저, 음서제, 뺑, 부정입학생 등의 낙인을 찍었고, 이로 인해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자존심을 훼손시켰다.. 정당한 비판의 선을 넘은 원색적 비난이 초래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이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라. 로스쿨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 오히려 다수의 기성법조인들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실력과 품성, 열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로스쿨 도입 초기 이른바 ‘반값 변호사’ 운운하며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내비치던 주요 로펌들은 이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무능력에 대해 불신하기는커녕 매년 많은 수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광범위하게 채용한다.
- 경쟁논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로펌들이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앞다투어 채용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보여준다. 누군가는 ‘취업창탁’과 ‘음서제’의 소산 이라고 폄하하지만, 격화되는 법률시장 경쟁 하에서 ‘실력은 없지만 배경만 좋은’ 허울뿐인 법조인에게 ‘취업자리’를 내어 줄 여유가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 법조계의 구성 자체가 변모하고 있다. 연간 120명 이상의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 출신자가 로스쿨에 입학하며, 인적 구성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공익인권변호사’, ‘우리 동네 변호사’와 같이 시민 속으로 파고드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다. 국회·정부 각 부처·교육청·공기업·대학·공공기관 등 다양한 부문에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확산되어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진작에 이바지하고 있다.

- 뿌리 깊었던 사법연수원의 기수문화, ‘끼리끼리 문화’도, 25개로 나누어진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스스로를 ‘승천한 용’에 비유하는 사례 자체가 없다. 변호사 자격은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아닌, 전문직으로서의 제 자리를 되찾아 가고 있다.

마. 잘못된 논쟁구도는 순수사회적 역량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 법률로써 폐지확정된 사시를 다시 연장하려 들 경우, 엄청난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은 2015. 12. 법무부발표 이후의 사태전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법무부조차 애초 입장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하고, 하나의 의견 표명으로 후퇴하였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쉽게 사시연장론을 재론할 일은 아니다.
- 로스쿨의 개선·발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때인데, 〈사시냐 로스쿨이냐〉라는 잘못된 논쟁구도로 인하여 미래지향적 정책방안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
-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여,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며 국민의 기대와 신뢰이익에 부응해야 한다. 법조인양성 교육 및 제도화에서 책임 있는 기관인 교육부 및 사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라 본다.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하기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공청회(2015)에서 박성수[교육부 대학학사제도 과장]의 진술자료.)

1. “로스쿨과 사시가 과도기적으로 병존하는 과정에서 법조계·법학계가 두 패로 갈려 극단적으로 대립·갈등하면서 양쪽 모두 상처를 입고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 (중략) 사시와 로스쿨체제를 병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병존체제를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며,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행정처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회의[2016. 5. 16.]의 진술 취지.)

2. 로스쿨의 투명성 및 공정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 로스쿨 도입 이후 8년간 입시와 학사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된 일은 없다고 보나, 공정성 의혹을 씻고 신뢰를 보다 확고하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대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입시과정상 오해 빚는 부분에서 보다 엄격한 규율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배했을 경우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명시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명목 하에 정량평가 일변도로 하자는 것은 오히려 퇴보적인 처방이다. 이는 몇몇 우수대학의 재학생의 비율을 오히려 훨씬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특별전형, 지역균형이 입시에서 法定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인재선발과 공정성 확보를 조화시키기 위한 면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률적 잣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입시의 자율성을 존중해 나가** 되 그 선발방안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검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계층, 지역, 출신학교 등에서 **균등성을 확장**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정기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점검**받게 할 필요가 있다.
- 입시, 학점 부여 등에서 **이의가 있다면 이를 신고하고 처리할 기구**가 필요하다.
- 가칭 <로스쿨 공정성 심사·평가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이 센터를 독립심 의기관으로 상설화하되, 법전원협의회 산하에 설치하고 교육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강 구될 수 있을 것이다.

3.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안정화하여 예측가능한 자격시험으로 운용해야 한다.

- 현재 변시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응시인원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 연도별 합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시험 자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그 동안 사시와의 병존으로 인하여 변시 합격률을 치밀하게 조정하지 못해 온 측면이 있다. 내 년부터 사시를 통한 법조인 배출이 단절되고, 법조인 배출창구가 일원화되므로 변시 합격률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여유가 생긴다고 본다.
- 변시 합격률은 입학정원 대비가 아니라,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 75%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합격률을 유지하면 로스쿨에서 **변시에 치중한 교육이 아닌 정상화된 법학교육 및 특성화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나아가, <**초시자 기준 상위 80% 선을 커트라인으로 정하고, 재시 이상 응시자의 경우 그 합격 선에 있어 위 초시자의 커트라인을 그대로 따르게 함**>으로 정한다면 질적 기준도 정비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보완적 고려사항으로 제안한다.

4. 미래지향적 대안으로서 예비로스쿨을 방송통신교육의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사시의 부활/新도입은 과거와의 단절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모적 논쟁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법조직역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 다만, 정규 로스쿨에 다니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들에게도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동감한다. 통신교육의 방법을 가미하여 <예비로스쿨을 겸한 방송통신 법학석사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방송통신대에 법학석사과정을 도입하여 입학생을 선발하고 2년 간 법학교육을 실시한 후 방송통신대 석사학위를 수여하며, 상위 200명 가량에게(현행 로스쿨 전체 입학정원의 10%) 로스쿨 편입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원의 누적을 막기 위하여 해당 학생은 총 2-3회의 로스쿨 편입신청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 예비로스쿨에서 취득한 학점의 일부를 정규 로스쿨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약 45학점), 나머지 학점을(약 45학점) 로스쿨 주간 혹은 야간 과정에서 수강한다. 이 편입생에 대하여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업과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 이와 같은 방안의 실현을 통해 현실 여건상 정규 로스쿨에 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이에게도 로스쿨 진입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사설학원이 아닌 <정규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취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이같은 대안은 아직 거칠다. 향후 충분한 토의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이를 위한 기초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안은 기존의 소위 <Open Law School> 안과는 다소 상이하다.



법조인양성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서

이 찬 희 변호사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법인(유한)정률 변호사

최종보고서 19





법조인양성제도의 개선을 위한 의견서

최종의견

이찬희 변호사

I.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 우리 국가가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사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수 없이 많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들어보면,
 - 최근에 최모 변호사 사건으로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된 사법연수원 동기의식을 고리로 하여 편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법조비리와 왜곡된 법조문화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해소
 - 학부전공의 구분 없이 우수한 학생들이 사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대학이 고시원화 되고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황폐화된 대학교육의 정상화
 -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를 교육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매년 몇 백 억씩 사용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
 - 속칭 SKY로 특정되는 소수 특정 대학의 법조인 독점과 이로 인한 폐해 방지
 - 각 지역에 로스쿨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화의 실현
 - 수험생활에 드는 최소한의 기초 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진정한 경제적 빈곤자를 비롯하여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소외계층들의 법조계 진입을 위하여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줄 필요성
 - 암기식 법률교육이 아닌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험을 한 법조인의 양성을 통하여 국민과 소통하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법조인의 배출 등을 들 수 있다.
- 이처럼 많은 폐지의 이유와 필요성 때문에 여야합의로 사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현재 까지도 사시가 가지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하나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더 이상 사시를 존속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

Ⅱ. 로스쿨제도의 문제점과 사시존치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로스쿨의 문제점으로 크게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진입장벽과 입시과정의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속칭 ‘카더라’ 식의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1.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의 법조계 진입 차단 주장’에 대한 반박

- 시험을 합격한 소수자에게만 경제적 혜택을 집중하는 사시보다 오히려 로스쿨이 장학제도를 통하여 서민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로스쿨은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입학할 수 있는 부유층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기반으로 장학금의 수혜자와 금액을 확대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
- 사법시험제도에서는 전혀 경제력이 없는 최하위 계층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교재구입, 생활비 등 수험생활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경비마련이 불가능하여 수험생활을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로스쿨은 장학금제도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현재 이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로스쿨도 있고, 동문회와 연계하여 학비 이외에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전혀 경제력이 없는 최하위 계층까지도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를 확대 시행 중)
- 국공립대와 사립대 로스쿨 모두 등록금 동결과 인하 약속
- 로스쿨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로스쿨의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액의 등록금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서민의 법조계 진입에 있어 장벽이 된다는 주장은, 로스쿨의 인가당시에는 법학도서관을 비롯한 일정한 시설 등 물적 요건을 충족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었으나, 이는 초기 비용으로서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이유없음

2. 입학과정의 불투명성(현대판 음서제도) 주장에 대한 반박

- 신평 교수 사건에 대한 대구지방법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와 같이, 자기소개서에 집안배경을 기재한 것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증명된 바 없음.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금지된 사항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우 불합격의 불이익과 해당 로스쿨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의 조치를 마련하면 이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현재 이번 교육부 전수로 해결되었다고 보아야함
- 입시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입학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을 봉쇄하면 됨.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시청탁을 한다는 것은 로스쿨의 현실상 불가능한 사안임.

Ⅲ. 로스쿨과 사시의 병행은 사회적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 될 뿐이다

- 현재 도입된 지 9년이 경과하면서 로스쿨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로스쿨제도의 개선과 보완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결코 사법시험의 존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비용과 시간 낭비일 뿐이고, 사회적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분열을 가져 올 뿐이므로 양 제도의 병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느 제도를 존속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로 법조인양성제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1. 현 시점에서도 폐지당시에 제기되었던 사법시험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 사시는 대학교육의 황폐화, 고시낭인의 문제, SKY라 불리는 소수 특정대학에 의한 법조계 독점 등 너무도 많은 폐해가 있어서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억울한 수험생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10년(1차를 기준으로 해도 9년)이라는 장기간의 유예기간까지 두었다. 그러나 현재 사법시험의 위와 같은 폐해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로스쿨도 시행초기 인지라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지만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여야합의로 폐지하기로 한 사시를 특정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병행시킨다는 것은 폐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 사시존치는 로스쿨이라는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 로스쿨제도와 사시를 병존시키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일본의 경우 양 제도를 병존시켰더니 소수의 우수한 인재들(저소득층이 아님)이 일정한 교육기간이 의무적으로 소요되는 로스쿨이 아닌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사시에 집중하여 응시하게 되면서 결국 교육제도인 로스쿨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지금 로스쿨제도가 흔들린다면 현재 재학 중인 로스쿨생들뿐만 아니라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로스쿨제도를 염두에 두고 학업계획과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며 백년대계인 교육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3. 양 제도의 병행은 법조계를 출신성분에 따라 이원화하고 지속적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 현재 경력이 짧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중에는 명함에 사법연수원 출신이라고 기재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국민의 기억 속에 개천의 용으로 인식되어 있는 과거 사법시험의 후광과 함께 국가에서 급여를 받으며 교육받은 엘리트로서 로스쿨 출신변호사보다 능력 면에서 우

수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심리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실력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출신신분에 의한 특혜로서 출발선상에서부터 불평등한 것이다. 모든 법조인은 능력에 의해 평가받아야하지 출신에 의해 우대받거나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볼 때 법조인양성과 배출통로는 단일화되어야 한다.

4. 현 교육제도하에서 사시존치는 기형적인 법조인양성을 조장하게 된다.

- 사시가 존치되는 경우 현재 로스쿨인가를 받고 법대를 폐지한 25개 대학은 법대출신의 사법시험합격자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또한 위 25개 대학의 비법대생들은 자신들의 소속 대학교에는 법대가 없고, 다른 대학교의 법대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관계로, 사법시험 준비를 위하여 신림동을 비롯한 고시학원에서 법학을 배워야한다는 기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교육제도가 아니라 목표한 시험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서민들이 아니라 두뇌가 극히 우수한 소수인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우 서민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머리 좋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우리 사회의 소수 우수한 학생들에게 고속 출세의 엘리베이터를 놓아주고 법조계 내의 소수 엘리트 특권층을 형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

- 변호사와 더불어 대표적인 전문직인 의사의 경우를 보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의사국가고시에 의해 자격을 부여받는다. 의과대학을 수료하고 의사국가고시를 합격하는 것 이외에 달리 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아무런 비판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인에게만 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부여받는 이외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병행시켜 선택권을 주어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 또한 현재 우리 사회는 일본식 문화인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선발하자는 취지에서 외무고시를 폐지하였고, 행정고시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사법시험만 존치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격의 결과를 얻지 못한 소수의 기대이익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로스쿨제도를 믿은 다수를 희생자로 만들고 국가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

6. 사법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도 사시는 폐지되어야 한다.

-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사시의 폐지는 예정되어 있었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회는 이에 맞추어 신규 인력의 채용과 교육을 비롯한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현재까지 이에 따라 시행하여 왔는데 사시가 존치되는 경우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예산과 인력의 지나친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변호사회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출신에 따른 갈등과 반목은 조직의 안정성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IV. 누구의 신뢰가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인가

1. 국가를 신뢰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생들의 신뢰보호

- 폐지결정 이후에도 10년이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수험생활을 해 온 사시수험생보다는, 앞으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를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믿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이를 포기하고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하고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엄청난 기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로스쿨출신 변호사와 로스쿨생들의 신뢰가 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2.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한 25개 로스쿨의 신뢰보호

- 로스쿨 유치당시 많은 대학이 엄청난 재정적 투자를 하였고, 이 중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25개 대학이 로스쿨인가를 받았으며, 로스쿨을 유치한 25개 대학은 학부과정의 법과대학을 폐지하면서 신입생을 비롯하여 학사행정 전반을 전적으로 로스쿨제도에 맞추어 운영하여왔으며, 로스쿨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사시응시를 제한하였다. 그런데, 폐지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시가 갑자기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로스쿨 유치를 위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자한 25개 로스쿨의 신뢰가 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3. 막대한 세금을 복지부문 등 사회의 필요한 영역에 투입하는 것이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

- 사시가 존치되면 결국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사법연수원생의 급여를 비롯하여 사법연수원의 운영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거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로 진출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민 혈세의 낭비로 비난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사법연수원의

운영예산을 법원의 다른 부문이나 사회의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국민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

V. 결 어

- 로스쿨제도는 법조인양성제도의 성격도 가지지만 교육제도의 성격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백년대계인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시존치주장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불안과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국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 이제 로스쿨제도가 9년째 운영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국가와 사회의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이번 자문위원회가 사시존치주장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로스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종료되게 된 점은 매우 아쉽다.
- 향후 이러한 성격의 위원회가 20대 국회에도 다시 설치되어 무의미한 사시존치여부를 둘러싼 공방보다는 등록금과 장학제도를 비롯한 로스쿨의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협의체의 구성, 야간로스쿨이나 온라인로스쿨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의 마련,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역의 확대 방안 연구, 로스쿨 입학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적정한 숫자에 대한 파악을 위한 연구 등 로스쿨 제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사법시험 폐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의견서

오 수 근 교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15-2016)



I. 사시 폐지의 당위성	31
1.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시험 폐지와 법전원 도입	31
2.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34
II. 사시 존치 주장의 허구성	36
1. 법전원의 문제점이 사시존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6
2. 사법시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다	37
3. 사법시험은 비용이 많이 드는 시험이다	39
4. 법전원은 충분한 장학제도가 있어 실질등록금은 일반대학원 수준이다	41
5. 법전원에는 이미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많이 재학하고 있다	43
6. 법전원 입학전형은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다	45
7. 교육이 없는 사법시험이 교육이 있는 법전원제도를 보완할 수 없다	47
8. 변호사 채용 시 특혜 의혹은 법전원과 무관한 일이다	48
9. 사법시험은 소수의 특정대학 출신이 독점한다	50
10. 법전원은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고 있다	51
11. 법전원에서는 실무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3
12. 2013년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대해 재론하기로 한 바 없다	56
13. 독일은 로스쿨을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56
III. 사시 존치의 폐해	58
1. 학부교육의 황폐화	58
2. 법전원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59
3. 변호사 배출 이원화로 인한 갈등의 구조화	59
4. 소수대학의 독점	61
5. 고시낭인의 발생	62
6.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양성	63



IV. 법전원의 성과	64
1. 법학교육의 정상화	64
2. 타전공 학부교육의 정상화	65
3. 출신대학의 다양화	65
4. 학점은행 등을 통한 법조인 진출 가능	67
5. 다양한 인재선발	68
6.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	69
 V. 결론 : 사시존치 주장의 본질과 해결책	
1. 사시존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정치적 구호이다	70
2. 사시존치가 필요하다는 근거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	71
3. 오픈 로스쿨로 로스쿨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71
 [별첨자료]	75~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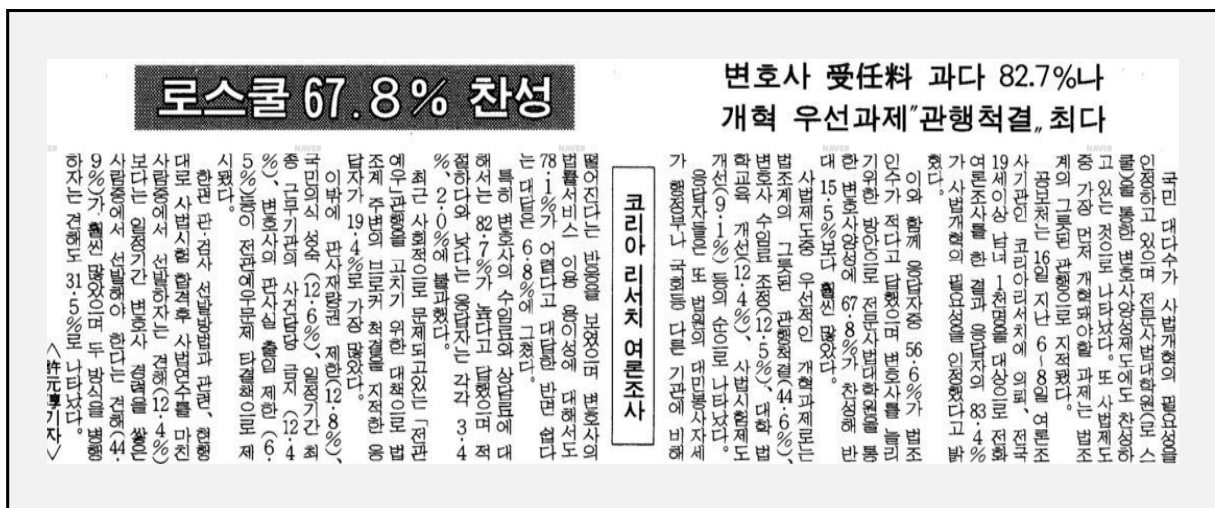
I . 사시 폐지의 당위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시험 폐지와 법전문 도입

■ 사법시험의 폐단 발생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역량있는 법조인 배출의 한계
-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법조인으로 선발되기 힘든 구조
- 전공에 관계없이 사법시험 준비로 인해 타 전공 학부교육의 황폐화
- 장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고시낭인 발생



■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연혁

【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

-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법조인 배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 형성
-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법전문원의 도입 추진

-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인한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한 대비
- 법조시장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변호사 수입료에 대한 비판

【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

- 1998년 교육제도 개편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구성
- 1999년 4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 법전원 제도에 대한 논의 재점화
- 1999년 5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
- 사법연수원 제도 폐지 및 한국사법대학원 설치에 관한 사법개혁안 발표(1999년 12월)

【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

- 2003년 10월 28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의 출범, 법전원 도입 논의 본격화
- 2004년 8월 법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의 입법발의 (법무부 긍정적 검토 입장발표)
- 2004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법전원 도입안 최종 확정
- 2005년 5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 2005년 10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 2005년 10월 27일 국회 제출
- 2007년 7월 3일 일부 수정된 정부 제출안 국회 통과
[제적 187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8명, 기권 20명]
- 2007년 7월 27일 법률 제8544호로 공포, 2007년 9월 28일 시행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 10,000여쪽의 연구보고서가
출간되었고 공청회와 토론회가 80회 이상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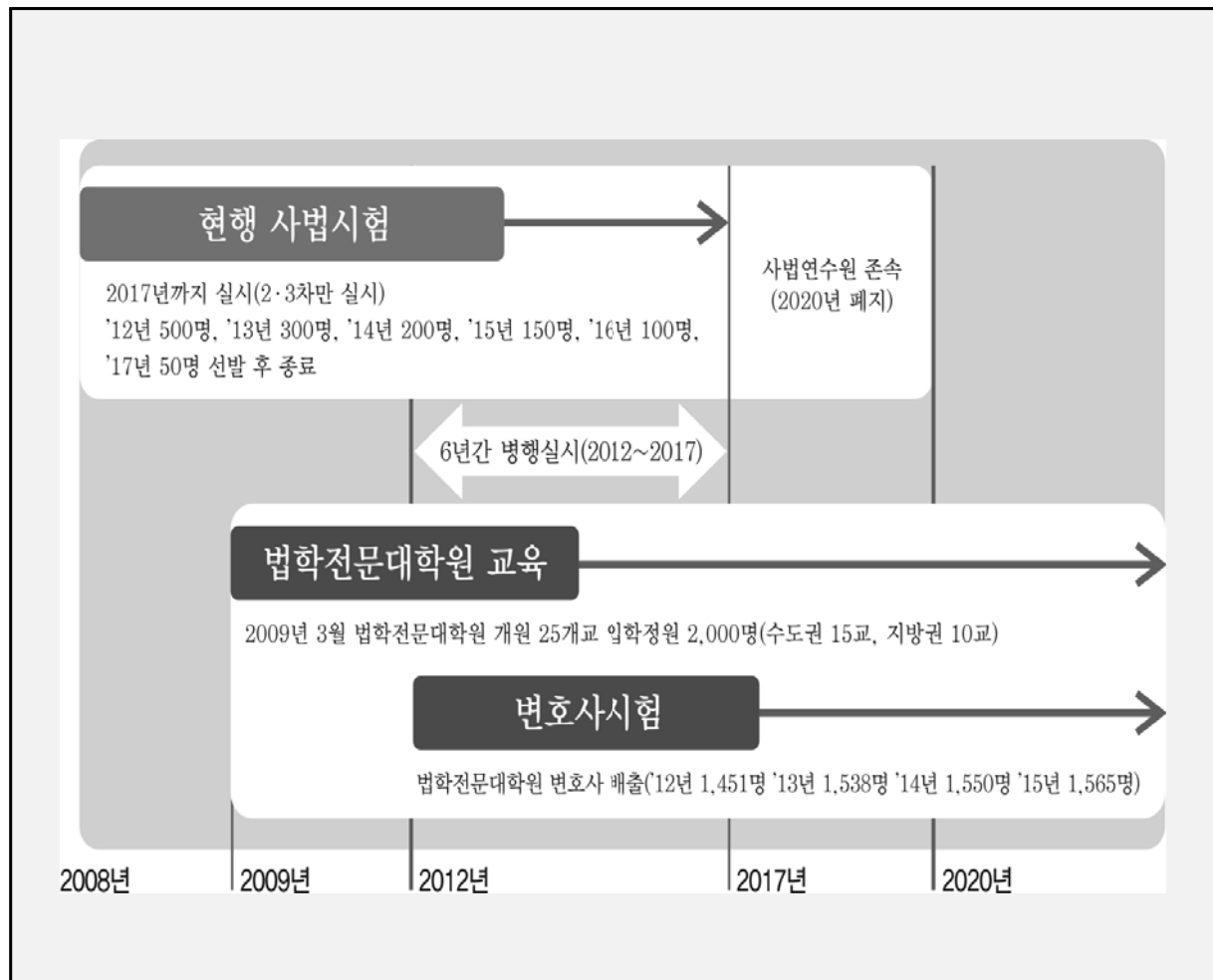
■ 사법시험 폐지 결정

- 2009년 4월 29일 변호사시험법 제정 시 사법시험은 폐지하기로 함
[참석위원 229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5명, 기권 37명]
- 다만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을 실시하기로 함
- 법전원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7학년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사법시험의 평균 합격연령인 만28세에 도달하기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입학 당시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 법전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전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 변호사시험법 시행 전의 사법시험 제1차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시험 응시는 허용하되, 사법시험 응시를 변호사시험 응시로 보아 변호사시험 응시횟수에 산입

【김현】사시를 넘어서 약속된 미래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첫째, 약속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 사시 권력이 계속하여 승계된다면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사시를 존치 또는 유예하겠다는 것은 사법개혁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주입식 암기 위주의 과거시험과 흡사한 시험만 합격하면 일약 개천의 용으로 승천한다는 낡은 출세지향적 구도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일 뿐이다.”

[별첨 19] 김현, 「사시를 넘어 약속된 미래로」 (8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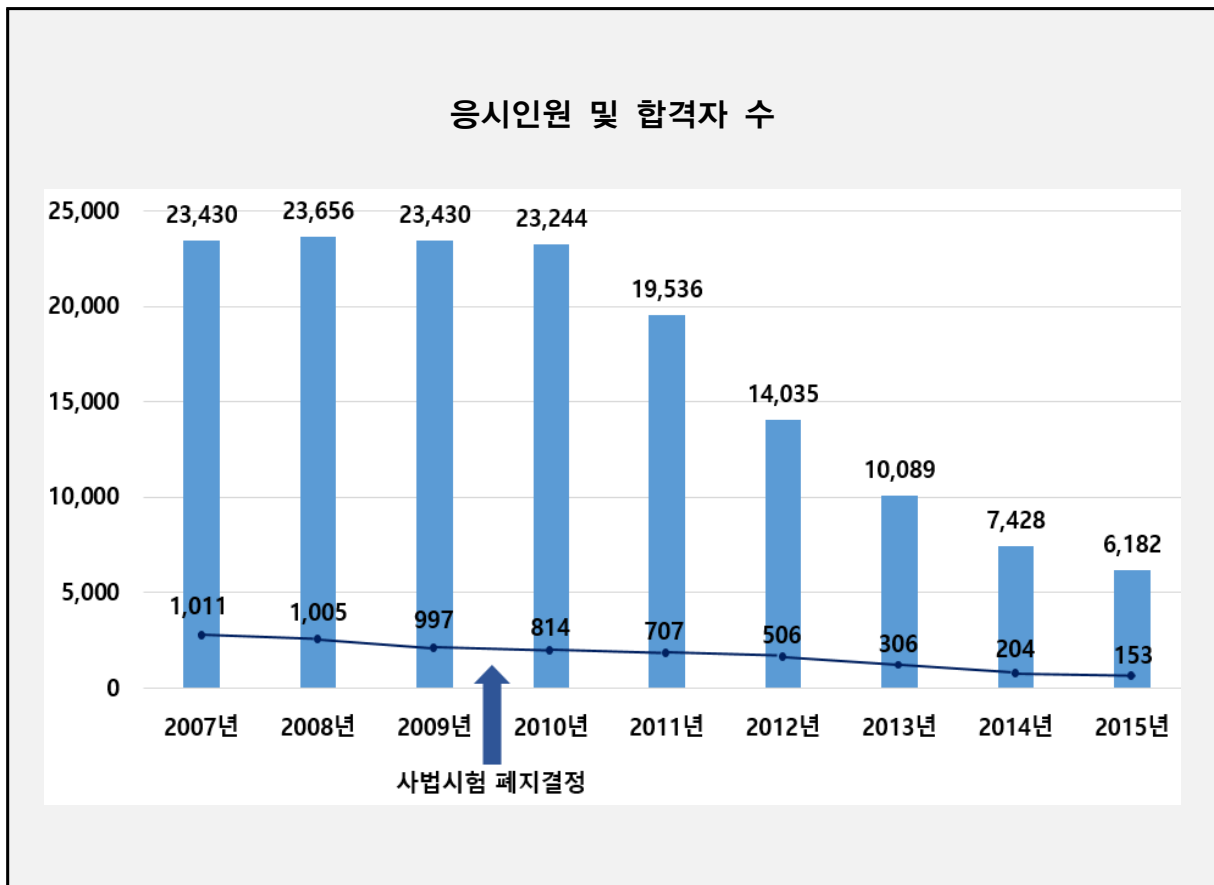
2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변호사시험법 [법률 제9747호, 2009. 05. 28. 제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2009. 04. 29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참석위원 229명 중 찬성 167명, 반대 25명, 기권 37명]

-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전원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를 금함
- 정부정책을 믿고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법전원에 입학해서 법조인이 됨
- 2008년 법전원 출범 전 23,000명 이상에 달하던 사법시험 응시생은 법전원 출범 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한 법률을 믿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함
- 법전원을 두고 있는 25개 대학교는 사법시험 폐지를 전제로 법과대학을 폐지했음. 이에 25개교에 입학하는 학부생들은 법과대학이 없어 다른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음



Ⅱ. 사시 존치 주장의 허구성



1 법전원의 문제점이 사시존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로스쿨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이 우선이지 이를 이유로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할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중략) 경실련은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법시험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로스쿨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을 단일한 교육과정으로 양성하는 방식이 아닌 다원화된 사회 맞는 교육과정을 위해 정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것”이라며 “사시 폐지를 불과 1년 앞두고 사회적 합의 없이 바꾸면 기존의 과도기를 넉넉하게 두었던 취지는 퇴색해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시험 연장, 사법개혁 역행 (법률신문, '15.12.04)」

- 법전원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시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법전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지 문제투성이인 사법시험이 보완책이 될 수는 없음

【천경훈】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

“나라가 망해 가던 19세기 말, 조선에 상비군이라고는 8000명이 안 됐다. 일본과 굴욕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은 지 3년 뒤인 1879년, 정시문과 응시자 수만 21만 3500명이었다. 15명이 합격했으니 경쟁률은 1만 4000 대 1. 합격자 평균 연령은 세종 때 20대 후반이었으나 고종 때에는 38세였다. 평균수명이 40세가 안 되던 시절이다. 정약용, 이익 등 선각자들은 과거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과거제 찬성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을 것이다. 과거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결국 1894년 갑오개혁에서 과거제가 폐지됐지만 조선이 근대화의 격랑이서 살아남기는 이미 늦었다.”

[별첨 18] 천경훈,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 (82p)

2

사법시험은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다

- 사법시험이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희망의 뗏’이거나 ‘희망고문’에 불과함
- 합격률이 고작 2.93%인 사법시험에 사회·경제적·신체적 취약계층이 장기간 공부하고 합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2000년 이후 취약계층이 유의미한 숫자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 1981~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등학교(졸업, 재학, 퇴학) 학력 소지자는 1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0.1%에 불과함
- 2006년~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 중 고등학교 학력소지자 3명(0.05%)임

[별첨 1] 사법시험 합격자 연도별 학력 분포 현황(1981~2015년) (43p)

【이재동】 사법시험,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야

로스쿨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서민들이 진학하기 어렵다는 말이나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언뜻 그럴듯하기는 하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이고, 법조인이 될 만한 지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닐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최근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고졸 출신은 거의 없으며,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해도 그 응시자는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수재들이지 가난해서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중략) 결국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제도로써 이상적인 것도 아니며, 한정된 시기에 그 소임을 다하고 이제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야 할 제도인 것이다. 법조인을 뽑는 제도를 계층들 사이의 이동의 수단으로 보는 낡은 생각도 같이 사라졌으면 한다.

[별첨 17] 이재동, 「사법시험,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야」 (80p)

- 사법시험에서도 대학교육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음
-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제1차 시험에서 어학시험은 토익 700점 이상 성적 등을 요구

[표-1] 사법시험 합격자 학력 분포 현황(1981~2015년)

(단위 : 명)

구분	합격자수	학력 분포 현황				
		대학원 재학이상	대학교	3년제 이하대학	고등학교	기타
인원	19,367	3,878	15,459	9	19	2
비율	100%	20.02%	79.82%	0.05%	0.10%	0.01%

- 반면 법전원에서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보장되고 장학금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음

○ 1~4회 변호사시험에서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중 연 평균 84명(총 334명, '11년~'14년)이 합격함

[표-2]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특별전형 입학자 현황표

구분	합격자	합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경제적 배려자	61명	75명
국가유공자·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 등 사회적 배려자	4명	
장애인 등 신체적 배려자	10명	

[표-3]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회진출 현황 (21개교)

구분	검사	재판 연구원	법무 법인	법률 사무소	변호사 개업	기업	공공 부문	협회	법무관	기타
2012년	2	2	24	9	3	8	15	3	4	1
2013년	1	1	22	9	2	12	4	0	6	1
2014년	2	2	19	13	0	8	9	0	5	2

[별첨 2]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회진출 현황 (44p)

《 사시존치론자의 주장 》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각 단계별 평균비용을 비교한 결과,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에 비하여 최종 변호사 취득자 연령이 약 2.56년 더 소요되고, 전체 기간 동안의 평균 비용도 약 71,614천 원(1.74배) 더 많이 소요됨.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비교하면,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에 비하여 전체 수험기간 동안의 평균 비용이 약 172,189천 원(1.93배) 더 많이 소요됨.” 천도정·황인태, 「법조인 선발제도별 법조계 진입유인 실증분석」 (2014)

- 천도정, 황인태 교수의 법조인 선발제도별 소요비용 추계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비용 개념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변호사시험 준비기간은 3년 가까이 과다하게 추정하였음. 천도정·황인태 연구의 가정은 그대로 두고 오류를 수정하여 재계산하면 사법시험이 변호사시험보다 오히려 1,700만원 정도 적게 소요됨
- 사법시험은 평균 수험기간이 4.79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합격자의 평균일 뿐 그보다 훨씬 오랜 수험생활을 하고도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반면에 법전원은 3년의 수험기간만 필요로 하고 입학생의 75% 이상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므로, 사법시험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든다. 시험공부 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비용뿐 아니라 시험공부를 함으로써 소득행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취득하지 못하는 소득(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사법시험이 법전원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
-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원강의, 교재비, 고시원 비용 등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는 시험임
- 시험의 합격률이 너무 낮아 언제 합격할 지 모르는 사법시험은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들은 도전을 할 수 없는 제도임

천도정/황인태의 법조인 선발제도별 소요비용 추계 비판

〈 ‘16.04.08, 명지대 경제학과 김두얼 교수 〉

- 천도정, 황인태 (2014) (이하 천/황)는 법조인 선발제도별 소요비용을 추계함
- 천/황은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통해 자격 취득까지 드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사법시험을 통하는 것보다 2.55년 길고, 비용도 1억 7천만원 가량 더 소요된다는 결론을 제시
- 천-황의 추계는 두 제도를 비교함에 있어 1)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2) 비용 개념을 부적절하게 적용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이 두 가지 문제는 공교롭게도 모두 일관되게 변호사비용을 심각하게 과다추정한 반면 사법시험을 통한 비용을 크게 과소추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됨.
- 본 연구는 천/황의 추계가 가진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보정치를 제시하기로 함.
- 천/황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되 명백한 오류들을 보정할 경우, 천/황의 보고서는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기간이 0.5년 가량 짧고 비용도 1,700만원 가량 적게 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1-1).

[표-4] 천/황의 추정 결과 및 본 연구의 보정 결과

(단위 : 년, 천원)

구분	변호사시험 (A)		사법시험 (B)		차이 (A-B)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천-황	12.53	356,950	9.98	184,762	2.55	172,188
보정 결과	9.6	279,070	9.98	296,736	-0.38	-17,666

- 이 결과는 천/황의 주장, 즉 변호사시험이 사법시험보다 자격 획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55년 길고, 비용도 사법시험의 두 배 가까이 들기 때문에 1억 7천만원 가량 더 소요된다는 결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결과임
- 즉 천/황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되 개념상의 명백한 오류나 비일관성 문제를 보정할 경우, 천-황의 결과는 변호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데까지 드는 비용을 8천만원 가까이 과다추정한 반면 사법시험을 통해 드는 비용을 1억 2천만원 가량 과소추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시존치론자의 주장 》

로스쿨은 ‘돈스쿨’이란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든다. 2013년 기준 사립대 로스쿨의 평균 1년 등록금은 1821만원(국공립대 993만원)이다. 여기에 주거비, 식·생활비, 교재값 등을 합치면 로스쿨 졸업까지 1억 원 안팎이 든다. 로스쿨들이 인가 당시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을 채우지 못해 비난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한국경제TV, ‘15.12.04)

15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은 2012년 1845만8000원에서 2015년 현재 1919만5000원으로 73만7000원이 올랐지만 장학금지급률은 2012년 44.5%에서 2015년 현재 40.3%로 4.2%p 감소했다. (중략) “로스쿨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성·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돈스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대학 측은 비싼 등록금의 대안으로 높은 장학금지급률을 홍보해왔으나 로스쿨 체제 출범 이후 6년이 지난 현재 사립 대학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서서히 등록금은 인상하고 장학금지급은 줄여 로스쿨 도입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15.09.07)

로스쿨은 비싼 학비로 유명하다. 대학알리미의 2013년 로스쿨 등록금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로스쿨 등록금이 2048만원, 입학금 307만 원, 총액 2355만 원이다. 사립대 로스쿨의 평균 1년 등록금은 1821만 원이다. 국공립대는 사립대의 절반 수준인 993만 원으로 조사됐다. 등록금에 주거비, 식비, 생활비, 교재값 등을 더하면 로스쿨을 졸업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15.12.04)

- 법전원의 등록금이 비싸서 돈스쿨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전원의 풍부한 장학제도를 외면한 주장임
- 2014년도 법전원 등록금 총액의 평균 37.6%인 연간 35,846백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됨
 - 전체 학생의 15.8%가 전액 장학금을 받음
 - 전체 학생의 70.6%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학금을 받음
- 2014년도 법전원의 평균등록금은 연 1,559만원이지만 등록금 총액의 38.1%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등록금은 연 946만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1,257만원)의 70%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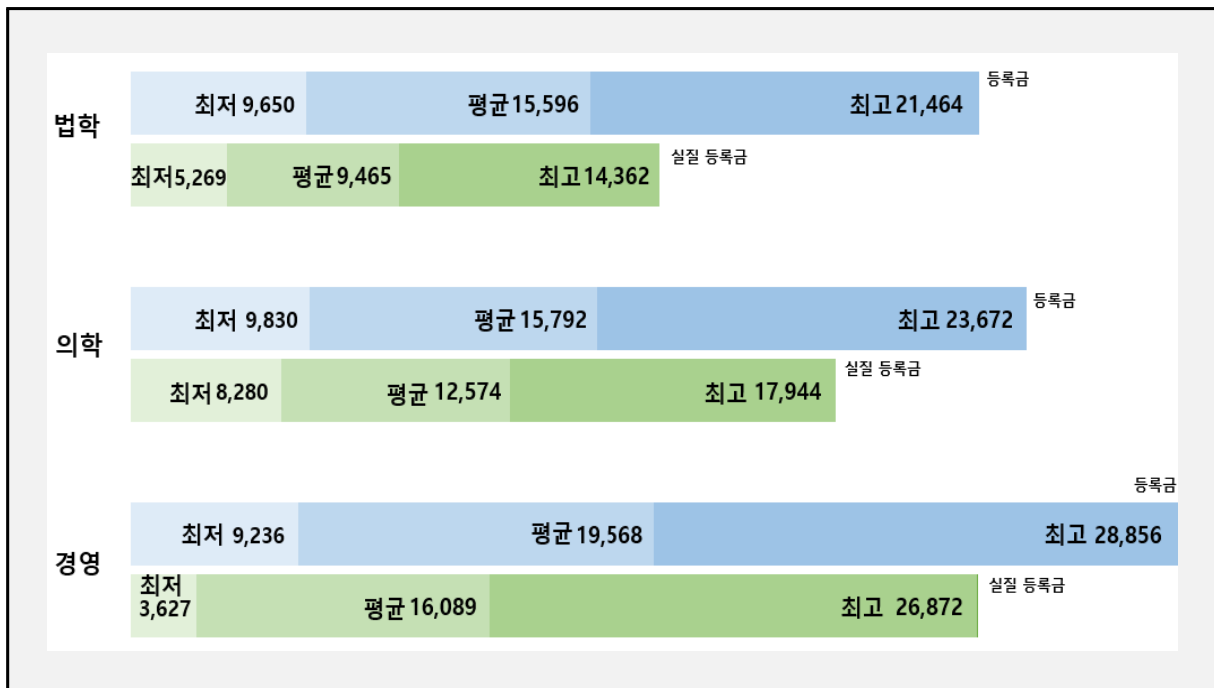
[표-5]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 (2014년도)

(단위 : 천원, %)

구분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최고	21,464	10,855	56.2	14,362
	평균	15,596	6,131	38.1	9,465
	최저	9,650	2,356	23.4	5,269
의학전문대학원	최고	23,672	7,035	34.5	17,944
	평균	15,792	3,217	19.7	12,574
	최저	9,830	1,263	8.8	8,280
경영전문대학원	최고	28,856	5,609	60.7	26,872
	평균	19,568	3,479	22.2	16,089
	최저	9,236	1,214	4.3	3,627

[표-6]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2014년도)

(단위 : 천원)



[별첨 3]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입학금 제외) (2012~2015년도) 참조 (47p)

[별첨 4] 2014년도 법전문 등록금 대비 비율별 장학금 지급인원 현황 참조 (48p)

[별첨 5]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인원, 금액별) (2009~2013년도) 참조 (50p)

[별첨 6]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 장학금 및 실질등록금 비교 참조
(2014년도) (51p)

《 사시존치론자의 주장 》

하 회장은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 4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한다면 법조인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까지 벌였다. 그 이유를 묻자 “저 역시 농촌 출신이다. 사법시험이 없었고 로스쿨만 있었다면 법조인이 될 수 없었을 것”라는 대답에는 힘이 실렸다. (법률저널, ‘15.04.03)

“로스쿨 도입과 5급 공채 등의 축소는 미국식 교육제도의 전면화이며, 신자유주의적 교육제도의 완성이자, 사법제도의 민영화이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현재의 로스쿨이 벌써부터 돈스쿨, 귀족스쿨로 불리고 있듯이 특권 계층의 부의 대물림을 넘어 권력과 명예의 대물림까지 보장하는 제도가 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슈, ‘15.04.25)

김 대표는 “한 사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려면 사회 구성원 간에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신뢰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회의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5.06.18)

이 시장은 “불신과 절망의 시대에 그나마 희망사다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가난한 이들의 유일한 계층이동 기회로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한다”고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선발의 방법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법조인은 나올 수 없고 빈민 소년노동자 출신의 인권변호사 이재명도 다시는 나올 수 없다”며 “개천에서 용 나는 유력한 수단이었던 법조인의 길은 가난한 이들에겐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며 로스쿨이 계층 이동을 막는 족쇄가 될 것이라 경계했다. (국민일보, ‘15.07.28)

- 사시 존치론자들은 서민층이 법전원의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법전원 진학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법전원에는 이미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의 학생이 전체 학생의 20.0%에 이르고 있음

[표-7] 법전원 재학생 가구별 소득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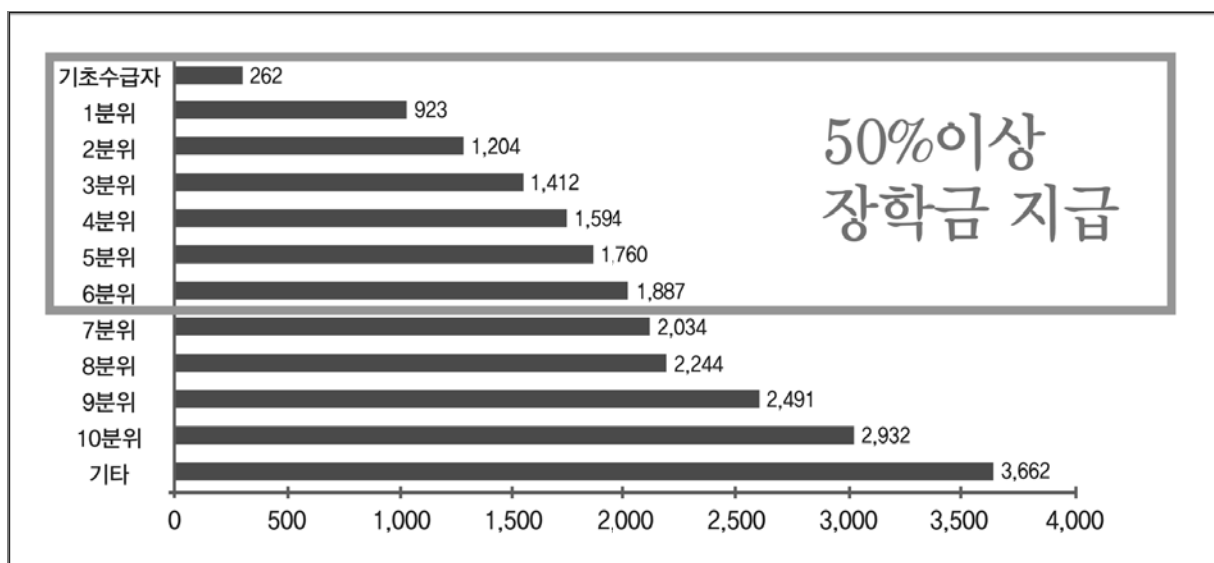
(단위 : 명, %)

가구연소득	지급인원*	비율	누적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2	4.4	4.4
16,760천원 이하	661	10.9	15.3
16,760천원 초과 26,040천원 이하	281	4.7	20.0
26,040천원 초과 33,510천원 이하	208	3.5	23.5
33,510천원 초과 39,720천원 이하	182	3.0	26.5
39,720천원 초과 45,650천원 이하	166	2.7	29.2
45,650천원 초과 52,190천원 이하	127	2.1	31.3
52,190천원 초과 59,790천원 이하	147	2.5	33.8
59,790천원 초과 70,710천원 이하	210	3.5	37.3
70,710천원 초과 88,110천원 이하	247	4.1	41.4
88,110천원 초과	441	7.3	48.7
기타	730	12.1	60.8
합계	3,662	60.8	-

※ 2014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25개교) 장학금 지급 현황 기준

[표-8]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별첨 7] 2014년도 법전원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학생 수 현황 참조 (52p)

- 서울대 법전원은 가구소득 하위 50%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이하 학생에게는 생활비까지 지급하고 있음

서울대 로스쿨생 넷 중 한 명, 가구소득 하위 50% (중앙일보, '16.03.3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과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학생이 71명으로 15.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가구소득 219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 가정의 학생들이다. 중앙일보가 29일 입수한 '서울대 로스쿨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생 466명 중 차상위계층 소속은 62명이고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학생은 9명이다. 이들을 포함해 가구소득 하위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39만원 이하)에 속하는 학생은 총 117명(25.1%)이다.

서울대 로스쿨은 그중 113명에게 등록금(한 학기에 667만원) 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주고 있다. 나머지 4명은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제외됐다. 차상위계층 이하 학생에게는 월 30만~50만원의 생활비를 학교에서 지급한다.

6

법전원 입학전형은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다

《 사시존치론자의 주장 》

교육부는 2일 전국 25개 로스쿨의 최근 3년간(2014~2016학년도) 입학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불공정 입학'의심 사례는 모두 24명이었다. 부모나 친인척 관련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우다. 이 가운데 5명은 부모나 친인척이 누구인지를 표시하고 합격했다. 5명은 각각 "아버지가 ○○ 시장"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아버지가 ○○공단 이사장"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고 작성했다. (국민일보, '16.05.02)

- 법전원 입학 전형이 필기시험 점수 이외에 면접점수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 및 대학입시 등 각종 전형에서 정량적인 평가를 보충하기 위하여 면접 등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성평가 역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 입학원서에 잘못된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정입학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근거 없는 흠집내기에 불과함

- 법전원의 입학전형은 대학본부의 감독 하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 입학전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두 명의 교수가 1조가 되어 학생의 성명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논술 채점을 함
- 면접위원은 외부 변호사 및 타 학과 교수 등을 포함해 3인 1조로 구성하고, 면접관은 수험생의 지원서 등 신상정보를 보지 않고 면접을 진행함
- 법전원의 입학전형은 미국 등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의 입학전형에 비추어 보아도 공평 타당하게 인재를 선발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음

[표-8] 전형방법 예시

전형방법 및 내용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비고
		1단계	2단계	
「일반전형」 •LEET 성적: 20점 •대학성적: 20점 •어학성적: 20점 •서류평가: 25점 [합계: 85점]	「일반전형 우선선발」 •1단계 합계점수: 85점 •2단계 구술면접: P/F [합계: 85점]	「우선선발」 총점 순위에 따라 50명 이내 선발	「우선선발」 구술면접심사 (P/F) 후 최종합격 여부 결정	•LEET 논술은 서류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함 •TOEFL은 IBT만 인정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TOEIC은 인정하지 않음
	「일반전형 일반선발」 •1단계 합계점수: 85점 •2단계 구술면접: 15점 [합계: 100점]	「일반선발」 총점 순위에 따라 우선선발 제외한 인원의 3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특별전형」 •LEET 성적: 20점 •대학성적: 20점 •어학성적: P/F •서류평가: 25점 [합계: 65점]	「특별전형」 •1단계 합계점수: 65점 •2단계 구술면접: 15점 [합계: 80점]	「특별전형」 총점 순위에 따라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일정 인원 선발		

[별첨 8]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반영비율(2단계) (57p)

[별첨 9] 2016학년도 학교별 면접 반영비율 (58p)

[별첨 10] 2016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59p)

《 사시존치론자의 주장 》

“2009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법조인 배출인원의 증가를 도모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지 5년 만에 그동안 우려하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질 저하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학교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대학졸업자에게 3년간의 법학교육을 통하여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3년 내에 이론교육, 실무교육, 시험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도입되었다. 기존의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제도에서는 4년의 법과대학 이론교육, 3-4년의 시험 준비과정, 2년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을 거치는 등 총 8-10년간에 걸쳐서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3년에 마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성명서(‘15.08.31)」

- 사시 존치론자들은 법전문 교육이 부실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비교의 대상이 잘못된 것임
- 법전문이 도입됨으로써 고시원에서 시험 준비를 하던 이들이 교실에서 교육을 통해서 법학을 공부하게 된 중요한 변화가 있음에 주목해야 함
- 예상답안을 단순히 외우는 공부에서 경쟁력 있는 법률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하게 되었음
-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공교육을 폄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사법시험이 투명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주장하나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법조인 자격 취득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중에 단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필기시험만으로는 법률가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 사법시험은 시험 합격을 위해 독학으로 예상문제와 답을 외울 수 밖에 없어서 법률가로서의 기초적인 역량을 쌓기 어려운 반면, 법전문 제도에서는 교육기간 중 여러 과목에서 다양한 학습 방법(토론, 모의재판, 리걸클리닉, 인턴 등)을 통해 필요한 역량에 쌓을 수 있음

《 사시존치론자의 주장 》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 갑)이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디스플레이가 경력변호사(4년 이상) 채용 공고를 내자, LG디스플레이 한상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로스쿨을 졸업하고 수습 중인 자신의 딸이 지원했다고 알리면서 부적절한 청탁을 해 취업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로이슈, '15.08.18)」

- 사시 존치론자들은 변호사 임용 시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들의 주장은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음
- 사시존치론자 및 언론보도는 LG디스플레이가 1명 채용모집공고를 내었는데 윤후덕의원의 자녀를 뽑기 위해서 없던 자리를 만들어 2명을 뽑았다고 주장하나, LG디스플레이는 채용공고에서 처음부터 모집인원을 0명으로 표기하여 여러 명을 뽑을 계획이었음
- 사시존치론자 및 언론보도는 LG디스플레이가 공정거래 실무경력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런 경력이 없는 윤의원의 자제를 뽑았다고 주장하나 공정거래 실무경력자는 윤후덕의원의 자녀가 입사 한 이후에 게시된 공고에 의한 별개의 채용 건이었음
- 위와 같은 사실은 이미 최초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정정보도결정(2015. 11. 23.) 및 대한민국검찰의 혐의없음 처분(2016. 1. 6.)에 의해 명백히 밝혀짐

檢, ‘딸 취업 특혜 의혹’ 윤후덕 의원 ‘무혐의’ 처분 (뉴시스, ‘16.01.08)

“검찰이 ‘딸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59)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뇌물죄 및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윤 의원 딸의 취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채용담당자 조사 등 증거를 살펴봤을 때 혐의가 없음이 명백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 설사 그러한 의혹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법전원 제도 자체를 탓할 문제는 아님. 연평균 43명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지만(2010~2014년 평균) 그것을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라고 하지는 않음

[표-9] 최근 5년간 변호사 징계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징계결정	정직	과태료 처분	견책	기각	각하
2010년	29	3	21	2	0	3
2011년	37	4	24	2	2	5
2012년	48	6	28	1	0	13
2013년	49	5	34	3	1	6
2014년	56	5	43	3	0	5

* 각하는 변호사법상 결격사유로 등록취소된 자임(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 법전원의 일부 문제점을 이유로 여론을 호도시켜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십수년간 논의한 사법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이며, 오히려 법조계 전관예우 타파 등 근본적인 법조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임

《 사시존치론자의 주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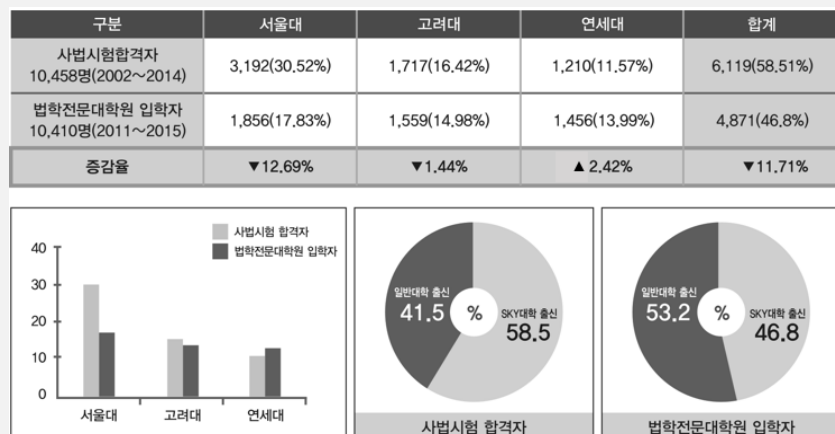
이 교수는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비 명문, 지방대 출신들도 사법시험 성적과 사법연수원의 투명한 성적으로 인해 학부 서열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법조 주류 직역으로 진출할 수 있지만, 현행 로스쿨 체제는 학부의 서열화가 곧장 로스쿨로 이어져 대학 서열화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고착시키고, 패자부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이슈, '14.09.20)

과거 사법시험과 비교해서 볼 때 사법시험에는 이른바 SKY학부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의 검사 비율이 66%였는데 로스쿨 체제로 가서는 그 비율이 75%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로스쿨끼리 안배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학부 비율을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SBS, '15.08.21)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위 'SKY'대학 출신은 전체의 48.4%(7,034명)였다. 다만 2009년 53.9%, 2010년 51.1%, 2011년 46.0%, 2012년 46.9%, 2013년 45.0%, 2014년 47.9%, 2015년 47.6%로 이들 대학 출신들의 점유율은 다소 유동적이었다. 2013년 기점으로 하락에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법률저널, '15.11.27)

- 법전원 입학 시 소수의 대학출신들이 독점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름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법전원이 없는 대학의 법학전공자들이 사법시험 합격의 기회를 갖을 것으로 기대하나 실재는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이 대부분의 합격생을 배출하게 될 것임

[표-10]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점유율



《 사시준치론자의 주장 》

사법시험 출신 2천여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이하 대법협)가 로스쿨 학생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향해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충분한 법학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부터 하라고 질책하고 나섰다. (법률저널, '15.12.29)

서울변회는 ‘로스쿨 도입 7년이 지났지만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부실한 실무교육과 인가조건 불이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15.03.24)

- 법전원의 학사관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나 법전원은 엄정한 상대평가, 유급제도, 졸업시험과 연계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통해 재학생들의 학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엄정한 학사관리
 - 강력한 유급제도 시행, 성적 절대평가 폐지, 모든 과목 엄정한 상대평가
 - 상대평가 시 학점인플레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배분비율 설정
 - 재학년한 최대 5년 이후 자동 제적

[표-11] 3기 법전원생의 유급 및 졸업시험 탈락자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인원(명)	60명	18명	17명 유급+90명 졸업시험 탈락	185명
입학정원 대비	3%	0.9%	5.35%	9.25%

[별첨 11] 2014학년도 법전원별 재학생 학사경고, 유급 현황 참조 (64p)

모의시험을 통한 학업 성취도 평가

-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론, 실무),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헌법재판소, 경찰청, 로펌변호사 등 100여명의 출제위원이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 출제
-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출제진의 해설, 출제의도 및 문항별 정답률 공개
- 모의시험 출제진들이 직접 작성한 해설집 발간을 통한 체계적 학습기회 제공

[표-12] 연도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시행횟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행횟수	1회 (7월)	2회 (8, 10월)	3회 (6, 8, 10월)	3회 (6, 8, 10월)	3회 (6, 8, 10월)	3회 (6, 8, 10월)

《 사시준치론자의 주장 》

주입식 이론 교육의 비중이 높았던 기존 법대 학부 강의와 달리 로스쿨이 내세웠던 것은 실무 교육의 강화였다. 그러나 실제 진행되는 실무 교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많은 학교에서 민사법 실무, 형사법 실무 등의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학부에서 배우는 소송법과 연습과목 등을 이름만 바꿔 강의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일보, '10.10.17)

- 법전원에 실무교원이 부족하고 실무교육이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
-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분야 경험이 있는 실무경력 교원 비율이 전임교원의 20% 이상인 42.3%가 확보됨

[표-13] 2012년도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결과

(단위 : 명)

구분	법정 전임 교원수 (A)	법조실무 경력 전임교원수 (B)	확보율 (B/A)× 100	구분	법정전임 교원수 (A)	법조실무 경력 전임교원수 (B)	확보율 (B/A)× 100
강 원 대	20	9	45.0%	영 남 대	20	11	55.0%
건 국 대	20	8	40.0%	원 광 대	20	10	50.0%
경 북 대	30	11	36.7%	이 화 여 대	25	11	44.0%
경 희 대	20	9	45.0%	인 하 대	20	6	30.0%
고 려 대	30	15	50.0%	전 남 대	30	7	23.3%
동 아 대	20	13	65.0%	전 북 대	20	8	40.0%
부 산 대	30	13	43.3%	제 주 대	20	7	35.0%
서 강 대	20	6	30.0%	충 앙 대	20	7	35.0%
서 울 대	38	18	47.4%	충 남 대	25	10	40.0%
서울시립대	20	7	35.0%	충 북 대	20	6	30.0%
성 군 관 대	30	18	60.0%	한 국 외 대	20	8	40.0%
아 주 대	20	8	40.0%	한 양 대	25	12	48.0%
연 세 대	30	13	43.3%	합 계	593	251	42.3%

- 법전원은 판사 및 검사 등 법조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연구 및 강의능력이 뛰어난 현직 법조인을 교원으로 활용하여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 내실화를 기함

[표-14] 2015년도 각 기관 파견 교수현황

구분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경찰청
1학기	민사재판실무 (25개교 11명)	검찰실무 (25개교 8명)	경찰실무 (9개교 4명)
2학기	형사재판실무 (25개교 11명)	검찰실무 (25개교 8명)	경찰실무 (16개교 7명)

-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관에서 실무수습 기회 제공
 - 법전원협의회에서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경찰청, 국세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
 - 25개 법전원에서도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 국내외 권위있는 협력기관과의 인턴십 프로그램과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기회 제공

[표-15] 각 기관별 실무수습 현황

구분		실습 기간	실습 장소	실습 대상	실습 인원
법원	기본과정	2015. 1월(2주)	각급 법원	4학기 이상	약 250명
	심화과정	2015. 1~2월(4주)			약 250명
국회	제1차	2016. 1~2월(2주)	국회 의정관 및 상임위 등	3학기 이상	약 60명
국세청	하계	2015. 7월(2주)	법전원 소재 지방청	2학기 이상	약 40명
	동계	2016. 1월			약 40명
경찰청	하계	2015. 7월(2주)	지방청, 경찰서 등	2학년 이상	지원자 최대 수용
	동계	2016. 1~2월			
사법연수원	하계	민·형사 기초 / 민사 심화 / 형사 심화 각 2015. 7월(1주)	사법연수원	2, 3학년	지원자 최대 수용
국방부	하계	2015. 7월(12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2, 3학년	법전원별 1~2명
	동계	2016. 2월			

*이 외에도 검찰, 로펌, 국가기관 등에서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음.

■ 리걸클리닉에서 다양한 소송과 법률상담을 경험

- 복잡다기한 법적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추기 위한 실무교육 역량강화방안의 하나로 리걸 클리닉을 운영함

[표-16] 연도별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법률상담	1,591건	2,084건	2,531건
소송	147건	299건	345건

[참고] 리걸클리닉 주요 활동 예시

지역사회 및 무변촌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의 공익성

공익변호사모임 ‘위안’과 연계, 태안 해병대 캠프 실종사고(’13. 07.) 유가족 법률지원 [고려대]
 참법률지원단(전공교수, 지도변호사, 학생)이 무변촌에서 법률상담 실시 [중앙대]

사회적 취약계층의 우선적 처우

‘노숙인다시서기센터’와 정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 실시 [연세대]
 배달청소년 노동자 지원(배달노동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불합리한 일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유관기관에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현황 알리는 등) [전남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기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이화여대] 난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난민인정을 위한 법적 절차 및 난민소송 수행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한 ‘난민클리닉 개설’ [한국외대]

공익사건의 발굴 및 수행

장애우 관련(장애등급 심사) 소송, 환경관련 사건의 공익사건 수행 [강원대] 공익인권클리닉(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활동 등 소송지원) 운영 [고려대]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및 특성화사업의 활동,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법률상담 등을 통해 공익소송 발굴·수행 [전남대] 재학생들의 법률지원을 통해 리걸클리닉 공익소송 국내 첫 승소(채무부존재확인) [한양대]

학교별 특성화와 연계된 리걸클리닉 운영

아주대(중소기업법무) :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법률정보에 취약한 중소기업대상 외부 현장 리걸클리닉 실시, 계약서 검토 등 법률문제 사전 예방

이화여대(생명의료법,젠더법) : 젠더법클리닉을 설치하여 여성인권과 관련된 실제 사건

한국외대(국제지역법) : 국제난민지원 NGO인 ‘피난처’와의 소송전략의 수립·운영

- 2009년 국회 법사위에서 변호사시험 법안 논의시 2013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은 사법시험 존치여부가 아닌 예비시험이다.

제282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2009. 04. 29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주영 의원 보고 부분

“한편, 예비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파행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또 고시 낭인의 양산 우려, 가난한 사람의 등용문으로 예비시험제를 두자는 취지와는 달리 로스쿨 3년 장기 교육을 피해서 단기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부자들이 사교육을 통해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질 우려가 큰 점 등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시험 제도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서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별첨 12] 제282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2009. 04. 29) 중 변호사시험법안 심의 관련 부분 참조(65p)

〈2011헌마76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 확인〉

7.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매년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대비75% 이상)과 시험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제도가 논의되고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나아가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가 1984년 이를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 독일의 사례와 우리와 유사한 법학전문대학원-신사법시험체제가 이미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독일은 로스쿨을 도입한 적이 없다.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송석윤_독일에서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로 세간에서는 독일이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가 1984년 이를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 제도로 회귀했다는 주장이 거듭하여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백여년전부터 대학교육과 법률가 자격시험이 연계되어 있었는데 단지 1971년에 몇몇 대학에서 실무연수과정을 대학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실험을 했고 이후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미국식 로스쿨이 존재한 적도, 이를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별첨 15] 송석윤, 「독일에서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76p)



Ⅲ. 사시 존치의 폐해

1

학부교육의 황폐화

-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전공을 불문하고 학부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되어 각자의 전공공부를 소홀히 하여 학부교육이 황폐화 될 것임
- 사시폐지의 이유였던 고시망국론이 재현될 것임

■ 법대 ‘썰렁’ 고시원 ‘북적’(한겨레, 1995. 02. 18.)

“대다수 법대생이 학교수업을 소홀히 한 채 저학년 때부터 고시전문학원에서 시험준비에 몰두하고 있어 법과대학이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간 생략> 법대 입학동기 2백70명 가운데 2백명 가량이 이미 고시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3·4학년생들은 아예 학교수업을 빼먹고 고시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다.” <중간 생략>

학원에는 법과대학 교수, 현직 판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생까지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대교육의 파행적인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시열풍에 멎든 대학(동아일보, 1996. 12. 26)

“서울대 고시학원화” 비판의 소리

고시과목 수강생 60%가 法大의 학생

이런 고시과목이나 법대 과목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교수는 이러한 분위기를 법대생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에서 “법대에 들어오는 바로 「법부」 사시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대법원의 학생들은 대체로 2학년 때부터 사법연수원에 들어가 사시과목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고 있다. 법대생들은 심지어 “지금 법학 전공의 대학원과정 에 진출한 학생의 과수들 제외한 전체의 5분의 4 정도가 「이」 고시와 관련된 학습을 하고 있다. 법대생들이 사시와 관련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직의 변호사나 판사를 방문해서 사시 등 국가시험을 준비한다”고 비판했다. (李澈容기자)

사법시험을 각종 국가고시 때문에 서울대가 대안고시학원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서울대 교수 에 의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 법대 최대권(최대권)교수는 최근 교육부가 발간한 「대학 학부 교육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 방책」에 게재된 「학부교육과 법학교육」이란 부분에서 “지금 서울대 법대의 경우 고시과목 수강생의 2분의 1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정치 외교 경제 학과를 필수로 인문대 사회대 사 법대 자연대 공대 학생들로 구성 돼 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것이 대학이나 대학의 시 각에서 보면 자기과목의 심화 학습은 학생이 자기과목에는 관심을 갖는다”고 지적

崔大權교수 논문서 지적

〈최대권_성공적인 로스쿨 체제를 사시존치 주장으로 흔드는 이유가 나변(那邊)에 있는가?〉

“종래에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 일학년 때부터 고시과목 위주의 암기식 공부를 하고 강의 수강도 고시과목 위주로만 했다. 법대생의 경우의 비사시법률과목은, 타과생의 경우 자기 전공과목은, 겨우 학점이나 따는 정도였다. 정치학과를 비롯한 사회대 인문대 등 여러 학과의 경우 과가 텅 빌 정도로 자기 전공과목은 팽개치고 고시학원 수강 등 고시공부에만 매달려 가히 캠퍼스 전체가 고시준비로 황폐화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로스쿨 체제는 대학 전체를 살리는 조치이기도 했다.”

[별첨 16] 최대권, 「성공적인 로스쿨 체제를 사시존치 주장으로 흔드는 이유가 나변(那邊)에 있는가?」 (78p)

2

법전문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 사법시험이 지속되면 법전문생들의 사법시험 응시를 막을 합리적 근거가 없음
- 법전문 재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임
 - 법전문 재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를 하면 법전문 수업을 등한시 하게 되어 법전문 수업분위기를 해치게 됨
 - 사법시험 합격으로 인한 자퇴가 발생한 경우 충원이 어렵게 되어 특히 소규모 법전문원의 경우 폐강과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
 - 법전문 설립 취지인 국제화, 특성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취지가 훼손됨

3

변호사 배출 이원화로 인한 갈등의 구조화

- 사시 존치론자들은 법전문 출신 변호사와 사시 출신 변호사가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전에도 변호사들 사이에 편차가 존재했으며, 현재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의 사법서비스 제공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사법시험 합격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게 되어 양자 간의 불균형 발생 동일한 전문자격 취득하는 데 있어 일방에게만 국가재정이 지출되는 불평등한 상황 발생

- 사시 존치론자들이 예를 들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변호사 선발과 법관 선발이 구별된 제도인 것으로, 애초에 동일한 자격을 갖는 사람들을 다른 제도를 통해 선발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경쟁은 시장에서 개별 변호사의 역량으로 하는 것이지 어느 시험 출신인 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님
- 법전원과 사법시험을 병행하면 법전원 출신 변호사 집단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집단 간의 갈등이 구조화되고 공고화되어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저해함

■ 지방 분산에 역행

-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지방 대학생들이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대학이 합격생을 배출하게 됨
- 법전원을 통해 다수의 법률가가 배출되어야 지방 대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짐
- 사법시험은 신림동에서 수험하게 되나 법전원의 절반은 전국에 흩어져 있음

[표-17] 권역별 법전원 현황

(단위 : 명)

권역	인가대학수 (입학정원)	대학명	입학 정원	권역	인가대학수 (입학정원)	대학명	입학 정원
서울 권역	15개교 (1,140명)	건국대	40	대전 권역	2개교 (170명)	충남대	100
		경희대	60			충북대	70
		고려대	120				
		서강대	40	광주 권역	4개교 (300명)	전남대	120
		서울대	150			원광대	60
		성균관대	120				
		서울시립대	50			제주대	40
		연세대	120				
		이화여대	100				
		중앙대	50	대구 권역	2개교 (190명)	경북대	120
		한국외대	50			영남대	70
		한양대	100				
		아주대	50	부산 권역	2개교 (200명)	동아대	80
		인하대	50			부산대	120
		강원대	40				
서울권역 합계			1,140	지방 4대권역 합계			860

[표-18] 10대 대학 점유율 비교

상위 10개 대학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2002-201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2011-2015)		증감율
서울대	3,192	30.52%	1,856	17.83%	▼12.69%
고려대	1,717	16.42%	1,559	14.98%	▼1.44%
연세대	1,210	11.57%	1,456	13.99%	▲2.42%
성균관대	705	6.74%	678	6.51%	▼0.23%
한양대	642	6.14%	592	5.69%	▼0.45%
이화여대	540	5.16%	686	6.59%	▲1.43%
부산대	274	2.62%	222	2.13%	▼0.49%
중앙대	195	1.86%	208	2.00%	▲0.14%
경북대	191	1.83%	197	1.89%	▲0.06%
경희대	188	1.80%	301	2.89%	▲1.09%
합계	8,854(84.66%)		7,755(74.50%)		▼10.16%

-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8,854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84.66%를 차지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 중 10대 대학 출신자는 7,755명으로 전체 입학자 중 74.5%를 차지했다.(▼10.16%(P))

5

고시낭인의 발생

- 사법시험이 존속되면 무한정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는 고시낭인의 발생이 필연적임
- 법전원 진학 희망자는 자신의 전공을 열심히 공부함으로 법전원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진로로의 선택이 수월한 반면, 사법시험 준비생은 학부공부를 등한시하고 시험준비만 하게 되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진로로 진출하기가 어려워 계속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
- 명문대에 입학하여 주변의 기대를 받고 고시공부를 하다가 불운하게도 결과가 좋지 않아 미래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사회 문제를 양산함

- 사법시험이 존치하게 되면 사법연수원 운영을 위하여 국가재정을 사용하게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를 양성하게 됨
- 만약 사법시험으로 매년 200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할 때 사법연수원생 및 교원 인건비로 약 143억원이 매년 지출될 것으로 추정됨(1,000명 운영 시 500억 소요되었음)

[표-19] 사법연수원 인건비 추정금액

(단위 : 천원)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사법 연수원생 인건비	(1년차) $200\text{명} \times 1,738\text{천원} \times 12\text{개월} = 4,171,200\text{천원}$ (2년차) $200\text{명} \times [(1,816\text{천원} \times 12\text{개월})$ $+ \{90,800\text{원}(\text{정근수당}) \times 2\} + 364,980$ $(\text{봉급조정수당})] = 4,467,716\text{천원}$	8,638,916	사법연수생 의 보수에 관한 규칙
교원인건비	교원 42(명), 직원 30(명) = 57억	5,700,000	
합 계		14,338,916	

※ 시설관리비 미포함, 교원 1인당 인건비 1억 추정 (3급 20호봉이상 추정)

-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대다수가 판·검사 등 공직에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연수기간 동안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IV. 법전원의 성과

1

법학교육의 정상화

- 수험 법학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패러다임 전환, 고시원에서 이루어지던 법학공부가 법전원 도입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오게 됨
- 전문직 교육은 '지식습득'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의 두 단계로 이루어짐. 사시제도 하에서는 이 중 독학으로 '지식습득'을 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어 법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음
- 법전원체제 하에서 비로소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짐. 즉 교수와 학생간의 질의응답, 토론, 모의재판, 리걸 클리닉, 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짐
- 법학이론과목과 실무과목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므로써 '지식습득'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짐
- 학생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신뢰증가
 - 교수의 수업충실도 향상
 - 학생의 출석률 향상

2

타전공 학부교육의 정상화

- 학부 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사법시험 공부에 매달리는 대신 각자의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어 타전공 학부교육이 정상화됨
- 다양한 전공을 제대로 공부한 이들이 법전원에 입학함으로써 법률가의 잠재력 역량이 증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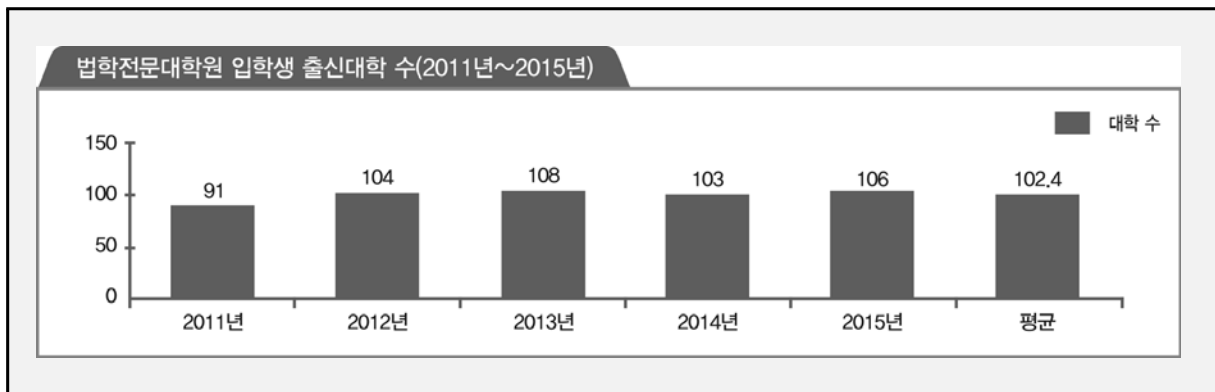
3

출신대학의 다양화

-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교에 비해 법전원 합격자 배출이 다양화 됨
- 법학전문대학원은 매년 평균 102.4개 대학에서 입학생 배출
- 사법시험은 매년 평균 40.6개 대학에서 합격자 배출

[표-20]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와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총 수

2011~201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VS	2002~2014 사법시험 합격자	
지 역	출신대학 수		지 역	출신대학 수
서울	34개		서울	25개
경기/강원	20개		경기/강원	15개
충청	19개		충청	11개
경상	27개		경상	18개
전라/제주	13개		전라/제주	11개
계	113개		계	80개



[표-21] 10개 대학별 현황

상위 10개 대학	사법시험 합격자 10,458명(2002~201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10,410명(2011~2015)		증감율
서울대	3,192	30.52%	1,856	17.83%	▼12.69%
고려대	1,717	16.42%	1,559	14.98%	▼1.44%
연세대	1,210	11.57%	1,456	13.99%	▲2.42%
성균관대	705	6.74%	678	6.51%	▼0.23%
한양대	642	6.14%	592	5.69%	▼0.45%
이화여대	540	5.16%	686	6.59%	▲1.43%
부산대	274	2.62%	222	2.13%	▼0.49%
중앙대	195	1.86%	208	2.00%	▲0.14%
경북대	191	1.83%	197	1.89%	▲0.06%
경희대	188	1.80%	301	2.89%	▲1.09%
합계	8,854(84.66%)		7,755(74.50%)		▼10.16%

※ 상위 10개 대학의 점유율이 낮아짐

■ 지방대학의 비중이 확대

- 출신 대학의 2.5배 다양화(연평균 40.6개교→102.4개교)
- 지방대학 출신 60% 증가(12.03%→19.68%)

■ 지역인재들의 법조인 진입장벽이 낮아짐

- 2015학년도부터 도입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인재 일정비율 선발을 통해 180명 입학(강원·제주: 정원의 10%, 그 외 지역: 정원의 20%)

[표-2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발 현황

대 학 명	입학정원	선발현황	
		인원(명)	비율(%)
강 원 대	40	4	10.00
경 북 대	120	28	23.33
동 아 대	80	22	27.5
부 산 대	120	27	22.50
영 남 대	70	12	17.14
원 광 대	60	13	21.67
전 남 대	120	28	23.33
전 북 대	80	13	16.25
제 주 대	40	2	5.00
충 남 대	100	19	19.00
충 북 대	70	12	17.14
계	900	180	19.89

4

학점은행 등을 통한 법조인 진출 가능

- 방송통신대·독학사·학점은행·사이버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법전원에 입학한 사람(57명)은 사법시험 합격자(20명)보다 2.8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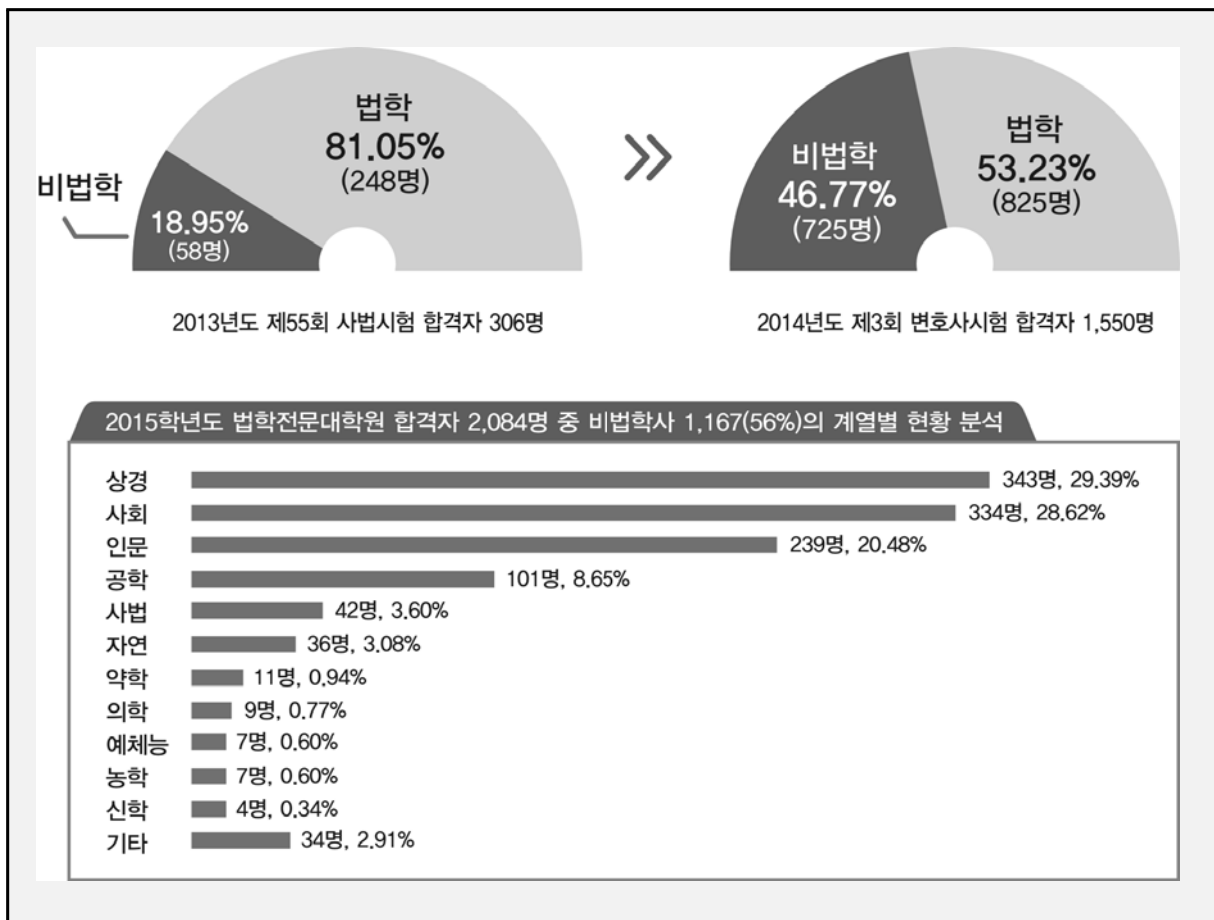
서민층 및 출신대학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법전원제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별첨 13] 법전원 VS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비교 참조 (73p)

- 법전원에는 지난 6년간 평균 53.2%(6,615명)의 비법학 전공자들이 입학
- 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 출신 비율은 56.0%(2,541)에 달해
- 사법시험 합격자 중 비법학 출신은 18.95%에 그쳐

[표-2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합격자 전공현황 비교

(단위: %)



-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교사, 향해사,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과 자격을 갖춘 이들이 법전원에 진출,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고 있음

6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

- 법전원 출신 변호사는 다양한 학부전공과 사회경력을 통해 기존 법조인보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 법전원 제도를 통해서는 기업, 공공기관 등 취업률이 26.5%로 나타나며 사법시험 제도와는 10% 가량 차이가 남. 공기업, 사기업, 공공단체, 국가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 및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실현함

[표-2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및 43기 사법연수생의 분야별 취업률(2014. 12월 기준)

구 분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인원	비율(%)	취업인원	비율(%)
법 원	46명	6.1	58명	4.2
검 찰	40명	5.3	35명	2.5
변 호 사	377명	49.9	781명	56.6
법 무 관	179명	23.7	141명	10.2
공 공 기 관	39명	5.2	141명	10.2
기 업 등	74명	9.8	225명	16.3
총 계	755명	100.0	1,381명	100.0

[별첨 14] 연도별 법전원 취업률 현황(2012~2014년도) 참조 (75p)



V. 결론 : 사시존치 주장의 본질과 해결책



1 사시존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정치적 구호이다

- 사시존치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구호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음.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없는 주장들을 원색적으로 표현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음

《 사시존치론자의 선동적인 주장 》

- ▲ “외제차, 명품시계 자제”로 금수저를 세탁하는 로스쿨을 규탄한다!
- ▲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려는 로스쿨을 규탄한다!
- ▲ 국민 여러분! 로스쿨의 실체는 돈스쿨, 신분제와 음서제입니다.
- ▲ 가난한 내 제자들, 로스쿨 못 간다! 사법시험 존치하라!
- ▲ 비리온상 로스쿨, 전수조사 축소 은폐!
- ▲ 흙수저는 가난의 대물림, 금수저는 법조인의 대물림!
- ▲ 국민여론 80%가 사시존치를 지지한다!
- ▲ 로스쿨, 3년 등록금 + 생활비 1억원 없으면 법조인 되지마!
- ▲ 빚내서 로스쿨 가라는 게 웬 말이냐!

2

사시존치가 필요하다는 근거와 이를 허용할 수 없는 이유

■ 사시존치가 필요하다는 이유

- 학력에 관계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도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사시를 존치시킬 수 없는 이유

- 더 이상 학부교육을 황폐화하게 할 수 없다.
- 시험에 의한 선발로는 역량있는 법률가를 기대할 수 없다.
-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법전원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변호사가 되고 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법전원과 같은 제도 안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한국의 법률 서비스 수지는 적자 상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 로펌에 지급한 금액이 연간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매년 적자 폭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외 법의 분쟁을 다루는 송무 분야보다 기업의 해외 투자, 경영상의 중요한 판단 등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안하는 자문 분야의 타격이 더욱 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매경이코노미, '12.04.05)

3

오픈 로스쿨로 로스쿨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 법률가를 시험에 의해 선발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이다.
 - 사법시험의 폐해는 이미 드러났는데 이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역량있는 법률가의 양성을 더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 법전원의 입학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가가 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학학부만 졸업하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오픈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이다.

- 오픈 로스쿨은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오픈 로스쿨은 졸업정원제로 운영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자의 역량을 키운다.

문턱 낮춘 온라인 로스쿨 도입... 사시 인원 흡수할 것 (한국경제, '15.12.22)

“오픈(open)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문턱을 낮추고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중략)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로스쿨의 문호를 개방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비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이사장은 “40여년간 경험을 축적해온 방송대 측에서도 전국 로스쿨의 중간 정도 역량을 배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로 줄어드는 변호사 숫자만큼 방송대 정원을 늘리면 전체 변호사 배출 수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된다”고 말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6.03.30 “방통대 로스쿨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로스쿨 도입을 추진키로 함

[표-2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설립안

구분	세부사항
1. 당위성	■ 방송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 진입의 다양성과 수월한 접근성” 확보
2. 학생	■ 오픈 로스쿨(Open Law school) / 졸업 정원제 실시
3. 교원	■ 교수진은 3중 구조(전임교수 → 각 분야별 강의전담 교수 → 튜터)로 구성
4.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3년(90학점)으로 하며, 1년 2학기 4쿼터제로 운영, 재학생 및 졸업생의 질적관리를 위해 유급제도 시행 ■ 방송대 로스쿨에 적합한 ‘표준 교육과정(Standard Currirulum)’ 구성 ■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위원회’ 설치
5. 교육환경	■ 온라인 로스쿨에 합당한 시설 확보
6. 재원	■ 로스쿨 설립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은 국가가 부담
7. 기타	■ 방송대 법학부 및 대학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며, 로스쿨과는 분리 운영



1.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역량있는 변호사를 양성해나갈 것이다.
3. 정부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별첨 1]	사법시험 합격자 연도별 학력 분포 현황(1981~2015년).....	75
[별첨 2]	특별전형 입학자 중 변호사시험 합격 후 사회진출 현황 (21개교, 2012~2014년도).....	76
[별첨 3]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입학금 제외) (2012~2015년도).....	78
[별첨 4]	2014년도 법전원 등록금 대비 비율별 장학금 지급인원 현황.....	79
[별첨 5]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 (인원, 금액별) (2009~2013년도).....	81
[별첨 6]	전문대학원 연간 1인당 등록금, 장학금 및 실질등록금 비교(2014년).....	82
[별첨 7]	2014년도 법전원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 학생 수 현황.....	83
[별첨 8]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반영비율(2단계).....	87
[별첨 9]	2016학년도 학교별 면접 반영 비율.....	87
[별첨 10]	2016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89
[별첨 11]	2014학년도 법전원별 재학생 학사경고, 유급 현황.....	94
[별첨 12]	제282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09. 04. 29) 中 변호사시험법안 심의 관련 부분.....	95
[별첨 13]	법전원 VS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대학 비교.....	105
[별첨 14]	연도별 법전원 취업률 현황(2012~2014년도).....	107
[별첨 15]	독일에서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108
[별첨 16]	성공적인 로스쿨 체제를 사시존치 주장으로 흔드는 이유가 나변(那邊)에 있는가?.....	110
[별첨 17]	사법시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112
[별첨 18]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	114
[별첨 19]	사시를 넘어서 약속된 미래로.....	117

별첨1

사법시험 합격자 연도별 학력 분포 현황 (1981~2015년)

(단위 : 명)

연도	회수	합격자수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기타
			졸	재	졸	재	퇴	졸	재	퇴	졸	재	퇴	
1981	23	289	33	47	169	36	1	0	0	0	3	0	0	0
1982	24	300	44	79	124	45	4	1	1	0	1	0	0	1
1983	25	300	38	99	91	68	0	0	0	0	2	0	1	1
1984	26	303	53	85	83	81	0	0	0	0	1	0	0	0
1985	27	298	34	100	104	60	0	0	0	0	0	0	0	0
1986	28	300	50	84	104	61	1	0	0	0	0	0	0	0
1987	29	300	125		130	43	0	0	0	0	2	0	0	0
1988	30	300	139		121	38	0	0	0	0	2	0	0	0
1989	31	300	113		151	36	0	0	0	0	0	0	0	0
1990	32	298	121		136	41	0	0	0	0	0	0	0	0
1991	33	287	102		132	53	0	0	0	0	0	0	0	0
1992	34	288	91		159	38	0	0	0	0	0	0	0	0
1993	35	288	91		132	65	0	0	0	0	0	0	0	0
1994	36	290	64		166	60	0	0	0	0	0	0	0	0
1995	37	308	95		168	45	0	0	0	0	0	0	0	0
1996	38	502	116		312	74	0	0	0	0	0	0	0	0
1997	39	604	131		370	101	0	2	0	0	0	0	0	0
1998	40	700	137		415	148	0	0	0	0	0	0	0	0
1999	41	709	120		431	158	0	0	0	0	0	0	0	0
2000	42	801	132		470	199	0	0	0	0	0	0	0	0
2001	43	991	187		603	200		0			1			0
2002	44	999	159		612	227		0			1			0
2003	45	905	168		483	254		0			0			0
2004	46	1,009	147		549	311		2			0			0
2005	47	1,001	136		489	373		1			2			0
2006	48	994	133		496	365		0			0			0
2007	49	1,011	131		483	397		0			0			0
2008	50	1,005	131		490	383		0			1			0
2009	51	997	122		503	370		2			0			0
2010	52	814	67		350	395		0			2			0
2011	53	707	69		340	298		0			0			0
2012	54	506	41		213	252		0			0			0
2013	55	306	26		147	133		0			0			0
2014	56	204	22		110	72		0			0			0
2015	57	153	16		103	34		0			0			0
합계		19,367	3,878		9,939	5,520		9			19			2
비율		100.00%	20.02%		51.32%	28.50%		0.05%			0.10%			0.01%

(단위 : 명)

학교명	연도	번호 사 시 험 합 격 자	취업자														미취업자		
			검 사	판 사	재 판 연 구 원	법 무 법 인	법 률 사 무 소	변 호 사 개 업	기 업	공공부문					협 회 및 사 회 단 체	법 무 관 (군 / 공 의)	기 타	병 역 및 진 학 등	연 수 등 미 취 업 자
										중 앙 행 정 기 관	기 타 국 가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공 기 업 / 준 정 부	기 타 공 공 분 야					
강원대	20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2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2014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건국대	2012	2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
	20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경북대	2012	4	0	0	0	0	2	1	1	0	0	0	0	0	0	0	0	0	0
	2013	5	0	0	1	0	3	0	0	0	0	0	0	0	0	1	0	0	0
	2014	4	0	0	0	0	1	0	0	2	0	0	0	0	0	0	0	0	1
경희대	2012	4	0	0	0	2	1	0	1	0	0	0	0	0	0	0	0	0	0
	2013	4	0	0	0	3	1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4	0	0	0	1	1	0	0	0	0	0	0	1	0	1	0	0	0
고려대	2012	4	0	0	0	2	1	0	0	0	0	1	0	0	0	0	0	0	0
	2013	5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3
	2014	5	0	0	1	2	0	0	2	0	0	0	0	0	0	0	0	0	0
동아대	2012	6	0	0	0	0	0	1	0	1	0	0	0	4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2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	0
부산대	2012	4	0	0	0	3	1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4	0	0	0	1	1	0	0	0	0	0	0	0	0	2	0	0	0
	2014	3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1
서강대	20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2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2014	1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서울대	2012	9	2	0	0	4	0	0	0	0	1	0	1	0	1	0	0	0	0
	2013	7	1	0	0	2	0	0	3	0	0	0	0	0	0	0	0	0	1
	2014	9	1	0	0	3	0	0	2	0	0	0	0	0	0	2	0	1	0
성균관대	2012	5	0	0	0	2	0	0	1	0	0	0	0	0	1	1	0	0	0
	2013	5	0	0	0	2	0	0	2	1	0	0	0	0	0	0	0	0	0
	2014	5	0	0	1	1	1	0	0	0	0	0	0	0	0	1	1	0	0

학교명	연도	번호 사 시험 합격자	취업자															미취업자	
			검사	판사	재판연구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개업	기업	공공부문					협회 및 사회 단체	법무관 (군 / 공익)	기타	병역 및 진학 등	연수 등 미 취업자
										중앙 행정 기관	기타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기업 / 준정부	기타 공공 분야					
연세대	201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영남대	2012	4	0	0	1	1	0	0	1	0	0	0	0	0	0	0	1	0	0
	201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2014	5	0	0	0	1	2	0	0	0	2	0	0	0	0	0	0	0	0
원광대	2012	4	0	0	0	1	0	0	0	0	0	0	0	1	0	2	0	0	0
	2013	3	0	0	0	0	1	0	0	0	0	0	0	1	0	1	0	0	0
	2014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이화여대	2012	6	0	0	0	0	0	0	2	2	0	0	0	0	0	0	0	0	2
	2013	4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1
	2014	5	0	0	0	2	1	0	1	0	0	0	0	0	0	1	0	0	0
인하대	2012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2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2014	2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전남대	2012	8	0	0	1	1	2	1	0	1	0	1	0	0	0	1	0	0	0
	2013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2014	6	0	0	0	3	2	0	0	0	0	0	0	0	0	0	0	0	1
중앙대	2012	2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4	0	0	0	2	0	0	1	0	0	0	0	0	0	1	0	0	0
	2014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충남대	2012	3	0	0	0	0	2	0	0	0	0	0	1	0	0	0	0	0	0
	2013	6	0	0	0	4	0	2	0	0	0	0	0	0	0	0	0	0	0
	2014	3	0	0	0	2	0	0	1	0	0	0	0	0	0	0	0	0	0
충북대	2012	2	0	0	0	1	0	0	0	0	0	0	0	0	1	0	0	0	0
	2013	4	0	0	0	1	0	0	0	0	1	1	0	0	0	1	0	0	0
	2014	2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한국외대	2012	2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0
	2013	2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2014	2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한양대	2012	4	0	0	0	3	0	0	1	0	0	0	0	0	0	0	0	0	0
	2013	3	0	0	0	2	0	0	1	0	0	0	0	0	0	0	0	0	0
	2014	2	0	0	0	0	1	0	0	1	0	0	0	0	0	0	0	0	0
합계	2012	74	2	0	2	24	9	3	8	4	1	2	3	5	3	4	1	1	2
	2013	64	1	0	1	22	9	2	12	1	1	1	0	1	0	6	1	0	6
	2014	64	2	0	2	19	13	0	8	4	2	1	1	1	0	5	2	1	3

별첨3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 (입학금 제외) (2012~2015년도)

(단위 : 천원)

학교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강 원 대	9,478	9,760	10,050	10,050
건 국 대	15,456	15,456	16,970	16,970
경 북 대	10,142	10,142	10,344	10,344
경 희 대	19,396	19,978	19,978	19,978
고 려 대	20,138	20,138	20,742	20,742
동 아 대	18,731	18,710	18,710	18,709
부 산 대	9,478(최저)	9,746	9,792	9,908
서 강 대	16,538	17,298	17,956	18,352
서 울 대	13,500	13,466	13,432	13,392
서 울 시 립 대	10,040	10,040	10,040	10,040
성 균 관 대	20,840(최고)	20,840(최고)	21,464(최고)	21,892(최고)
아 주 대	19,352	19,952	19,952	19,952
연 세 대	20,476	20,476	20,476	20,476
영 남 대	18,916	18,916	18,916	18,916
원 광 대	16,000	16,000	16,000	16,000
이 화 여 대	18,000	18,630	19,188	19,188
인 하 대	18,702	18,702	18,702	19,150
전 남 대	10,076	10,376	10,376	10,376
전 북 대	10,040	10,312	10,312	10,406
제 주 대	10,000	10,300	10,300	10,546
중 앙 대	17,500	17,500	18,900	19,352
충 남 대	9,648	9,648(최저)	9,648(최저)	9,648(최저)
충 북 대	9,824	9,824	9,824	9,824
한 국 외 대	17,600	17,600	18,110	18,110
한 양 대	19,224	19,224	19,704	20,136
전체평균	15,164	15,321	15,595	15,698

(단위 : 천원, 명)

구분	장학금 지급내역 (천원, %)			장학금 지급비율별 인원 (명)**												재학생 수
	총 등록금 총액 (A)	총 장학금 지급액 (B)	장학금 지급율 (B/A)	100% (전액)	90% 이상 ~ 100% 미만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50% 이상 ~ 6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 10% 미만	합계	
강원대	1,238,245	286,099	23.1%	15	0	0	0	0	5	10	3	5	18	12	66	122
건국대	2,187,433	1,112,377	50.9%	12	0	0	19	0	30	0	0	29	32	0	120	125
경북대	3,766,853	916,101	24.3%	26	2	2	3	6	19	47	16	16	46	12	194	362
경희대	3,907,687	1,032,794	26.4%	13	0	0	3	12	23	29	22	2	0	0	103	191
고려대	7,769,032	2,483,797	32.0%	54	2	0	0	0	64	11	12	78	9	0	229	367
동아대	4,558,038	1,554,892	34.1%	23	0	1	7	8	3	57	9	110	15	0	231	240
부산대	3,540,760	1,166,422	32.9%	63	1	0	0	0	1	105	3	2	14	43	231	359
서강대	2,245,284	820,005	36.5%	36	0	0	0	0	19	0	0	0	1	0	55	122
서울대	6,150,319	2,300,419	37.4%	93	13	11	10	6	35	8	10	1	0	0	183	454
시립대	1,511,680	713,106	47.2%	21	22	0	0	0	44	1	1	2	13	31	134	150
성균관대	7,963,144	2,977,655	37.4%	55	0	0	5	42	39	32	64	3	32	13	282	365
아주대	3,134,126	964,990	30.8%	10	0	0	10	0	44	0	0	38	2	0	103	157
연세대	7,495,240	2,502,992	33.4%	71	1	6	13	4	24	9	32	25	3	5	190	356
영남대	4,014,959	1,976,881	49.2%	52	1	0	16	0	24	37	22	35	0	25	210	209
원광대	2,956,000	1,319,700	44.6%	38	1	5	9	6	17	9	43	12	10	1	148	181
이화여대	6,067,672	2,505,290	41.3%	41	19	0	3	49	1	3	104	1	1	3	223	310
인하대	2,947,100	1,545,385	52.4%	32	5	7	3	11	37	1	25	2	4	2	128	155

구분	장학금 지급내역 (천원, %)			장학금 지급비율별 인원 (명)**												재 학 생 수
	총 등록금 총액 (A)	총 장학금 지급액 (B)	장학금 지급율 (B/A)	100% (전액)	90% 이상 ~ 100% 미만	8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 80% 미만	60% 이상 ~ 70% 미만	50% 이상 ~ 60% 미만	40% 이상 ~ 5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 10% 미만	합 계	
전남대	3,556,083	972,636	27.4%	43	17	0	0	5	2	25	5	26	61	100	282	341
전북대	2,549,126	587,528	23.0%	20	16	2	0	0	1	23	0	38	4	13	116	246
제주대	1,176,770	449,604	38.2%	10	1	6	3	10	7	14	14	9	6	0	78	114
중앙대	3,064,500	1,688,540	55.1%	39	0	0	0	26	27	1	30	12	42	12	188	157
충남대	3,048,768	1,031,213	33.8%	71	0	0	5	1	42	2	8	1	13	47	189	314
충북대	1,771,183	594,347	33.6%	19	9	1	0	1	29	17	2	8	32	36	152	179
한 외 국 대	2,698,390	1,000,643	37.1%	19	0	0	1	0	32	0	10	66	0	0	128	145
한양대	6,019,572	3,342,784	55.5%	83	0	0	42	0	44	0	120	0	0	0	288	300
국공립	28,309,786	9,017,472	31.9%	379	80	21	20	28	184	250	61	105	205	293	1,626	2,641
사 립	67,028,177	26,828,723	40.0%	574	28	18	127	156	424	187	491	410	149	60	2,624	3,380
합 계	95,337,963	35,846,195	37.6%	953	108	39	147	184	608	437	552	515	354	353	4,250	6,021

별첨5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 (인원, 금액별) (2009~2013년도)

(단위 : 명, %)

학교명	특별전형 장학금 지급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강 원 대	100	100	87.5	87.5	90	90	90	90	75	74	88.5	88.3
건 국 대	100	97.5	100	91.5	100	77	100	81.3	100	73.3	100	84.12
경 북 대	100	100	100	98.1	100	91.9	94.7	86.7	94.7	99.1	97.88	95.16
경 희 대	62.5	62.5	75	61.8	91.7	80.9	84.6	66.2	100	85.5	82.76	71.38
고 려 대	63.3	49.6	56.4	48.4	79.4	64	85	78.8	80.1	75	72.84	63.16
동 아 대	100	81.3	100	100	75.5	75.4	100	100	95.9	88.4	94.28	89.02
부 산 대	92.9	92.9	100	76.6	89.8	74.9	81.8	78.4	92	76	91.3	79.76
서 강 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서 울 대	70	51.3	76.3	60.5	91.1	82.1	92.9	91.1	100	97	86.06	76.4
서울시립대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100	100	100	99.8
성 균 관 대	100	87.5	100	92.5	97.1	79.8	100	84.9	97	81	98.82	85.14
아 주 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연 세 대	100	100	100	92	97.1	94.4	100	98.1	94	99	98.22	96.7
영 남 대	100	100	100	100	95.8	89.6	86.7	77.3	100	91	96.5	91.58
원 광 대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 화 여 대	100	100	100	100	100	99	100	100	100	96.5	100	99.1
인 하 대	83	61	100	88	89	77	100	71	94.4	81.5	93.28	75.7
전 남 대	100	91.2	96.9	90.7	87	80.9	75.8	75.6	85	89.7	88.94	85.62
전 북 대	100	100	89	89	93.3	93.3	94	94	100	100	95.26	95.26
제 주 대	87.5	87.5	75	75	92.9	92.9	83.3	83.3	83	80	84.34	83.74
중 앙 대	100	100	100	100	95.8	95.8	100	96.5	82.6	81.6	95.68	94.78
충 남 대	100	100	90	90	93.8	87.5	100	100	100	100	96.76	95.5
충 북 대	100	100	81.3	73.6	79.2	65.6	75.0	60.8	75	75	82.1	75
한 국 외 대	100	87.5	100	80.4	100	72.2	100	79.2	100	86.1	100	81.08
한 양 대	100	100	87.5	87.5	100	100	100	100	100	100	97.5	97.5
총 평균	94.4	90.0	92.6	87.3	93.5	86.5	93.7	87.7	94.0	89.2	93.64	88.14

별첨6

전문대학원별 연간 1인당 등록금, 장학금 및 실질등록금 비교 (2014년)

(단위 : 천원, %)

학교명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강 원 대	10,050	2,356	23.4	7,694	11,578	2,087	18.0	9,491	—	—	—	—
건 국 대	16,970	9,067	53.4	7,903	23,672	6,044	25.5	17,628	14,720	5,596	38.0	9,124
경 북 대	10,344	2,536	24.5	7,808	12,614	2,171	17.2	10,443	—	—	—	—
경 희 대	19,978	7,051	35.3	12,927	20,372	2,428	11.9	17,944	—	—	—	—
고 려 대	20,742	6,793	32.7	13,949	17,460	1,542	8.8	15,918	28,002	1,214	4.3	26,788
동 아 대	18,710	6,520	34.8	12,190	18,710	5,101	27.3	13,609	—	—	—	—
부 산 대	9,792	3,230	33.0	6,562	12,632	2,068	16.4	10,564	—	—	—	—
서 강 대	17,956	7,133	39.7	10,823	—	—	—	—	19,216	1,553	8.1	17,663
서 울 대	13,432	4,981	37.1	8,451	—	—	—	—	27,275	3,339	12.2	23,936
서울시립대	10,040	4,771	47.5	5,269	—	—	—	—	—	—	—	—
성균관대	21,464	7,102	33.1	14,362	11,974	3,694	30.9	8,280	21,926	3,546	16.2	18,380
아 주 대	19,952	6,357	31.9	13,595	20,376	7,035	34.5	13,341	—	—	—	—
연 세 대	20,476	6,762	33.0	13,714	12,128	3,187	26.3	8,941	28,856	1,985	6.9	26,872
영 남 대	18,916	9,381	49.6	9,535	18,916	5,131	27.1	13,785	—	—	—	—
원 광 대	16,000	7,292	45.6	8,708	—	—	—	—	—	—	—	—
이화여대	19,188	8,709	45.4	10,479	22,382	4,702	21.0	17,680	18,777	3,560	19.0	15,217
인 하 대	18,702	9,845	52.6	8,857	20,156	4,576	22.7	15,580	13,514	5,217	38.6	8,297
전 남 대	10,376	2,817	27.1	7,559	10,214	1,385	13.6	8,829	9,236	5,609	60.7	3,627
전 북 대	10,312	2,459	23.8	7,853	12,762	1,681	13.2	11,081	—	—	—	—
제 주 대	10,300	3,999	38.8	6,301	12,838	2,565	20.0	10,273	—	—	—	—
중 앙 대	18,900	10,626	56.2	8,274	19,700	4,219	21.4	15,481	17,355	2,796	16.1	14,559
충 남 대	9,650	3,262	33.8	6,388	12,492	1,263	10.1	11,229	—	—	—	—
충 북 대	9,824	2,675	27.2	7,149	9,830	1,419	14.4	8,411	—	—	—	—
한국외대	18,110	6,694	37.0	11,416	—	—	—	—	—	—	—	—
한 양 대	19,704	10,855	55.1	8,849	15,024	2,052	13.7	12,972	16,372	3,857	23.6	12,515
최 고	21,464	10,855	56.2	14,362	23,672	7,035	34.5	17,944	28,856	5,609	60.7	26,872
평 균	15,596	6,131	38.1	9,465	15,792	3,217	19.7	12,574	19,568	3,479	22.2	16,089
최 저	9,650	2,356	23.4	5,269	9,830	1,263	8.8	8,280	9,236	1,214	4.3	3,627

(단위 : 명)

학교명	학년	소득분위별 지급학생 수(명)												
		기 초 수 급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타	합계
			16,760 천원 이하	26,040 천원 이하	33,510 천원 이하	39,720 천원 이하	45,650 천원 이하	52,190 천원 이하	59,790 천원 이하	70,7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초과		
강원대	1학년	0	7	2	5	0	0	0	3	0	0	1	1	19
	2학년	1	4	5	1	1	1	1	2	1	3	1	1	22
	3학년	0	3	5	3	3	1	2	0	0	0	3	1	21
	소계	1	14	12	9	4	2	3	5	1	3	5	3	62
건국대	1학년	1	3	9	2	4	2	2	1	1	3	8	0	36
	2학년	1	5	3	3	3	0	0	5	0	5	14	0	39
	3학년	0	2	4	3	5	4	2	3	1	3	14	0	41
	소계	2	10	16	8	12	6	4	9	2	11	36	0	116
경북대	1학년	2	6	7	4	6	2	2	2	6	9	7	12	65
	2학년	3	29	2	2	1	2	3	0	1	5	6	0	54
	3학년	5	37	5	1	0	0	4	2	2	3	4	0	63
	소계	10	72	14	7	7	4	9	4	9	17	17	12	182
경희대	1학년	4	3	1	2	3	2	1	2	1	1	0	15	35
	2학년	1	3	3	1	3	2	1	0	1	2	0	21	38
	3학년	1	2	2	0	1	2	2	0	0	5	0	19	34
	소계	6	8	6	3	7	6	4	2	2	8	0	55	107
고려대	1학년	4	4	5	0	0	2	3	4	11	8	21	14	76
	2학년	4	4	7	11	2	4	0	5	10	2	9	25	83
	3학년	5	4	4	1	1	5	6	2	5	5	10	38	86
	소계	13	12	16	12	3	11	9	11	26	15	40	77	245
동아대	1학년	3	12	6	5	3	5	3	5	6	10	21	1	80
	2학년	3	6	4	6	3	4	3	4	7	9	17	14	80
	3학년	5	2	9	4	3	2	2	5	5	3	18	16	74
	소계	11	20	19	15	9	11	8	14	18	22	56	31	234
부산대	1학년	3	6	4	4	6	1	4	0	6	9	1	1	45
	2학년	2	4	7	5	5	6	5	1	5	2	0	1	43
	3학년	2	7	5	3	6	3	1	2	1	1	0	2	33
	소계	7	17	16	12	17	10	10	3	12	12	1	4	121
서강대	1학년	3	1	2	1	1	0	0	0	0	1	0	4	13
	2학년	4	4	3	0	2	0	0	0	1	0	0	7	21
	3학년	2	1	0	2	0	3	0	0	0	0	1	6	15
	소계	9	6	5	3	3	3	0	0	1	1	1	17	49

학교명	학년	소득분위별 지급학생 수(명)												
		기 초 수 급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타	합계
			16,760 천원 이하	26,040 천원 이하	33,510 천원 이하	39,720 천원 이하	45,650 천원 이하	52,190 천원 이하	59,790 천원 이하	70,7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초과		
서울대	1학년	1	7	10	7	6	5	3	5	2	0	0	5	51
	2학년	0	16	7	5	4	6	6	7	9	5	0	7	72
	3학년	0	7	7	7	2	8	9	7	1	5	2	3	58
	소계	1	30	24	19	12	19	18	19	12	10	2	15	181
서울 시립대	1학년	1	3	1	0	0	0	0	0	0	0	0	45	50
	2학년	2	3	3	3	1	0	1	0	4	0	1	11	29
	3학년	2	2	2	4	1	0	1	1	1	3	5	11	33
	소계	5	8	6	7	2	0	2	1	5	3	6	67	112
성균관대	1학년	0	7	7	4	4	5	1	1	5	7	13	34	88
	2학년	2	8	6	3	4	5	1	0	8	6	11	43	97
	3학년	1	10	6	7	2	3	1	4	6	5	2	45	92
	소계	3	25	19	14	10	13	3	5	19	18	26	122	277
아주대	1학년	1	8	3	3	1	2	1	0	4	2	3	0	28
	2학년	2	8	3	1	1	2	0	0	4	8	0	0	29
	3학년	0	12	3	3	0	0	4	4	4	6	0	0	36
	소계	3	28	9	7	2	4	5	4	12	16	3	0	93
연세대	1학년	7	13	3	0	2	2	1	1	0	0	0	7	36
	2학년	4	11	4	3	3	1	2	1	6	5	4	17	61
	3학년	4	15	5	2	5	3	0	3	3	3	4	12	59
	소계	15	39	12	5	10	6	3	5	9	8	8	36	156
영남대	1학년	4	29	2	1	1	2	0	1	2	0	3	14	59
	2학년	6	28	4	0	6	1	0	3	2	0	8	7	65
	3학년	1	35	6	5	3	0	3	0	1	0	4	6	64
	소계	11	92	12	6	10	3	3	4	5	0	15	27	188
원광대	1학년	0	14	4	4	2	6	1	2	0	1	0	5	39
	2학년	2	26	3	4	1	3	3	0	0	3	0	15	60
	3학년	0	18	0	5	0	1	2	0	0	0	4	15	45
	소계	2	58	7	13	3	10	6	2	0	4	4	35	144
이화여대	1학년	2	3	3	2	4	2	2	2	5	8	11	27	71
	2학년	1	9	4	4	4	4	4	3	7	4	18	11	73
	3학년	0	7	4	6	4	2	2	1	3	5	16	22	72
	소계	3	19	11	12	12	8	8	6	15	17	45	60	216
인하대	1학년	1	16	3	1	2	1	1	6	1	2	3	5	42
	2학년	1	13	5	2	5	5	2	0	0	1	1	5	40
	3학년	0	9	9	4	1	2	3	0	1	1	2	10	42
	소계	2	38	17	7	8	8	6	6	2	4	6	20	124

학교명	학년	소득분위별 지급학생 수(명)												
		기 초 수 급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타	합계
			16,760 천원 이하	26,040 천원 이하	33,510 천원 이하	39,720 천원 이하	45,650 천원 이하	52,190 천원 이하	59,790 천원 이하	70,7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초과		
전남대	1학년	26	17	0	0	0	0	0	0	0	0	0	0	43
	2학년	24	16	0	0	0	0	0	0	0	0	0	0	40
	3학년	24	8	0	0	0	0	0	0	0	0	0	0	32
	소계	74	41	0	0	0	0	0	0	0	0	0	0	115
전북대	1학년	6	6	0	1	0	2	0	1	2	0	0	0	18
	2학년	6	10	0	1	0	1	0	1	0	0	1	1	21
	3학년	8	7	1	0	0	1	0	0	0	0	0	0	17
	소계	20	23	1	2	0	4	0	2	2	0	1	1	56
제주대	1학년	3	4	1	3	1	1	0	1	3	0	2	3	22
	2학년	0	3	2	3	0	4	1	1	1	2	1	11	29
	3학년	0	5	3	0	1	2	0	2	0	0	4	6	23
	소계	3	12	6	6	2	7	1	4	4	2	7	20	74
중앙대	1학년	5	0	1	2	1	1	2	2	0	1	4	14	33
	2학년	4	0	3	0	4	0	3	4	6	0	4	8	36
	3학년	7	2	2	0	0	3	0	2	4	7	5	12	44
	소계	16	2	6	2	5	4	5	8	10	8	13	34	113
충남대	1학년	7	10	3	4	5	2	2	6	1	1	0	13	54
	2학년	8	16	5	7	2	3	0	2	1	1	0	8	53
	3학년	7	16	7	3	7	1	1	2	1	2	0	8	55
	소계	22	42	15	14	14	6	3	10	3	4	0	29	162
충북대	1학년	0	0	1	1	0	1	1	3	1	2	12	28	50
	2학년	0	1	0	2	0	4	0	0	1	3	5	17	33
	3학년	0	2	1	1	2	1	1	0	1	2	11	14	36
	소계	0	3	2	4	2	6	2	3	3	7	28	59	119
한국외대	1학년	3	4	6	4	2	1	1	3	3	5	10	0	42
	2학년	2	3	2	4	4	3	3	1	2	4	7	0	35
	3학년	3	4	0	2	5	2	1	1	4	8	11	6	47
	소계	8	11	8	10	11	6	5	5	9	17	28	6	124
한양대	1학년	6	10	4	1	3	4	2	4	12	15	42	0	103
	2학년	5	10	13	8	4	3	4	4	10	11	25	0	97
	3학년	4	11	5	2	10	2	4	7	7	14	26	0	92
	소계	15	31	22	11	17	9	10	15	29	40	93	0	292
총합계	1학년	93	193	88	61	57	51	33	55	72	85	162	248	1,198
	2학년	88	240	98	79	63	64	43	44	87	81	133	230	1,250
	3학년	81	228	95	68	62	51	51	48	51	81	146	252	1,214
	합계	262	661	281	208	182	166	127	147	210	247	441	730	3,662

학교명	학년	소득분위별 지급학생 수(명)												
		기 초 수 급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기타	합계
			16,760 천원 이하	26,040 천원 이하	33,510 천원 이하	39,720 천원 이하	45,650 천원 이하	52,190 천원 이하	59,790 천원 이하	70,7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이하	88,110 천원 초과		
분석자료	누적 인원	262	923	1,204	1,412	1,594	1,760	1,887	2,034	2,244	2,491	2,932	3,662	—
	누적 비율 (3,662명)	7.2%	25.2%	32.9%	38.6%	43.5%	48.1%	51.5%	55.5%	61.3%	68.0%	80.1%	100%	—
	누적 비율 (6,021명)	4.4%	15.3%	20.0%	23.5%	26.5%	29.2%	31.3%	33.8%	37.3%	41.4%	48.7%	60.8%	—

별첨8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반영비율 (2단계)

반영비율	학교명
10% 이상 ~ 20% 미만	건국대(15%), 경북대(14%), 경희대(17%), 고려대(14%), 동아대(가군,10%), 서강대(17%), 아주대(15%), 연세대(15%), 이화여대(15%), 전남대(10%), 제주대(16%), 충북대(14%)
20% 이상 ~ 30% 미만	강원대(22%), 동아대(나군, 20%), 부산대(20%), 서울시립대(20%), 성균관대(20%), 영남대(20%), 인하대(20%), 전북대(20%), 중앙대(20%), 충남대(25%), 한국외대(20%), 한양대(20%)
30% 이상	서울대(40%), 원광대(30%)
기타	고려대(우선선발, P/F), 서울대(우선선발, P/F), 성균관대(우선선발, 면접없음), 연세대(우선선발, P/F), 이화여대(우선선발, P/F)

별첨9

2016학년도 학교별 면접 반영 비율

구분	2단계 전형 - 반영점수/만점
강 원 대	100점/450점
건 국 대	150점/1,000점
경 북 대	70점/500점
경 희 대	100점/600점
고 려 대	100점/700점, 우선선발 P/F
동 아 대	가군 100점/1,000점, 나군200점/100점
부 산 대	20점/100점
서 강 대	20점/120점
서 울 대	200점/500점(면접 및 구술), 우선선발 P/F

구분	2단계 전형 – 반영점수/만점
서울시립대	20점/100점
성균관대	20점/100점, 우선선발(별도 전형없음)
아주대	15점/100점
연세대	15점/100점, 우선선발 P/F
영남대	200점/1,000점
원광대	30점/100점
이화여대	150점/1,000점, 우선선발 P/F
인하대	200점/1,000점
전남대	50점/500점
전북대	20점/100점
제주대	서류40%, 논술20%, 면접40%를 40점 만점으로 환산
중앙대	100점/500점
충남대	100점/400점
충북대	70점/500점
한국외대	100점/500점
한양대	200점/1,000점

대학명	전형방법 및 내용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강원대 [환경법]	LEET성적 : 100점 대학성적 : 100점 어학성적 : 가/부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300점]	1단계 성적 : 300점 논술성적 : 50점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45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 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 한 변동가능)	각 군별 비법학사 : 10명 이상 타 대학 : 12명 이상 지역인재 : 2명 이상
건국대 [부동산법]	LEET성적 : 300점 대학성적 : 150점 어학성적 : 200점 [합계 : 650점]	1단계 성적 : 650점 논술성적 : 100점 면접성적 : 150점 서류심사 : 100점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 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비법학사 : 1/3(13명) 이상 타 대학 : 1/2(20명) 이상
경북대 [IT]	LEET성적 : 150점 대학성적 : 100점 어학성적 : 100점 서류면접 : 50점 [합계 : 400점]	1단계 성적 : 400점 논술성적 : 30점 구술면접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 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비법학사 : 40명 이상 타 대학 : 40명 이상 지역인재 : 24명 이상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LEET성적 : 150점 대학성적 : 150점 어학성적 : 100점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500점]	1단계 성적 : 500점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6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 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비법학사 : 21명 이상 타 대학 : 21명 이상
고려대 [GLP]	LEET성적 : 200점 학부성적 : 200점 어학성적 : 100점 자기소개서 : 100점 논술성적 : P/F [합계 : 600점]	『우선선발』 1단계 성적 : 600점 구술면접 : 적격/부적격 [합계 : 600점]	『우선선발』 일반전형 모집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선발	당락 여부만을 결정하는 구술 면접 실시 후 성적순으로 선발	비법학사 : 1/3 이상 타 대학 : 1/3 이상
		『일반선발』 1단계 성적 : 600점 구술면접 : 100점 [합계 : 700점]	『일반선발』 우선선발 제외, 선발인원의 3배 이내에서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 대학 쿼터 충족 을 위한 변동가 능)	

대학명	전형방법 및 내용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동아대 [국제 상거래]	LEET성적 : 300점 대학성적 : 100점 어학성적 : 200점 서류심사 : ('가' 군 : 300점, '나' 군 : 200점) 서류심사에 LEET논술 반영 [합계 : '가' 군 900점, '나' 군 800점]	1단계 성적 : ('가' 군 : 900점, '나' 군 : 800점) 면접성적 : ('가' 군 : 100점, '나' 군 : 2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 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비법학사 : 28명 이상 타 대학 : 28명 이상 지역인재 : 16명 이상
부산대 [금융·해 운 통상법]	LEET성적 : 200점 학부성적 : 100점 어학성적 : 100점 [합계 : 400점]	1단계 성적 : ('가' 군 : 40점, '나' 군 : 50점 점으로 환산) 논술성적 : 20점 ('가' 군만) 자기소개서 : ('가' 군 : 20점, '나' 군 : 30점)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 족을 위한 변동 가능)	비법학사 : 1/3 이상 타 대학 : 1/3 이상 지역인재 : 20% 이상
서강대 [기업법 (금융법)]	LEET성적 : 30점 대학성적 : 30점 어학성적 : 20점 자기소개서 및 기타 서류성적 : 20점 [합계 : 100점]	1단계 성적 : 100점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2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 대학 쿼터 충족 을 위한 변동가 능)	비법학사 : 14명 이상 타 대학 : 20명 이상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어학성적 : 지원자격 여부심사〉 LEET성적 : 80점 대학성적 : 100점 정성평가 : 120점 [합계 : 300점]	『우선선발』 1단계 성적 : 300점 면접 및 구술고사 : 적격/부적격 [합계 : 300점]	『우선선발』 일반전형 모집인 원의 50% 범위 내에서 선발	당락여부만을 결정하는 면접 및 구술고사실시 후 성적순으로 선발	비법학사 : 1/3 이상 타 대학 : 1/3 이상
		『심층선발』 1단계 성적 : 300점 면접 및 구술고사 : 200점 [합계 : 500점]	『심층선발』 우 선 선 발 제 외 한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 인원 제외 하여 선발	

대학명	전형방법 및 내용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서울 시립대 [조세법]	LEET성적 : 20점 대학성적 : 15점 어학성적 : 15점 서류심사 : 20점 [합계 : 70점]	1단계 성적 : 70점 면접 및 구술고사 : 20점 논술성적 : 1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400% 선발 (특별전형 6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총 족을 위한 변동 가능)	비법학사 : 50% 이상 타 대학 : 50% 이상
성균관대 [기업법무]	〈어학성적 : 지원자격으로 인정〉 LEET성적 : 15점 LEET논술 : 10점 대학성적 : 15점 서류심사 : 40점 [합계 : 80점]	『우선선발』 별도의 전형 없음	『우선선발』 총점순위 일반전형 - 50명 내외		비법학사 : 41명 이상 타 대학 : 41명 이상
		『일반선발』 1단계 성적 - 80점 심층면접 - 20점 [합계 : 100점]	『일반선발』 일반전형 - 192명 내외 특별전형 - 18명 내외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총 족을 위한 변동 가능)	
아주대 [중소기업 법무]	LEET성적 : 30점 대학성적 : 20점 어학성적 : 20점 [합계 : 70점]	1단계 성적 : 70점 서면평가(논술포함) : 15점 대면평가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7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총 족을 위한 변동 가능)	비법학사 : 1/3 이상 타 대학 : 1/3 이상
연세대 [공공거버 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과학 기술]	『일반전형』 LEET성적 : 20점 대학성적 : 20점 어학성적 : 20점 서류평가 : 25점 [합계 : 85점]	『일반전형 우선선발』 1단계 합계점수 : 85점 2단계 구술면접 : P/F [합계 : 85점]	『우선선발』 총점 순위에 따라 50명 이내 선발	『우선선발』 구술면접심사(P/ F) 후 최종합격 여부 결정	LEET 논술은 서류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 토함. TOEFL은 IBT만 인정하며 외국에 서응시한 TOEIC 은 인정하지 않 음.
		『일반전형 일반선발』 1단계 합계점수 : 85점 2단계 구술면접 : 15점 [합계 : 100점]	『일반선발』 총점 순위에 따라 우선선발 제외한 인원의 300% 내의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총족 을 위한 변동 가능)	
	『특별전형』 LEET성적 : 20점 대학성적 : 20점 어학성적 : P/F 서류평가 : 25점 [합계 : 65점]	『특별전형』 1단계 합계점수 : 65점 2단계 구술면접 : 15점 [합계 : 80점]	『특별전형』 총점 순위에 따 라지원자 수 를 고 려하여 일정 인원 선발		

대학명	전형방법 및 내용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영남대 [공익 인권법]	LEET성적 : 300점 대학성적 : 100점 어학성적 : 100점 서면평가 : 200점 [합계 : 700점]	1단계 성적 : 700점 논술성적 : 100점 면접성적 : 200점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 가능)	각 군별 비법학사 : 34% 이상 타 대학 : 70% 이상
원광대 [의생명 분야]	LEET성적 : 35점 대학성적 : 20점 어학성적 : 15점 [합계 : 70점]	1단계 성적 : 70점 면접성적 : 3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 한 변동가능)	비법학사 : 22명 이상 타 대학 : 29명 이상 지역인재 : 12명 이내
이화여대 [생명 의료법, Gender법]	LEET성적 : 150점 대학성적 : 200점 어학성적 : 150점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00점]	『우선선발』 일반전형에서 30명 이내 (1단계 전형의 고득 점자 순) 구술면접 : P/F	정원의 4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 가능)	비법학사 : 34명 이상 타 대학 : 34명 이상
		1단계 성적 : 700점 논술성적 : 150점 심층면접 : 150점 [합계 : 1,000점]			
인하대 [지적재산 권,물류법]	LEET성적 : 200점 대학성적 : 200점 어학성적 : 150점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50점]	1단계 성적 : 750점 논술성적 : 50점 면접성적 : 200점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4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 가능)	각 군별 비법학사 : 1/3 이상 타 대학 : 1/3 이상
전남대 [공익 인권법]	LEET성적 : 100점 대학성적 : 100점 어학성적 : 100점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1단계 성적 : 400점 논술성적 : 50점 면접성적 : 5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 가능)	비법학사 : 1/3 이상 타 대학 : 1/3 이상 지역인재 : 1/5 이상
전북대 [동북아법]	LEET성적 : 30점 학부성적 : 15점 어학성적 : 10점 서류심사 : 10점 [합계 : 65점]	1단계 성적 : 65점 논술성적 : 15점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 족을 위한 변동 가능)	비법학사 : 1/3 이상 타 대학 : 1/3 이상 지역인재 : 1/5 이상

대학명	전형방법 및 내용				비고
	1단계 [합계]	2단계 [합계]	선발방법		
			1단계	2단계	
제주대 [국제법무]	LEET성적 : 25점 대학성적 : 20점 어학성적 : 15점 [합계 : 60점]	1단계 성적 : 60점 면접성적 : 40점 － 서류심사 : 40% － LEET논술 : 20% － 구술고사 : 40% [합계 : 1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 한 변동 가능)	비법학사 : 35% 이상 타 대학 : 35% 이상 지역인재 : 10% 이상
중앙대 [문화법]	LEET성적 : 100점 학부성적 : 100점 어학성적 : 100점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1단계 성적 : 400점 심층면접 : 100점 기타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 족을 위한 변동 가능)	비법학사 : 50% 이상 타 대학 : 60% 이상
충남대 [지적 재산권]	LEET성적 : 120점 대학성적 : 50점 어학성적 : 100점 서류심사 : 30점 [합계 : 300점]	1단계 성적 : 300점 면접성적 : 100점 논술성적 : 면접 시 반영 [합계 : 400점]	정원의 35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 한 변동가능)	각 군별 비법학사 : 21명 이상 타 대학 : 30명 이상 지역인재 : 10명 이상
충북대 [과학기술]	LEET성적 : 100점 － 언어이해 : 50점 － 추리논증 : 50점 학부성적 : 100점 어학성적 : 100점 [합계 : 300점]	1단계 성적 : 300점 논술점수 : 100점 서류평가 : 30점 개별면접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타 대학·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 한 변동가능)	비법학사 : 25명이상 타 대학 : 25명이상
한국외대 [국제지역]	LEET성적 : 100점 대학성적 : 100점 어학성적 : 100점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1단계 성적 : 400점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 가능)	비법학사 : 50% 이상 타 대학 : 50% 이상
한양대 [국제소송, 지식· 문화산업, 공익· 소수자 인권]	LEET성적 : 150점 대학성적 : 220점 어학성적 : 110점 서류심사 : 220점 [합계 : 700점]	1단계 성적 : 700점 논술성적 : 100점 면접성적 : 2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 을 위한 변동 가능)	비법학사 : 40명 이상 타 대학 : 40명 이상

(단위 : 명, %)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수료	
	재 학 생	학사 경고		재 학 생	학사 경고		유급	재 학 생	학사 경고		유급	재 학 생	학사 경고		재 학 생	학사 경고		유급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강원대	40	3	7.50	40	1	2.50	1	2.50	39	1	2.56	39	0	0.00	0	0.00	42	1	2.38	42	0	0.00	1	2.38	1	2.38
건국대	38	1	2.63	39	3	7.69	1	2.56	46	3	6.52	44	0	0.00	0	0.00	42	0	0.00	38	0	0.00	0	0.00	0	0.00
경북대	124	10	8.06	120	2	1.67	3	2.50	123	5	4.07	122	2	1.64	1	0.82	121	6	4.96	121	0	0.00	0	0.00	0	0.00
경희대	66	3	4.55	67	2	2.99	2	2.99	66	0	0.00	63	1	1.59	0	0.00	59	0	0.00	61	0	0.00	0	0.00	2	3.28
고려대	134	17	12.69	120	5	4.17	7	5.83	122	1	0.82	122	3	2.46	0	0.00	117	2	1.71	118	1	0.85	1	0.85	6	5.08
동아대	80	5	6.25	81	6	7.41	2	2.47	78	4	5.13	82	0	0.00	0	0.00	81	1	1.23	75	0	0.00	0	0.00	0	0.00
부산대	128	2	1.56	124	0	0.00	0	0.00	121	8	6.61	121	2	1.65	2	1.65	107	9	8.41	111	3	2.70	2	1.80	4	3.60
서강대	43	2	4.65	40	2	5.00	0	0.00	43	2	4.65	42	2	4.76	0	0.00	37	0	0.00	39	0	0.00	0	0.00	1	2.56
서울대	162	5	3.09	159	13	8.18	5	3.14	157	0	0.00	156	6	3.85	1	0.64	139	0	0.00	136	5	3.68	0	0.00	0	0.00
서울 시립대	52	1	1.92	49	1	2.04	0	0.00	49	1	2.04	50	2	4.00	1	2.00	49	1	2.04	53	0	0.00	0	0.00	2	3.77
성균관대	129	12	9.30	126	9	7.14	5	3.97	123	3	2.44	121	1	0.83	0	0.00	125	1	0.80	122	0	0.00	0	0.00	7	5.74
아주대	48	5	10.42	48	2	4.17	1	2.08	51	2	3.92	48	0	0.00	0	0.00	56	0	0.00	61	4	6.56	0	0.00	0	0.00
연세대	126	6	4.76	126	10	7.94	12	9.52	126	0	0.00	125	0	0.00	0	0.00	111	0	0.00	116	0	0.00	0	0.00	0	0.00
영남대	71	4	5.63	69	0	0.00	0	0.00	71	0	0.00	71	0	0.00	0	0.00	68	1	1.47	68	0	0.00	0	0.00	6	8.82
원광대	60	2	3.33	55	3	5.45	3	5.45	69	1	1.45	68	0	0.00	0	0.00	56	3	5.36	54	0	0.00	0	0.00	0	0.00
이화여대	110	8	7.27	101	0	0.00	1	0.99	103	0	0.00	105	0	0.00	0	0.00	104	0	0.00	103	1	0.97	0	0.00	2	1.94
인하대	55	3	5.45	52	0	0.00	0	0.00	52	1	1.92	52	0	0.00	1	1.92	48	0	0.00	49	1	2.04	0	0.00	0	0.00
전남대	136	4	2.94	130	2	1.54	2	1.54	127	1	0.79	125	1	0.80	1	0.80	116	5	4.31	114	0	0.00	2	1.75	10	8.77
전북대	86	0	0.00	86	0	0.00	0	0.00	80	2	2.50	80	1	1.25	0	0.00	84	3	3.57	83	0	0.00	0	0.00	4	4.82
제주대	39	1	2.56	39	0	0.00	0	0.00	40	0	0.00	39	0	0.00	0	0.00	35	1	2.86	33	4	12.1	2	6.06	8	24.24
중앙대	55	1	1.82	54	0	0.00	1	1.85	49	1	2.04	50	0	0.00	0	0.00	55	0	0.00	55	3	5.45	0	0.00	3	5.45
충남대	111	12	10.81	105	4	3.8	1	0.95	101	1	0.99	99	1	1.01	1	1.01	105	4	3.81	105	0	0.00	0	0.00	4	3.81
충북대	79	4	5.06	73	0	0.00	1	1.37	71	1	1.41	72	1	1.39	0	0.00	71	3	4.23	72	5	6.94	1	1.39	0	0.00
한국외대	54	5	9.26	50	1	2.00	0	0.00	44	3	6.82	47	0	0.00	0	0.00	51	5	9.80	51	3	5.88	0	0.00	6	11.76
한양대	110	5	4.55	109	5	4.59	3	2.75	102	0	0.00	104	1	0.96	1	0.96	99	0	0.00	98	0	0.00	1	1.02	6	6.12
인원 계	2,136	121	5.66	2,062	71	3.44	51	2.47	2,053	41	2.00	2,047	24	1.17	9	0.44	1,978	46	2.33	1,978	30	1.52	10	0.51	72	3.64

第282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 8 號

國會事務處

2009年 4月 29日(水) 午後 2時

15. 변호사시험법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시35분)

○ 의장 김형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변호사시험법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이주영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을위한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9일 여야 의원 7명으로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안—정부안이 되겠습니다—박선영 의원안 또 강용석 의원안을 다시 종합 심의하고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변호사 시험법안을 성안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전 국회의원님들께 서신을 보내 변호사시험 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도록 요청했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변호사시험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변호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고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과 장학금 제도의 확충 등을 통해서 배려하기로 하는 한편, 예비시험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파행과 사교육 시장의 팽창, 또 고시 낭인의 양산 우려, 가난한 사람의 등용문으로 예비시험제를 두자는 취지와는 달리 로스쿨 3년 장기 교육을 피해서 단기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히 부자들이 사교육을 통해 이용하는 경향이 많아질 우려가 큰 점 등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살아

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시험 제도에 관하여 외국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상황 등을 고려해서 2013년에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명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변호사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효과의 지속성, 인적 자원의 사회적 배분 등을 고려해서 5년 내에 5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충실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자에게 양쪽 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지 않고 병행하는 사법시험 응시를 계속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병행하는 기간 동안의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현행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일부 단계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사법시험의 나머지 단계에 응시하는 것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제한 횟수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하여 출제한 문제를 동일한 시간에 실시하여 시험준비 부담을 다소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논술형에는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 취지를 살리고 시험 부담 등을 고려해서 논술형 필기시험으로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시험 과목은 인접한 복수의 법률 분야를 통합한 시험 과목을 마련함으로써 실무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내용을 고려해서 공법, 민사법, 및 형사법과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선택과목,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으로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 드리는 것은 올해 3월부터 개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한 충실한 법조인력 양성교육을 위해서는 새로운 변호사시험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형오 이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강용석 의원 등 7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용석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을 출신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입니다.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변호사시험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사위 안으로 올라온 법안을 보면 지난 2월에 부결되었던 안과, 변호사 시험에 응시 횟수를 5년에 세 번에서 5년에

다섯 번으로 고쳐 놓은 것 말고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국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조삼모사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지난 2월에 법안이 부결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학비가 연간 2000만 원이 드는 로스쿨을 3년간 다녀서 졸업한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일흔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수정안은 다른 모든 내용은 법사위안과 동일합니다. 오직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8년부터 단 10%만 로스쿨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예비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한 로스쿨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그것도 겨우 10% 때문에 로스쿨이 흔들린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 교육 대신에 검정고시, 대학 교육 대신에 학사시험이 있지만 누구도 검정고시나 학사시험 때문에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이 흔들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해 놓고 왜 예비시험을 인정하느냐?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은 2011년에 우리와 같이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에 예비시험제 도입을 예정하고 있고 10% 같은 식으로 예비시험 비율을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큰 주를 포함한 31개 주에서는 꼭 로스쿨 3년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19개 중소 주에서만 로스쿨 3년 졸업을 변호사시험의 자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왜 꼭 예비시험이냐? 로스쿨에서 장학금 주면 가난한 천재들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난을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가난한 것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 만큼 키워줬으니 돈 벌어 왔으면 하는 집안 눈치 봐야 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학비 비싼 사립대는 엄두를 못 내고 학비 없는 과기대나 육사, 경찰대를 가야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이 가난입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 등록금 좀 내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법사위안에서는 로스쿨의 장학금 확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허한 약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큼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사위안은 판검사, 변호사라는 직역에 로스쿨이라는 성을 쌓고 있습니다. 길을 내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로스쿨과 부유층을 위한 '성 쌓기 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를 위한 '길 내기 법'을 택하시겠습니까?

부디 수정안에 찬성해 주셔서 국민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김형오 강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로스쿨은 지난해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자마자 각종 소송에 휘말려 왔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온갖 논란과 토론을 거쳐서 추진이 됐습시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자마자 수많은 소송에 휘말린 까닭은 바로 국민의 여망을 도외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난 2월 12일 본회의에서 아주 의례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안이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서서 강용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과 소외계층의 배려 등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사필귀정이고 이런 국회의 부결은 국민 정서를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사위원회에서 또다시 원안과 다를 것도 없는 그리고 부대의견이라고 하는 법적 효력도 전혀 없는 것을 마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다시 의결을 한 것은 전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부결시킨 국회의원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가 도입을 했던 로스쿨제도는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변호사 수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OECD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법률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미 오래 전의 말이고 유권 무죄 무권유죄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보다 더 심한 부의 고착화와 그리고 법관직의 세습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1인당 소송사건의 수가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10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서 우리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법사위에서는 장학금제도를 확충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인가 때에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한 대학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인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제도를 이런 수준으로 하겠습니까라고 해서 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다시 장학금제도를 확충하라고 한다고 그 확충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장학금제도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는 그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대학생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학들의 재정상태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다시 장학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다른 단과대학의 학생들의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 스스로 법과대학 교수이고 우리 집도 법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의 문제 그리고 변호사 사회, 우리 법관사회의 문제점을 너무나 몸 전체로 잘 느끼고 있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지금 로스쿨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대단히 성업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신림동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강남입니다. 강남에 있는 로스쿨전문학원의 평균 수

강료가 과목당 50만 원 안팎입니다. 논술·영어 20만 원 안팎이고 6개월짜리 종합반 과정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스쿨 입학 준비를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 그리고 로스쿨 등록금만으로 6000만 원, 졸업 직후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서 변호사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최소 1억에서 2억 원이 들어간다면 여기 앉아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녀분을 얼마나 로스쿨에 입학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생계에 위협을 받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은 전혀 로스쿨에 들어갈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직이 세습화되고 그리고 부가 세습화되고 귀족화되는 이 길만은 막아야 합니다.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그러한 법사위의 변호사시험법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도서와 벽지 거주자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빈민층에게 장학금을 확대해서 도입을 한 것도 모자라서 예비시험을 도입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에서도……

○ 의장 김형오 정리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 박선영 의원 30개가 넘는 주에서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서 무려 30% 가까운 학생들이 예비시험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총 입학정원을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 10%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그렇게도 무리한 요구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들 가운데에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최소한의 길, 우리가 댐을 만들어도 물고기가 다니는 어로를 열어 놓는 법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부모에게 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진입장벽 자체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김형오 박선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倫碩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변호사시험법안의 성안 과정에 참여한 법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윤석 의원의 변호사시험법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계된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을 도입하여 로스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지난 2007년 국회가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취지를 도외시킨 견해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스쿨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제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건국 후 오랜 세월 고시제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고시를 통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 고급공무원도 되었습니다. 고시에 합격만 하면 장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뒤로 하고 신림동 고시촌에 모여 고시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고시 낭인이 양산되어 국가인력의 낭비가 극에 달했고 정규 대학 교육보다는 고시 준비 사교육이 횡행하는 등 그 폐해가 극심했습니다.

이에 시험에 의한 인재 선발방식의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방식인 영미식 로스쿨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뜨겁게 부딪혀 10여 년 동안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2007년 7월, 17대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로스쿨법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이 통과되었고 2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금년 3월 전국 25개 대학에 총 정원 2000명 규모의 25개의 로스쿨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전공의 우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에 들어와 3년간 전문적·체계적 교육을 받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10여 년 고심하여 로스쿨제도를 도입해 놓고 그와 별도로 그 뒷문에서 로스쿨 교육을 받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것은 한마디로 로스쿨제도 도입의 취지를 몰각하는 주장이고 로스쿨제도를 채택한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이름만 바꾸어 사법시험을 계속 존치하자는 것에 다를 이 아닙니다.

혹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처럼 가난한 학부 졸업생은 학비가 비싼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할 변호사가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행 사법시험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아무런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스쿨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특별전형 등을 통해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후에는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에 따라 실제로 금년도에 125명이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였고, 327명이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행 사법시험은 전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난해서 로스쿨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포퓰리즘 주장입니다. 강 의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비시험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비시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비시험을 오히려 로스쿨 교육을 생략하고 단기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예비시험이 이용될 우려가 큼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비싼 사교육을 받고 예비시험에 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 로스쿨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변호사시험의 문호를 열겠다고 합니다. 2000명의 10%면 200명입니다.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가 1000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만약 로스쿨 졸업생 외에 200명을 별도로 예비시험을 통해 합격시킨다고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사법시험이 돼서 현행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것입니다. 다시 신림동 고시촌에 200명의 자리를 노리는 수만 명의 고시생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처럼 강 의원이 제시한 변호사예비시험은 위험천만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2013년에 예비시험 도입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병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비시험제도를 논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당장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을 명시하자는 강 의원의 수정안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로스쿨제도에 족쇄를 채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제도의 개선에는 어떠한 긍정적 효과도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혹시라도 자세히 모르시고 수정안에 서명하신 의원님들이 있으시다면 예비시험제도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이해하시고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수정안에 반대하여 주시고 사법시험법안 원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 김형오 장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윤근 의원, 우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 우윤근 의원 단하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수정안 반대.)

수정안 반대.

박영선 의원은?

(○ 우윤근 의원 단하에서 — 찬성토론입니다.)

수정안 찬성.

토론은 우윤근 의원과 박영선 의원 두 분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앞의 두 분은 5분 시간을 초과했는데도 똑같이 봐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 다 5분, 시간 범위를 꼭 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윤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윤근 의원 원래 찬반이 교차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께서 저 보고 먼저 하라고 해서 좀 불리한 구도입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에 수많은 논란과 토론을 거쳤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짧은 시간에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우리 특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또 자문위원회에서 세 차례, 자문위원들은 여야가 공히 시민단체·학계·법조인 모두 망라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세 차례, 공청회를 두 차례 한 달 동안에 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90%가 예비시험을 두는 것은 존경하는 강용석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성을 쌓기도 전에 쌓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 성을 쌓은 다음에 허물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존경하는 강용석 의원을 비롯한 78인의 동료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의 취지, 제일 중요한 쟁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법안에 충분히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전형, 취약계층을 위한. 올해 약 6.5% 2000명 중에 120명의 취약계층이 선발됐습니다. 또 장학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많은 돈이 듭니다마는 졸업하고 나서 10년에 걸쳐서 다 갚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충분히 특별전형제도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다, 또 부족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도 이후에 로스쿨이 성을 쌓고 난 다음에 다시 성을 허물 것인지 섣길을 틀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또 지금 법과대학의 기득권 신뢰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제도를 병존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실한 것은 제가 정부를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보태줘야 된다 또 막 출범한 로스쿨제도에 우리가 신뢰를 줌으로써 그 견고한 성을 쌓고 난 다음에 허물 것인지 섣길을 틀 것인지 마련하는 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저도 아주 시골 촌놈이 어렵게 공부해서 운이 좋아서 사법시험에 20년 전에 붙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 충분히 잘 알고 있기에 한 달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정말 말로만 심도 있는 논의가 아니라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국가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우윤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선 의원 법사위에서 비법조인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영선입니다.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법사위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한 달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법조인으로 해서 모두 찬성하는 분들만 구성이 돼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몇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권하셨던 분, 한 분하고 반대하셨던 한 분이 들어가서 구성은 찬성하셨던 분 다섯 분에 기권하셨던 한 분, 반대하셨던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문제가 바로 부대의견과 부칙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문제를 원래는 부칙 조항에 달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것을 부칙으로 달기에는 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의논한 끝에 부대의견으로 이것을 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대의견으로 법무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제가 법무부장관님께,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부대의견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2012년에 법무부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다시 업무보고를 하셔서 좀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처음에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시는 것 가

지고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 주시겠다고 좀 확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 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상당수가 또 안 계실 수 있고요, 법무부장관님은 특히 그때 안 계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2013년에 예비시험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신뢰를 갖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요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스쿨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저희가 많이 모방을 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특파원을 하면서 보니까 미국은 로스쿨제도를 운영하면서 ‘베이비 바(Baby Bar)’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바라는 것은 미국에는 인가된 로스쿨이 190개가 있고 인가되지 않은 로스쿨이 또 있는데, 이 인가되지 않은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베이비 바라는 시험제도를 줘서 1학년 때 이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2학년부턴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똑같이, 인가된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과 똑같이 다시 한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예비시험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미국에 많은 불만을 가진 세력들, 그러니까 로스쿨에 돈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이 법으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숨통을 트면서 그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사회 제도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비시험제도를 반드시 저렇게 꼭 막아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경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법은 법무부에서 채동욱 법무실장이 참 수차례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그동안 많은 의원들과 소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수정안이 또 제출되었기에 그 사이에 있었던 법사위 상황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러 나온 겁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판단과 그다음에 투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박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약속대로 시간을 다 지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석 의원 등 78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40인, 반대 154인, 기권 27인으로 강용석 의원 등 78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25인, 기권 37인으로서 변호사시험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위 : 명, %)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인원	비율 (A)	인원	비율 (B)			인원	비율 (A)	인원	비율 (B)	
서울대	1,856	17.83	3,192	30.52	-12.69	경성대	1	0.01	1	0.01	0.00
고려대	1,559	14.98	1,717	16.42	-1.44	강남대	-	-	1	0.01	-0.01
연세대	1,456	13.99	1,210	11.57	2.42	순천향대	2	0.02	1	0.01	0.01
성균관대	678	6.51	705	6.74	-0.23	공군사관학교	4	0.04	1	0.01	0.03
한양대	592	5.69	642	6.14	-0.45	동덕여대	1	0.01	1	0.01	0.00
이화여대	686	6.59	540	5.16	1.43	교육대	-	-	1	0.01	-0.01
부산대	222	2.13	274	2.62	-0.49	경남대	3	0.03	1	0.01	0.02
중앙대	208	2.00	195	1.86	0.13	호남대	-	-	1	0.01	-0.01
경북대	197	1.89	191	1.83	0.07	호서대	1	0.01	1	0.01	0.00
경희대	301	2.89	188	1.80	1.09	강릉대	-	-	1	0.01	-0.01
전남대	159	1.53	172	1.64	-0.12	배재대	1	0.01	1	0.01	0.00
서강대	234	2.25	164	1.57	0.68	상지대	2	0.02	1	0.01	0.01
한국외대	252	2.42	143	1.37	1.05	우석대	1	0.01	1	0.01	0.00
건국대	119	1.14	118	1.13	0.01	서원대	-	-	1	0.01	-0.01
경찰대	89	0.85	114	1.09	-0.24	선문대	-	-	1	0.01	-0.01
동국대	69	0.66	93	0.89	-0.23	기타	-	-	14	0.13	-0.13
서울시립대	129	1.24	86	0.82	0.42	기타 4년제	-	-	34	0.33	-0.33
전북대	84	0.81	66	0.63	0.18	포항공대	40	0.38	-	-	0.38
아주대	61	0.59	43	0.41	0.17	학점은행	24	0.23	-	-	0.23
단국대	27	0.26	40	0.38	-0.12	한국항공대	13	0.12	-	-	0.12
국민대	38	0.37	39	0.37	-0.01	덕성여대	9	0.09	-	-	0.09
충남대	72	0.69	38	0.36	0.33	서울교대	8	0.08	-	-	0.08
숙명여대	121	1.16	37	0.35	0.81	한국교원대	7	0.07	-	-	0.07
동아대	75	0.72	37	0.35	0.37	상명대	7	0.07	-	-	0.07
인하대	54	0.52	36	0.34	0.17	평생교육진흥원	6	0.06	-	-	0.06
원광대	41	0.39	31	0.30	0.10	성공회대	6	0.06	-	-	0.06
영남대	61	0.59	31	0.30	0.29	경인교대	6	0.06	-	-	0.06
송실대	39	0.37	24	0.23	0.15	전주교대	5	0.05	-	-	0.05
홍익대	73	0.70	16	0.15	0.55	인제대	5	0.05	-	-	0.05
한국방송통신대	12	0.12	16	0.15	-0.04	대구카톨릭	5	0.05	-	-	0.05
강원대	28	0.27	14	0.13	0.14	대구교대	5	0.05	-	-	0.05
한동대	61	0.59	12	0.11	0.47	청주교대	4	0.04	-	-	0.04
충북대	47	0.45	12	0.11	0.34	서울여대	4	0.04	-	-	0.04
조선대	26	0.25	11	0.11	0.14	한예종	3	0.03	-	-	0.03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출신대	로스쿨		사법시험		증감 (A-B)
	인원	비율 (A)	인원	비율 (B)			인원	비율 (A)	인원	비율 (B)	
성신여대	20	0.19	10	0.10	0.10	목포해양대	3	0.03	—	—	0.03
광운대	13	0.12	10	0.10	0.03	대전대	3	0.03	—	—	0.03
명지대	9	0.09	10	0.10	-0.01	공주교대	3	0.03	—	—	0.03
한국해양대	15	0.14	10	0.10	0.05	해군사관	2	0.02	—	—	0.02
서남대	—	—	8	0.08	-0.08	한성대	2	0.02	—	—	0.02
인천대	7	0.07	8	0.08	-0.01	을지대	2	0.02	—	—	0.02
경원대	2	0.02	7	0.07	-0.05	울산과학기술대	2	0.02	—	—	0.02
계명대	9	0.09	7	0.07	0.02	송실사이버대	2	0.02	—	—	0.02
경상대	4	0.04	7	0.07	-0.03	부산교대	2	0.02	—	—	0.02
부경대	13	0.12	6	0.06	0.07	한세대	1	0.01	—	—	0.01
경기대	2	0.02	5	0.05	-0.03	한국사이버대	1	0.01	—	—	0.01
육군사관학교	10	0.10	5	0.05	0.05	한국기술교육대	1	0.01	—	—	0.01
독학사	11	0.11	4	0.04	0.07	천안대	1	0.01	—	—	0.01
가톨릭대	19	0.18	4	0.04	0.14	차의과대	1	0.01	—	—	0.01
대구대	4	0.04	4	0.04	0.00	제주교대	1	0.01	—	—	0.01
영산대	6	0.06	3	0.03	0.03	장로회신학대	1	0.01	—	—	0.01
동의대	1	0.01	3	0.03	-0.02	을지의대	1	0.01	—	—	0.01
제주대	20	0.19	3	0.03	0.16	안양대	1	0.01	—	—	0.01
수원대	1	0.01	3	0.03	-0.02	신라대	1	0.01	—	—	0.01
안동대	—	—	3	0.03	-0.03	서울과기대	1	0.01	—	—	0.01
울산대	—	—	3	0.03	-0.03	백석대	1	0.01	—	—	0.01
목포대	1	0.01	3	0.03	-0.02	동서대	1	0.01	—	—	0.01
세종대	10	0.10	2	0.02	0.08	대진대	1	0.01	—	—	0.01
카이스트	96	0.92	2	0.02	0.90	대구한의대	1	0.01	—	—	0.01
창원대	2	0.02	2	0.02	0.00	대구외대	1	0.01	—	—	0.01
순천대	2	0.02	2	0.02	0.00	금강대	1	0.01	—	—	0.01
관동대	—	—	2	0.02	-0.02	글로벌사이버대	1	0.01	—	—	0.01
청주대	1	0.01	2	0.02	-0.01	광주대	1	0.01	—	—	0.01
서경대	2	0.02	2	0.02	0.00	가천의과학대	1	0.01	—	—	0.01
한남대	2	0.02	2	0.02	0.00	가천대	1	0.01	—	—	0.01
부산외대	1	0.01	2	0.02	-0.01	외국대학	183	1.76	—	—	1.76
한림대	2	0.02	2	0.02	0.00	합계	10,410		10,458		—
전주대	1	0.01	2	0.02	-0.01						

* 2011년~2015년까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제44회)부터 2014년(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을 대상으로 분석

학교명	2012년도			2013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자	취업률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자	취업률
강 원 대	26	26	100.0%	29	27	93.1%
건 국 대	31	31	100.0%	31	25	80.6%
경 북 대	75	71	94.7%	85	69	81.2%
경 희 대	50	46	92.0%	51	48	94.1%
고 려 대	98	98	100.0%	100	84	84.0%
동 아 대	53	48	90.6%	45	42	93.3%
부 산 대	85	83	97.6%	84	77	91.7%
서 강 대	29	29	100.0%	35	31	88.6%
서 울 대	114	106	93.0%	132	115	87.1%
서 울 시 립 대	36	35	97.2%	46	33	71.7%
성 균 관 대	97	103	106.2%	100	85	85.0%
아 주 대	41	37	90.2%	39	32	82.1%
연 세 대	91	88	96.7%	101	90	89.1%
영 남 대	47	45	95.7%	49	45	91.8%
원 광 대	37	37	100.0%	40	35	87.5%
이 화 여 대	79	73	92.4%	80	62	77.5%
인 하 대	35	35	100.0%	44	39	88.6%
전 남 대	86	77	89.5%	83	65	78.3%
전 북 대	56	56	100.0%	62	55	88.7%
제 주 대	30	29	96.7%	27	20	74.1%
중 앙 대	35	39	111.4%	43	42	97.7%
충 남 대	64	63	98.4%	79	65	82.3%
충 북 대	37	42	113.5%	57	53	93.0%
한 국 외 대	41	34	82.9%	31	29	93.5%
한 양 대	78	76	97.4%	65	58	89.2%
합 계	1,451	1,407	97.0%	1,538	1,326	86.2%



송 석 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논거로 세간에 서는 독일이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가 1984년 이를 폐지 하고 다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했다는 주장이 거듭하여 제기되어 왔 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되풀이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25일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는데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1971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다가 1984년 이를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제도로 회귀한 독일의 사례"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독일 법과대학의 경우 1970/8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학생들은 대학입학 이전에 13년의 교육을 받고서 입학하는데 대학에는 교양과정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교과과정은 우리나라에서 학부 전공과정과 석사과정을 합친 것에 상응하였다. 전통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며 법률가, 의사, 교사나 개신교성직자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는 국가시험의 합격이 이를 대신하게 되어 있었다.

독일에서의 법률가양성제도는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그 이후의 실무연수라는 2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1차 국가시험은 법과대학의 졸업학위인 동시에 실무연수에의 입학시험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무연수를 마치고 제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법조직역(독일에서는 변호사, 판사, 검사 및 행정공무원이 이에 해당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는 이른바 완전법률가(Volljuristen)가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19세기말에 이르러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듯이 독일에서도 20세기초부터 법률가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혁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어 법철학자인 라트브루흐는 적극적인 사법개혁론자여서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던 1920년대초에 법학교육제도와 사법제도의 광범위한 변화를 추구하였다. 법률가양성제도와 관련하여 그는 제1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년동안 변호사로서의 실무수습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 변호사로서 종사할 것인지 국가가 주도하는 법관연수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고 제2차 국가시험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개혁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되어 1971년 독일법관법에 각 주에서 1단계 법률가양성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는 제1차 국가시험 전후로 대학교육과 실무연수로 나뉘어 있던 법률가양성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법학이외에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접학문을 도입하려 하였다. 각 주 별로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법학교육과 실무연수를 통합하는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어 시도되었지만 1984년 이후 전통적인 2단계 모델로 복귀하였다.

지난 7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여름계절강좌를 위해 방문했던 독일 함부르크대학의 마리온 알버스(Marion Albers) 교수는 필자와의 대담에서 1단계 법률가양성제도를 통해 법학교육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2단계 법률가양성제도에 비해 교과과정의 밀도가 높아서 힘들기는 했지만 학업 중간의 적절한 시점에서 실무연수를 함으로써 “재미없는” 실용학문인 법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 제도가 교육재정의 압박으로 확대되지 못했음을 아쉬워하였다.

요약하자면 독일에서는 이미 백여년전부터 대학교육과 법률가 자격시험이 연계되어 있었는데 단지 1971년에 몇몇 대학에서 실무연수과정을 대학교육과정으로 통합하는 실험을 했고 이후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미국식 로스쿨이 존재한 적도, 이를 도입한 적도, 따라서 실패한 적도 없다.

독일의 법률가 양성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국가시험에는 약 70%, 제2차 국가시험에는 약 80%가 합격하여 해마다 8천명 전후의 신규법률가를 배출하고 있다. 법률가의 수는 약 340,000명에 이르는데 그 중 약 220,000명은 전통적인 법조직역에, 나머지는 기업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일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로스쿨 도입 실패라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독일의 모델을 수용하여 인구대비 연간 5천명의 신규법률가를 배출하자고 주장하지 않는 모순의 배경은 무엇일까.

어느덧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칠년이 지나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그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제도를 보완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은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 대 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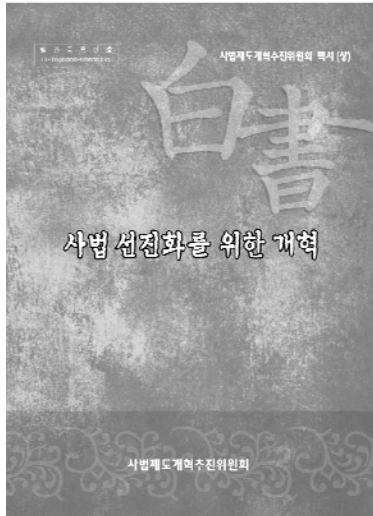
논문으로, 그리고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1998~2000)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위해 애썼던 사람으로서, 2007년의 로스쿨법 제정 후 드디어 2009년에 로스쿨이 현실로 출범해 그 3년 뒤부터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법조직 각 분야에 진출·활약하기 시작한 이래 로스쿨의 무난한 성공적 정착과정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며 그 장래를 낙관해 왔다.

헌데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2017년이면 사라지게 돼있는 사법시험제도를 존속시키려는 무분별·무책임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나라 전체를 위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낸다.

로스쿨제도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우리와 일본로스쿨의 경우를 혼동해서 생긴 것이다. 일본에서는 로스쿨인가를 받은 대학의 학부 법과대학과 사시를 존치시키고 또 변호사시험 합격정원도 예정했던 년 3000명 이하로 대폭 축소시켜 왔던 까닭에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해마다 급속하게 떨어졌고 따라서 로스쿨의 인기도 떨어지게 되었다. 사시존치주장은 잘 정착돼 온 우리나라 로스쿨도 일본의 실패의 예를 따르게 만들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매년 배출되는 법조인의 정원을 조정하는 법조계가 사시에서 배출될 법조인수를 감안해 로스쿨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조정할 것임에 틀림없고 이와 함께 구지 로스쿨을 가지 않고 사시로 법조인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통한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사시에 의한 법조인선발은 역시 전문직인 의사를 (의사)시험을 통해 뽑자는 것에 비견된다. 의사가 부족했던 과거 의대를 나오지 않고도 시험으로 의사가 될 수 있던 시절도 우리나라에 있었다. 고교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오늘의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 없이도 사시로 고매한 전문직(learned profession)을 양성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는 발상은 세계적 추세나 우리나라 발전의 추세에 비추어서도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서구선진국 가운데 대학교육 없이도 법률가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발간 자료집

로스쿨 제도는 제대로 이수한 대학학부졸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종래의 송무중심의 법률가뿐만 아니라 학부전공에 따른 전문분야(예, 특허법, 환경법, 경제법 등)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법률가 양성에 사시출신의 경우보다 단연 유리하다. 우리는 곧 전면적인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있지 않은가? 또 문사철(文史哲)을 비롯한 인문교육·사회과학 및 자연과학·공학 등을 두루 갖춘 대학에서의 제대로 된 학부·로스쿨 교육은 거기서 배출되는 법률가로 하여금 문제의 인성·직업윤리의식을 지니게 만드는 데도 사시의 경우보다 단연 유리하다.

종래에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 일학년 때부터 고시과목 위주의 암기식 공부를 하고 강의 수강도 고시과목 위주로만 했다. 법대생의 경우의 비사시법률과목은, 타과생의 경우 자기 전공과목은, 겨우 학점이나 따는 정도였다. 정치학과를 비롯한 사회대 인문대 등 여러 학과의 경우 과가 텅 빌 정도로 자기 전공과목은 팽개치고 고시학원 수강 등 고시공부에만 매달려 가히 캠퍼스 전체가 고시준비로 황폐화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로스쿨 체제는 대학 전체를 살리는 조치이기도 했다.

로스쿨이 주로 고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요 “개천에서 용 나는” 계층상승을 봉쇄하는 제도라는 주장은 허위다.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의 사회배경을 비교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보면 두 제도의 계층배경에 전혀 차이가 없다. 지금 로스쿨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광범위한 입학 및 재정 지원제도를 채택·운영하고 있다. 장차 고소득계층에 들어가게 될 로스쿨생에게는 근로장학금 이외 일체의 장학금이 없는 미국 로스쿨(및 메디칼스쿨)과 우리 로스쿨은 사뭇 다르다. 해결점은 로스쿨 약화가 아니고 오히려 로스쿨 정원과 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증원에 있다.



이 재 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2년 후에 그 수명을 다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을 되살리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법시험을 가난한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는 '희망 사다리'라고 부르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의 자녀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한다.

법조인 선발제도로써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치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사법시험이 계층 간의 이동을 위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못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닌 법조인의 선발제도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존치의 논의는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시험이 과연 훌륭한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느냐는 점과 사법시험이나 그 이전의 고시제도에 의하여 선발된 법조인들이 우리 굴곡진 현대사에서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였느냐는 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필자가 과문하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력이나 경력을 따지지 않고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법조인이 되는 제도는 최소한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는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고시제도에 의하여 생산된 법조인들이 권력의 편에 서서 주어진 특권을 누리기만 하였을 뿐 그 공익적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은, 법조인들이 일제 강점기 시절의 민족독립운동이나 인권 침해가 극에 달하였던 군사정부 시절의 민주화운동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슬픈 현대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신분이 상승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말이다. 법조라는 것이 누구를 출세시켜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존치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이전에 사법시험이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임을 논증하여야 할 것이다.

로스쿨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서민들이 진학하기 어렵다는 말이나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언뜻 그럴듯하기는 하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이고, 법조인이 될 만한 지능이나 자질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닐 정도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 최근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고졸 출신은 거의 없으며,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해도 그 응시자는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수재들이지 가난해서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로스쿨의 비싼 학비는 장학제도의 확충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나라에서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의 유지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의 일부만 투입하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두 제도의 어색한 병존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사법시험 출신들에게 부당한 우월의식을 가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앞으로 우리 법조에도 치유될 수 없는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법과대학이 없어진 지금에는 사법시험 응시자들은 학교에서 법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시험의 목적으로만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어서 아무런 기본적 소양이나 사회의식도 없는 책상물림이나 공부기제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 종래의 고시제도의 폐해를 더 깊게 할 것이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법시험을 이제 와서 되살리겠다는 사람들의 의식에는 사법시험을 통한 입신양명이라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향수가 배어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향수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퇴영적인 것일 뿐 아니라 건강하지도 못한 것이다. 개천에서 억지로 용을 만들려 애쓸 것이 아니라, 개천이란 곳이 있다면 다 같이 개천을 없애려고 노력하여야 할 일이다.

결국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제도로서 이상적인 것도 아니며, 한정된 시기에 그 소임을 다하고 이제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야 할 제도인 것이다. 법조인을 뽑는 제도를 계층들 사이의 이동의 수단으로 보는 낡은 생각도 같이 사라졌으면 한다.



천 경 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라가 망해 가던 19세기 말, 조선에 상비군이라고는 8000명이 안 됐다. 이웃 나라들은 수백만의 서구식 군대를 키우던 때다. 군사만 부족한 게 아니라 쓸 만한 기술자도 전문가도 없었다. 나라 꼴이 이러니 힘 한번 못 써보고 고꾸라진 게 놀랍지 않다.

그러면 조선 땅의 그 많은 인재는 다 무얼 하고 있었는가. 과거시험을 보고 있었다. 늙어서 노망이 나도록 되지도 않는 과거시험을 붙잡고 있었다.

일본과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을 맺은 지 3년 뒤인 1879년, 정시문과 응시자 수만 21만 3500명이었다. 15명이 합격했으니 경쟁률은 1만4000 대 1. 합격자 평균 연령은 세종 때 20대 후반이었으나 고종 때에는 38세였다. 평균수명이 40세가 안 되던 시절이다.

“인재는 시험이 아니라 양성돼야 시험만으로 전문가 뽑을 수 없어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는 로스쿨도 망치는 최악 선택 될 것”

정약용, 이익 등 선각자들은 과거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여론조사를 했더라도 과거제 찬성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을 것이다. 과거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결국 1894년 갑오개혁에서 과거제가 폐지됐지만 조선이 근대화의 격랑에서 살아남기는 이미 늦었다. 개천에서 난 용들은 나라를 구하긴커녕 대개는 친일파가 되었고 더러는 향리에 숨었다.

우리 민족은 왜 그렇게 과거제에 집착했을까. 왜 지배 엘리트조차 그 폐해를 끊는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 오랫동안 가졌던 의문에 대해 답 아닌 답을 얻었다. 21세기의 법무부도 7년 전에 법률로 정한 약속을 홀랑 뒤집어 사법시험 폐지를 연기하겠다는 걸 보니, 갇혀 있던 19세기에 어찌 다른 선택이 가능했으랴 싶다.

과거제는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당시로선 선진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시험을 치러 성적으로 선별한다는 아이디어는 근대 문명의 다양한 전문가를 길러내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진국의 주류적인 엘리트 충원 방식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이 됐다.

건국 초부터 대한민국은 고시로 법률가를 선발했다. 의대를 안 나와도 의사고시만 붙으면 의사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교육시설과 역량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의학이나 법학 고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시험 한 방으로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다. 한국이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양성'을 택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결단이었다. 역사적 사명을 다한 사법시험 제도는 이미 7년 전 법으로 정해놓았듯이 예우를 갖춰 작별 인사를 하면 됐다. 7년 차에 이른 로스쿨을 더 좋게 다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느닷없이 사시 폐지를 4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여론이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한다는 이유다. 여론이 그런 건 당연하다. 정확한 속사정을 모르는 국민들로서는 사시가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과 형식적 공정성을 저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화도조약 후에도 20만 명씩 과거를 봤던 시험지상주의가 우리 DNA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19세기 말의 여론도 압도적으로 과거제 존치였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에 따라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여론조사만 봐도 사시 존치에 찬성한다는 답변과 폐지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합치면 109%나 된다. 존치할지 물어도 예, 폐지할지 물어도 예라고 답한 사람이 꽤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설문에는 사법시험에 대한 미사여구가 붙어 있어 공정성 시비도 있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여론대로 결정한다면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 여론조사에만 따른다면 미국산 쇠고기는 매년 수입 금지와 허가를 반복해야 할 것이고, 학교 급식은 무상인지 유상인지 학기마다 새로 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로스쿨의 문제점도 많고 개선할 것도 많다. 교육의 질도 손봐야 하고 교수들도 각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시 존치는 그 해결책이 전혀 되지 못하고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제 와서 사시 신규 응시자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사시의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하면서 로스쿨 본연의 기능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다. 필자는 22년 전 합격했던 사시와 훌륭한 교육을 시켜준 사법연수원에 애뜻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이제 사시는 예정대로 역사 속으로 고이 보내고 로스쿨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정녕 사시 존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면 공청회에서 당당하게 근거를 밝히고 토론해야 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입장을 유보하다가 신기남 의원 건으로 로스쿨 비

난 여론이 비등한 시기에 기습 발표를 했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대법원이나 교육부와도 전혀 의견 교환이 없었다. 발표문에서는 어떠한 비전도 찾기 어렵고 그저 허술한 전화 여론조사의 등 뒤에 숨었을 뿐이다. 반대 목소리에 놀라 하루 만에 최종 의견이 아니라고 물러섰지만 그 속내는 모른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그 무책임과 비겁함이 슬프다.



김 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전 서울변회 회장

사시 폐지 문제가 법조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법조 3륜이 모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예비 법조인들까지 공부를 하다 말고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다. 법조계 내부의 갈등이 이토록 심화됐던 적은 없었다. 국회와 대법원,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시존치 여부를 재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반복 자체가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사시의 문제점이 극복되지 않았기에 사법개혁이 거론됐다. 사시 기수문화를 바탕으로 법조 카르텔을 형성해 전관예우를 낳는 문제가 있었고, 연 880억 원의 혈세가 사시 제도에 투입되는 반면, 양성되는 법조인 중 극히 일부만 공직에 진출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했다. 또 사시 합격률이 2.94%에 불과하고 97%의 응시자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도 못한 채 고시낭인으로 전락했으며, 대학의 법학교육은 도외시한 채 신림동 고시촌의 고액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것이 병폐였다.

이를 개혁하고자 1995년부터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필두로 범국가적인 논의를 거쳐 2007년에 로스쿨 제도가 시행됐다. 이러한 사법개혁은 사시 폐지를 전제로 했고, 다만 사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을 배려해 무려 2017년까지 유예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 자퇴서를 쓰고 거리에 나가 있는 로스쿨 학생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할 때의 일이다.

그들이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조인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정부가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법조인을 양성하겠다고 입법으로 약속한 것이다. 모범적인 학생들이 착실하게 공부해 로스쿨에 진학했고, 성실하게 법률을 익히며 법조인으로 봉사할 날을 꿈꾸고 있었다. 만약 사시가 존치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누가 로스쿨에 진학했겠는가? 사시존치는 법조계 기수문화가 공고하게 유지됨을 의미하고, 그 속에서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지위는 온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불안한 자리를 어느 청춘이 꿈꾸었겠는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면면을 보면 법조 기득권을 고집하는 세력과 고시촌 상인,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대 교수, 로스쿨 제도에 아직 편입되지 못한 수험생들뿐이다. 이들

은 사시의 폐해는 돌아보지 않은 채 로스쿨에만 칼을 겨누고 있다. 이미 폐지하기로 한 사시가 존치돼야 한다면 사시의 폐해를 시정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이 대책도 없이 음서제 등 근거 없는 낭설로 국가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흔들고 있는데, 법조 3륜이 흔들린다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들의 억지 주장에 흔들려 사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음은 물론이고, 앞으로 국가가 어떤 제도를 내놓든 로스쿨의 경우를 떠올려 아무도 국가를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 몇 년 후 억지 주장으로 다시 예전으로 회귀해야 한다면 국가 정책을 바꾸려 들 것인데, 그런 사회에서는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힘들다.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첫째, 약속대로 사시를 폐지해야 한다. 사시 권력이 계속하여 승계된다면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사시를 존치 또는 유예하겠다는 것은 사법개혁을 포기함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주입식 암기 위주의 과거시험과 흡사한 시험만 합격하면 일약 개천의 용으로 승천한다는 낡은 출세지향적 구도는 탈피할 필요가 있다. 법조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일 뿐이다.

둘째,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로스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로스쿨이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며 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반면, 로펌 등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때에는 여전히 가정환경 조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셋째, 로스쿨 재학생들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선배 법조인으로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크다. 하루 빨리 학교에 복귀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해야 한다.

넷째, 오랜 유예기간 동안 사시 합격의 꿈을 이루지 못한 수험생들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이들에게 무한정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장학금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로스쿨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구성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법조인양성제도의 현안과 과제

의견서

한 인 섭 교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2014-2015))



제1장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방향성 122

1. 로스쿨 제도는 황폐화된 우리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도입 122
2. 로스쿨 제도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 속의 법률가상' 양성을 위해 도입 124
3. 국가 전문 인력은 사설학원 교육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어야 함 126
4. 대학은 관료적 연수원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장과 토론이 오가는 공간임 126
5.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에 보다 적합한 제도 127
6. 로스쿨 제도는 글로벌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 127
7. 로스쿨은 대학 교육과정 정상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상당한 성과 129
8. 인력 누수·낭비 방지 면에서 로스쿨의 상대적 강점 130
9. 로스쿨에 보완 필요하지만, 제도내적인 개선이 가능함 132
10.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음 135
11. 로스쿨 제도는 흔들림 없이 유지·개혁되어가야 함 136

제2장 사법시험 연장론의 문제점 137

제3장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제언 141

1.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안정화하여 예측가능성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용 141
2. 로스쿨 제도 자정 노력 : 로스쿨 공정성 심사·평가센터의 도입 144
3. 방송통신교육과 연계된 예비 로스쿨의 도입 방안 146



제1장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방향성

1. 로스쿨 제도는 황폐화된 우리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도입

-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법과대학 법학교육 파행 → 다수의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신림동’으로 대표되는 사설 고시학원가에서 사법시험 공부에 몰두¹⁾²⁾
-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비법학 전공자의 전공교과 학습 몰입도 저하 → 학부 교육 전반의 파행(‘대학의 고시학원화’)³⁾⁴⁾
- 학부 교육 학업성취도를 중시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대학생들의 자기 전공교과 학습에 대한 몰입도 상승 → 학부 교육 전반의 정상화
-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수험 준비 위주에서 벗어나,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됨 →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시작 됨

[사례]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과 인권」 통권 제14호 출간기념회

: 최고권위의 학생주도형 공익인권법학 전문 학술지로 자리매김」 (법률신문 2014. 11. 24.자)

(전략)... “원래 ‘공익과 인권’은 로스쿨 제도 도입 전부터 있었지만 로스쿨 출범 이후로는 서울대 로스쿨 인권법학회가 인수하여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년 책을 받아보면서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창시절에 직접 학술지를 만들며 이미 쌓인 성과들을 해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수행한 걸 포석으로 삼아, 리더(reader)에서 리더(leader)로, 언젠가 희랍세계에서 시인들이 실제로 그러했듯이 만들어내는 자(poein, maker)로 성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략) 차민형 ‘공익과 인권’ 편집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5기, 24)은 “사회전반의 ‘불편함’을 이야기할 때 그 문제제기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커녕 도리어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현실이 불편했다”며 “불편한 상황에 놓인 채 도움은 받지 못하고 다만 처한 상황을 설명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는 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학술지를 우리 손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편집 업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역대 ‘공익과 인권’의 모

든 기고문들과 관련사항들은 한국학술정보원 홈페이지(<http://kiss.kstudy.com>)와 ‘공익과 인권’ 공식 블로그(<http://snuhumanrights.tistory.com/>)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로스쿨생 학술지 발간 잇따라

: ‘충북대 로저널’ 최근 2호 발간, 아주·경북·제주대 등 발간 준비」

(법률신문 2009. 9. 26.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학내 학술지 제작에 분주하다. 충북대 로스쿨생들로 구성된 ‘충북대 로저널 (CLJ)’ 편집부(편집장 서찬규)는 지난 5월 충북대 로저널 창간호가 발간한 데 이어 최근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민일영 당시 청주지법원장의 인터뷰 등 다양한 읽을거리들이 수록됐다. 분량도 55페이지에서 80페이지로 대폭 늘렸다. 충북대 로저널은 앞으로 연 4회 발간을 계획 중이다. 충북대에 이어 아주대, 경북대, 제주대 등도 학생들의 손으로 ‘로저널’을 발간할 예정이다. ‘아주대 로저널’ 편집부(편집장 윤선아)도 이달 말에 창간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 2회 발간할 예정이다. 아주대 뿐만 아니라 전국 25개 로스쿨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150여쪽 분량으로 외부 법조인들의 글과 아주대 로스쿨생들의 판례평석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실린다. 윤 편집장은 “힘든 로스쿨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 창간호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주대 로저널은 한국학술진흥원에 학술지로 등재하기 위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맞춰 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대와 경북대도 ‘로저널’ 창간호를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이처럼 로스쿨생들이 학내 학술지를 발간하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로스쿨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로스쿨 교과과정에 대한 중간검토와 기록을 하기 위해서다. 충북대 로스쿨 노병호 원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술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실무 법조인들도 만나고 다양한 판례들도 접하면서 보다 넓은 법조인의 시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 학술지 ‘로리뷰’ 발간」 (연합뉴스 2010. 11. 10.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학술지 ‘부산대 로리뷰’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부산대 로리뷰 편집위원회’는 9일 425쪽 분량의 법률 전문 학술지 ‘부산대 로리뷰’ 창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창간호는 분야별 법학논단, 판례 논평, 사회적 이슈 연구, 학회 연구 발표, 금융·해운 전문가와의 인터뷰, 실무 수습기 등을 담았다. 법학 논단에서는 노동법과 지적재산법, 소방법, 세법, 통신법, 공정거래법,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수록했고, 판례 논평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공정한 선거구와 경계선 획정 등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또 사회적 이슈 연구 분야는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소논의,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협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 등으로 구성했다. 이 학술지 편집장인 진원태 씨는 “건강한 법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술지를 발간했다.”라면서 “앞으로 문호를 개방해 법조인과 연구자들의 기고문을 수록하는 등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북부지검, 4개 대학 로스쿨과 5일 합동 학술대회」 (뉴스1 2015. 11. 5.자)

서울북부지검(검사장 이창재)은 고려대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 관내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5일 오후 2시 성북구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합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 학술대회에는 서울북부지검 이창재 검사장과 이완규 차장검사 등 검사 29명과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실무상 쟁점인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관련 문제와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중략) 검찰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검찰과 법학전문대학원 간 소통과 교류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앞으로도 실무 쟁점과 주요 형사정책 방향에 대해 관내 법학전문대학원과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 로스쿨 제도는 ‘법조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 속의 법률가상’ 양성을 위해 도입

- 사법시험 제도에는 없었으나 로스쿨 제도에서 신설한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통하여 매년 일정 비율의 장애인, 탈북자,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게 그 문호를 제도적으로 개방⁵⁾⁶⁾ → 2015년 8월 현재 로스쿨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통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수는 315명에 이름
-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조인으로 양성된 취약계층 출신 변호사들은 이미 사회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대변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음⁷⁾
- 로스쿨 교육기간 중 장학금과 생활비 등 지원을 통하여 능력이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기회 제공⁸⁾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사법시험보다 로스쿨 제도가 더 유리함
- 로스쿨 도입 이후 기존의 전통적 법조직역을 넘어서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수 증가 추세에 있음⁹⁾¹⁰⁾¹¹⁾ → 법무부 법률홈닥터, 공익인권관련 법률단체,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대학과 대학 내 인권보호기관 등 활동영역의 다변화¹²⁾
- 로스쿨 제도는 지역대학 출신자에게도 그 문호를 일정 비율 제도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닦아 나가고 있음¹³⁾

[사례]

※ 「롤리코스터 탄 시각장애 변호사...“덜 무섭다” vs “위험하다”」 (연합뉴스, 2016. 4. 25.자)

(전략)... 곧바로 흰 안전모를 쓴 직원 4명이 선로 옆 비상용 철제 계단으로 열차를 향해 올라왔다. 이들의 통제에 따라 열차 6열에 앉은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변호사도 다른

탑승객처럼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내려왔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고연금 부장판사 등 승객 36명이 모두 대피하는 데는 약 15분이 걸렸다. (중략) **김 변호사가 놀이기구를 탄 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가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놀이기구 탑승 허용 소송’의 현장 검증**을 열면서다. 김 변호사는 시각장애인 측 소송대리인이다.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지난해 5월 에버랜드를 방문해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했다.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였다. 장애인들은 “이전에도 타 본 적이 있다”며 반발했지만 에버랜드 측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며 막아섰다. **이들은 에버랜드의 운영주체 삼성물산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타면 위험할 것이라는 편견을 근거로 놀이기구 7개의 장애인의 탑승을 전면·일부 제한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후략)

※ 「‘이주민 지원은 내 운명’.. 공익센터 ‘감동’ 고지운 변호사」 (이데일리 2016. 3. 21.자)

(전략)...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사와동행’(이하 감동)의 고지운(38) 변호사는 18일 “이주민을 위한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렇게 말했다. 연세대 법대를 나온 그는 으레 그렇듯 사법고시에 매달렸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일반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차에 마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생겨 이화여대 로스쿨 1기생으로 들어갔다.** (중략) 이주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겠다 마음먹었지만 현실의 장벽은 높았다. 2012년 9월 서울 대림동 이주민지원센터에서 무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에게 돈을 벌 방법이라곤 국선변호인밖에 없었다. 건당 30만원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한 달에 사건 하나 맡기도 쉽지 않았다. 얹친 데 얹친 격으로 2013년 말 이곳마저 운영난으로 문을 닫게 됐다. (중략) 고 변호사는 사무실로 찾아오는 이주노동자의 법률 상담 외에도 인권 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소를 직접 찾기도 한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출국시키기까지 보호하기 위한 곳인데 현재 화성·청주·여수에 있다. 고 변호사는 “화성 보호소는 자주 찾는 편이라 시설 측에서도 이를 의식해 예전보다 인권의식이 조금 나아졌는데 지방은 실제 상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힘든 일을 관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제가 아니면 이분들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려 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점점 더 많은 이주노동자의 딱한 사연을 알게 되는데 도저히 그만 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후략)

※ 「구청 ‘법률 상담터’ 입소문 타고 인기」 (부산일보, 2014. 7. 3.자)

(전략)... 현재 전국 4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남구와 사상구가 지난 5월 20일부터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이다. 법률 상담터에 선임된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각 구청 관련 부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인 법률 상담 지원 대상이지만, 다른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

남구청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하루 5~10건 정도이던 상담 건수가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하루 30건까지 급증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요즘에는 무작정 찾아왔다가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기 어려울 정도”라고 귀띔했다. (중략) 그동안 변호사 상담이 멀게만 느껴졌던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법률 흠닥터로 일하고 있는 변호사도 큰 보람을 얻고 있다. 남구청에서 근무 중인 박보름 변호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보람”이라며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 「광주 서구, 우리동네 변호사 ‘법률닥터’ 운영」 (NSP 통신, 2016. 1. 31.자)

광주시 서구(청장 임우진)가 권역별로 찾아가는 우리동네 변호사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지난 25일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로스쿨 출신 젊고 유능한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서구 법률자문단은 직원의 업무추진상 법률문제 자문기능의 법률자문단과 주민들의 민사, 가사, 민생침해 등 생활법률문제 무료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2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권역별로 변호사를 지정하고 방문상담일에 직접 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을 직접 만나 법률문제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미리 상담접수를 하면 접수일에 맞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국가 전문 인력은 사설학원 교육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어야 함

-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충원은 현대 선진교육제도의 기본 모델 → 정규 교육과정과 사실상 단절된 선발시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법시험 제도 외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움¹⁴⁾
- ‘줄세우기식’ 선발에 치중해 온 사법시험 제도 → 대학의 법학교육 제도와 국가시험 준비과정이 괴리됨¹⁵⁾
-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개인이 정규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법률지식을 알아서 습득할 것을 요구해 온 사법시험 제도¹⁶⁾ → 특히 비법학 전공 사법시험 준비생에게는 사설 고시학원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음

4. 대학은 관료적 연수원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장과 토론이 오가는 공간임

-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판례를 답습하는 ‘수험법학’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법적 논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적 법조인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바탕¹⁷⁾¹⁸⁾

- 대학의 본령은 자유로운 학문 연구와 토론 및 논쟁 → 창의적 법조인 양성에는 기존의 사법연수원 체제보다 대학 내에 설치되는 로스쿨 제도가 유리함
- 일원화된 사법연수원 체제와 달리,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각 대학별 특성에 맞게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법조인 양성에 더 기여할 수 있음

5.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에 보다 적합한 교육 제도이며, 특히 이공계 전문지식을 겸비한 법조인을 제도적으로 다수 배출할 수 있는 방안

-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월 대한변협 주도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신규 출범할 정도로 이공계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이 다수 배출 → “이들 모두 지식재산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충분히 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열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의 발언)¹⁹⁾
- 과학기술·공학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특허와 관련한 국제분쟁 등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세계화 흐름 및 새로운 산업적 수요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에는 로스쿨 제도가 적합함²⁰⁾
→ 비법학 전공자 비율 : 사법연수원 22.3% < 로스쿨 60.7%¹⁾
→ 공공기관·기업 등 신규 확대 직역 진출자 비율 : 사법연수원 15% < 로스쿨 26.5%²⁾

6. 로스쿨 제도는 국제 법률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해 나갈 주역이 될 21세기형 글로벌 법조인 양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

- 법조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영미·유럽권 로펌의 국내시장 진출 → 우리 법조시장의 수호와 새로운 법조시장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는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려 새로운 시장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임²¹⁾
- 국제적 법률분쟁 시장을 주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필요함
-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실력의 기초 위에, 글로벌 마인드와 법률지식을 겸비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 경주²²⁾

1) 이재협,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2015), 383면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시험 폐지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38면 [표27]

[사례]

※ 송석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 『법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법교육학회, 2015, pp.55-5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3인의 외국인 전임교수가 미국법, 독일법, 중국법, 일본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여름방학에는 외국대학의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여름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또한 방학 중에 관심 분야에서 실무연수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으며 때로는 외국대학의 강좌에 참여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성적의 공개로 인해 이처럼 변호사시험 성적에 직접 도움 되지 않는 부분이 등한시될까 우려된다.

필자는 독일 학술교류처(DAAD)의 재정지원으로 독일 뮌헨대학에서 주관하는 서울대학, 뮌헨대학 및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의 대학원생 교류 프로그램을 한국측 지도교수로서 함께 조직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2년에는 독일 뮌헨대학에서, 2013년에는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의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서울법대에서는 대학원 박사과정생과 함께 2012년에는 2명, 2013년에는 5명의 법학전문대학원 1, 2학년생이 참여하여 몇 달 동안 준비한 주제를 영어로 발표하였다. 모든 법과대학과 로스쿨이 고시학원화 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뮌헨대학에서 개최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서울대 재학생에게는 학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이다.

※ 「[300대 기업 법무팀 설문] 2015 대한민국 로스쿨 랭킹」 (한경Business 2015. 12. 29.자)

(전략)... 로펌 및 기업 법무팀 관계자들은 특히 고려대 로스쿨의 전문 인증 제도와 해외 인턴 파견에 주목하고 있다. 고려대 로스쿨은 15개 첨단 법 중심의 전문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상법·조세법·노동법·공정거래법 등이 대표적인 특화 인증 프로그램이다. 또한 매년 재학생 중 10여 명을 선발해 해외 인턴으로 파견하고 있다. 미국·홍콩·싱가포르 등 고려대 로스쿨과 교류 관계에 있는 대형 로펌들이 주요 파견 기업이다. 왕복 항공료 등 소요 경비의 일부도 로스쿨에서 지원한다.

※ 「[한국의 로스쿨] 경희대 로스쿨, 학생 10명당 교수 1명‘밀착지도’... 변시 합격을 최상위권」 (이투데이 2015. 8. 20.자)

(전략)... 로스쿨 설립 당시부터 국제법무대학원이란 특수 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던 경희대는 관련 교수진과 교육 노하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특성화 전략을 세웠다. 특성화 분야인 글로벌

기업법무를 통상·금융·기업조세·IT&IP 4개 트랙으로 세분화 하고, 트랙별 14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시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국제거래, 국제통상, 국제금융, IT법무, 지적재산권, 조세, 법조윤리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 이슈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학교 측은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해 특성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센터는 일본, 중국, 미국, 독일 등 총 11개국 21개 해외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자매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미국 시러큐스(Syracuse) 로스쿨, 애크런(Akron) 로스쿨 등에서 계절학기 및 교환학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7. 로스쿨은 대학 교육과정 정상화와 전문인력 양성에 상당한 성과

- 로스쿨 입학 요소 중 대학 성적 반영 비율은 평균 20%를 상회함 → 학부 교육 전반의 정상화에 일조
- 사법시험 준비의 경우와는 달리, 로스쿨 입학 전 전업으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자의 비율은 7.1%에 불과³⁾ → 경력단절 문제 및 국가 인력 낭비 문제의 해소
- 법학교육의 사설학원 교육 의존 문제 해소
-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법학'이 아닌, 정규적 법학교육 제공
- 실무교육 연계를 위한 노력 지속 → 법률실무과목 개설, 실무수습과 임상법학 교과목(legal clinic) 운영²³⁾

[사례]

※ 「고대 로스쿨, 미얀마 주민 대리해 국내 기업 상대로 소송」 (머니투데이 2016. 3. 16.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미얀마 지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6일 "이번 주 내로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법인 이공과 함께 미얀마 주민 20명을 대리해 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3월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짝푸 지역에 육상가스터미널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 주인인 미얀마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중략) 이번 소송은 법적 분쟁의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기르는 로스쿨 리걸클리닉 과정이다. 소송 직접 대리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외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맡지만 모든 준비 과정을 고려대 로스쿨생이 맡았다.

3) 이재협, 전계논문, 382면

※ 「경희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백령도서 무료법률상담 실시」 (법률신문 2016. 2. 12.자)

경희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장 범경철 교수)은 지난달 27일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주민센터에서 '백령도민과 함께 하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법 교수와 로스쿨 재학생 13명이 참여했다. 생업 때문에 상담소에 찾아오지 못하는 주민들은 직접 방문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로스쿨생 이동훈 씨는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학문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희대 로스쿨은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강원도 화천군과 경북 울릉군 등 도서지역 무변촌을 방문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 장애인센터서 무료 법률상담」 (기호일보 2015. 6. 2.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는 최근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승기 교수(인하대 로스쿨 교수·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상담은 주로 대여금 회수 방법, 부동산 명의변경, 파산 신청, 상속과 같은 실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로 이뤄졌다. 김영순 센터장은 "무료 법률상담은 법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률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는 지난 2011년 5월 개소 이후 홈페이지(legalclinic.inha.ac.kr)의 상담게시판을 통한 법률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 오고 있다.

8. 인력 누수·낭비 방지 면에서 로스쿨의 상대적 강점

- 사법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면 수험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나,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의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무한정한 시험 응시로 인한 인력 낭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로스쿨을 졸업하였으나 졸업 후 5년 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 또는 변호사자격 취득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자→ 사법시험을 준비하였으나 최종탈락한 자와는 달리 법학전문 석사학위(J.D.)를 취득하였으므로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자기 기존 전공분야 및 법학분야 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취업 전환하기가 용이함. 탈락자 중 일부가 전직.²⁴⁾
- 2000 ~ 2010년 기간 중 사법시험 출원자 수 → 243,244명
- 2014년 기준 사법시험 누적 합격률²⁵⁾ → 2.94%에 불과
- 사법시험 합격자 기준 사법시험 준비기간 평균 4.79년 → 불합격자를 포함하면 평균 수험기간은 훨씬 더 늘어남
- 사법연수원 입소 전 전업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자의 비율 → 73.1%²⁶⁾ (⇔ 로스쿨 전업 준비: 7.1%)

■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비법학전공자의 전공교과 학습 등한시로 인한 인력 전문성 약화

※ 「〈여론마당〉 ‘고시학원’으로 전락한 대학교」

(김창환[경기도 고양시], 문화일보 2002. 11. 4.자)

(전략)... 나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가 숙식이다. 그래서 대학의 기숙사만큼 좋은 곳이 없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를 알면 화도 나고 참담하다. 그것은 대학들이 학문탐구보다는 고시합격자를 늘리려고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학은 고시원인지, 상아탑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대학이 다 그렇다. 기숙사도 여기서 큰몫 한다. 이곳에 사시, 행시준비생 수백 명이 들어가 밤낮없이 준비를 하고 있다. 식사는 공짜로 제공된다. 기숙사를 개조해 숙식이 다되는 고시반으로 운영하면서 일반 기숙사는 그만큼 줄어들었다...(후략)

※ 「〈연합시론〉 한국 대학생 학력 형편없다는데」 (연합뉴스 2004. 7. 14.자)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대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해 본 결과 한국 대학생의 성적이 꼴찌로 나타났다. (중략) 특히 이과 과목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중국이나 일본 대학생에 비해 형편없는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니 걱정이다. (중략)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책과 답을 쌓는 게 현실이다.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1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공부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취업공부 특히 고시공부에만 열을 올려 대학이 거대한 고시학원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 「[화제] 서울대 졸업 30%가 무직... 고시생이 3분의 1」

(동아일보 2000. 5. 16.자)

올해 서울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3명은 일자리가 없는 '무직자'이며 무직자의 3분의 1은 고시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 미취업자 실태를 보면 졸업생의 27.6%에 해당하는 1205명이 미취업자로 이 중 33.2%(400명)는 고시를 준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졸업생 전체로 볼 때도 10명당 1명 꼴로 '서울대의 고시학원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단과대별로는 법대 졸업생 243명 가운데 절반 이상(123명)이 미취업자로 유학 등을 준비하는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시 준비생이었다. 법대는 특히 대학원 진학이나 군 입대를 제외한 순수 취업률이 전체 평균 31%에 크게 밀도는 0.9%(23명)밖에 되지 않았다. 또 사회대와 인문대, 생활과학대 졸업생의 경우에도 미취업자의 절반 가량이 고시준비생으로 기업체 등의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원 준비생보다 많았고 사범대, 경영대, 공대, 농업생명대 등도 미취업자의 상당수가 고시를 준비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석사학위를 받은 미취업자(20.3%) 중 9% 이상이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중략) 서울대 관계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관악고시학원’의 실상이 이번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며 “통상 학부때 고시를 준비하다 졸업 때는 취직하는 이들이 많은 점으로 미뤄 고시준비생의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9. 로스쿨에 보완 필요하지만, 제도내적인 개선이 가능함

- 가. 등록금 문제 : 종래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개인이, 사법연수원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 바 있음 → 로스쿨 도입 이후 교육비용 부담이 모두 개인과 대학의 책임으로 전가됨⁴⁾
- ▶ 국가 장학금 확대 및 대학별 장학금 확대, 장기·저금리 학자금 대출 제도 마련 등을 통하여 해결 가능²⁷⁾

[사례]

※ 「서울대 로스쿨, 소득하위 50% 학생에 전액장학금...약속장학금 제도 도입」
(국민일보 2016. 3. 27.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소득 하위 5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준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한 뒤에 자신의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는 ‘약속장학금제’도 도입했다. 서울대는 올해 1학기부터 로스쿨 장학금 제도를 개편해 전체 466명 가운데 132명(28.3%)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득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눠 하위 1~5분위까지 학생은 모두 혜택을 받았다. 6~10분위 학생은 가장실직, 과다부채 등 실질적인 가정 형편을 고려해 등록금의 20~100%를 장학금으로 줬다. 비싼 학비 때문에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금수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20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등록금은 지난 해 1339만2000원이었다.

장학금 대상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건만 보고 선발했다. 이원우 서울대 로스쿨 학장은 “경제적 사정에 상관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장학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등록금에 더해 ‘생활비 장학금’도 확대됐다. 이번 학기에만 61명에게 30만~50만원의 생활비가 전달됐다. 소득 1분위 학생은 모두 생활비 장학금을 받았다. 2분위는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됐다. 또 독일 부채리우

4) 기존 사법연수원 운영예산(연1000명 선발 기준) : 교수진 봉급(약100억원) + 연수원생 봉급(약420억원) + 시설 운영비 등 기타 비용(약360억원) = 연간 약880억원으로 추산됨

스 로스쿨을 벤치마킹한 약속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 부체리우스 로스쿨의 학생들은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신 졸업 후에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10년간 소득의 9%를 기부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도 장학금을 받을 때 '취업 후 안정적 소득을 받게 되면 5년 이내 기부를 시작해 10년 이내 재학 중 받은 도움 이상을 후배들에게 되돌려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내야 한다. 이 학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받은 도움에 대해 도덕적 의무감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정착되면 기부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장학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 입학 공정성 문제 : 사법시험 존치론 진영에서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고 있기는 하나, 로스쿨 입시 전형은 일반적인 대학 학부 입시전형과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의 전형 절차를 거치면서 복수의 평가자가 이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 공정성이 해하여질 우려가 없음

- ▶ 일각의 주장대로 로스쿨 입학전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대학 입학전형(정량+정성) 일반에 대하여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그 공정성을 문제 삼아야 할 것임²⁸⁾
- ▶ 단순히 부모의 신상에 관한 일부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정입학의 소지가 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부모의 신상 기재사실이 입학전형 결과에 실제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격자의 사례 이외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불합격한 자의 사례 및 빈도수를 함께 평가해 보아야 하는 것이나 최근 교육부 조사는 이러한 측면을 간과.
- ▶ 자기소개서·면접구술고사·논술 등 일체의 정성평가를 불공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전근대적 객관식시험 만능주의에 불과함²⁹⁾
- ▶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는 로스쿨에 합격하기만 하면 변호사자격을 문제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다수 일반인들의 오해가 깔려 있는 측면이 있음
- ▶ 다만 투명성의 강화를 통해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공정성과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각 로스쿨의 입시전형의 재정비가 시급함. 앞으로 로스쿨 별로 입학사정 결과 데이터, 입학생의 사회경제적 출신배경 비율, 출신대학·출신지역 등 정보, 등록금, 생활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로스쿨 학사운영 일반에 관계된 내용을 공개하는 형태로 입학전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³⁰⁾
- ▶ 교육부·유관 단체의 지속적 감시와 감사, 일정 비율 이상의 입학전형 외부 평가위원 포함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입학전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사례]

※ 「[시론] 로스쿨 입시 다양성도 중요하다」

(천정훈[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일보 2016. 5. 9.자)

(전략)... 공정성을 위해 자기소개서나 면접 따위의 주관적 평가를 제거하고 학점,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영어 등 정량지표로 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동시에 일부 로스쿨이 나이 많은 지원자를 차별하고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의 어린 학생만 뽑는다고 비난한다.

두 주장은 명백히 모순된다. 정량지표를 중시할수록 점점 더 SKY 출신 어린 학생들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객관적 정량지표만으로 선발했을 때의 결과를 추산해 봤더니 실제보다 27세 이상 합격자는 줄고 24세 미만 합격자는 늘어나며, 심지어 SKY 상경계 졸업생이 합격자의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경험과 성숙한 가치관을 중시하는 정성평가로 그런 경향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 공정성과 다양성이 상충하는 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왜 쓰느냐는 의문도 많다. 서울대의 경우 부모 직업을 기재하게 한 적은 없고, 다만 지원자들이 지원 동기를 밝히다 보니 부모 직업이 자연스럽게 언급된 경우가 있을 뿐이다. (중략)

동기를 묻더라도 부모 직업은 못 쓰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처럼 간단치는 않다. 지원 동기를 쓰는 과정에서 유복한 환경만 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울대 로스쿨의 최근 합격생 중에도 “임금이 체불돼 고생하던 용접공 아버지”가 기댈 곳은 노동법전문임을 경험하고 노동 전문 변호사를 꿈꾼 경우, “트럭 기사인 아버지가 실질은 노동자이지만 형식은 개인사업자라서 겪는 모순”을 보며 제도적 대안을 고민한 경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성장배경이나 부모 직업을 일절 못 쓰게 했다면 이런 사연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학점과 리트에 따라 멍텅구리 잘라 냈을 것이다.

그렇다고 ‘좋은 직업’의 기재만 금지하기도 어렵다. 아버지가 검사라고 쓰면 안 되고 소방관은 되는가? 기업 임원은 안 되고 미화원은 되는가? 일일이 구분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구분 자체가 직업의 우열을 암시하는 게 돼 비교육적이다. 명확한 법령이나 지침도 없다. 그러니 많은 학교에서 고민 끝에 직업 기재를 아예 금지하지는 못한 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재’만을 금했고 그 허술한 틈을 타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부모의 좋은 직업을 기재해 합격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총지원자 대비 합격률은 25.5%였는데 부모가 법조인이라고 기재한 지원자의 합격률은 25.2%였다. 표본이 작아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지만 부모가 ‘법학 교수’라고 기재한 경우는 15.4%로 가장 적었다. ‘무직/일용직’이라고 기재한 경우는 26.1%, 아무 직업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7.0%였다. 부모의 직업은 합격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미국 로스쿨입학위원회(LSAC)의 자기소개서 작성 표준지침에서는 본인에게 소중했던 성장배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유일한 가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의심받기 싫으니 정량지표만으로 뽑겠다”는 로스쿨이 늘면 정량지표를 올리는 데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유복한 집 자제들 비중이 더 커지고, 법률가 집단은 지금보다 더 획일화될 것이다. 진정한 잠재력과 다양성을 평가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좋은 인재를 발굴하려는 순수한 노력마저 중단돼서는 안 된다. 맹목적인 비난보다 현명한 비판이 필요한 이유다.

다. 특성화된 전문 분야의 법학교육 강화 : 현재까지 각 로스쿨별로 특성화된 전문 분야 강좌 개설과 전문 분야 전임교원 확충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

- ▶ 한정된 시간 내에 민사·형사법 및 공법 등 기본법 역량을 강화하여 변호사시험에도 대비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해 특성화된 전문 분야 교육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비판은 수긍가는 면이 있음.
- ▶ 특성화된 법률실무 교육이 약화되어 왔던 데에는 사실상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 형태로 변호사시험이 운용되어 그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온 데에 기인한 바 큼³¹⁾
- ▶ 중·장기적으로 각 로스쿨 별로 특성화 실무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동시에 변호사시험의 실질 합격률을 적정하게 높임으로써 특성화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음. 합격률은 적어도 응시인원 대비 75%가 되어야 로스쿨의 교육 정상화 및 특성화를 할 수 있을 것임.³²⁾

라. 취업 공정성 문제 : 로스쿨 제도 하에서도 이미 판·검사, 장기근속 군 법무관 등 국가 사법관료의 임용은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 왔음

- ▶ 로펌·기업 취업 등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탁 등 문제는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는 법조계 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특히 로스쿨 제도의 책임이 아닌 사법시험 출신 기존 법조인들의 잘못된 행태에 기인한 문제일 뿐임

10.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07년에 이르는 기간 중 10,000여 쪽에 달하는 연구보고서가 간행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80여 회 이상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성안된 법률임
- 사법시험 존치는 종래 사법시험이 양산해 온 문제점을 계속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사법시험 폐지 유예 연장시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없는 낡은 제도의 생명을 일시 유지하는 것에 불과
- 사법시험 존치(폐지유예 연장시행)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양 제도 모두 파행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귀결 → 일본의 사례가 이를 실증함
-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국가의 입법을 신뢰한 16,000명의 학생이 로스쿨 제도를 거쳐 이미 교육을 받았거나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임 → 사법시험 존폐 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 정책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걸린 문제

11. 로스쿨 제도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 나가야 함

- 로스쿨 제도는 종래의 파행적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 로스쿨 제도는 그 도입취지에 부응하여 기존 법조계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이미 성과를 보여 왔음
- 로스쿨 제도를 통해 양성된 신진 법조인들은 그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사회 각계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 속에 뿌리내리며 활동을 전개해 왔음
- 로스쿨 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비난은 근거 없는 비난, 문제의 초점을 잘못 짚은 비난이거나 또는 해결 가능한 문제들에 불과
- 사법시험 존치(폐지유예 연장시행)는 양 제도의 파행 운영으로 귀결될 것임
- 사법시험 존폐 논의 자체가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로스쿨 제도에 대한 '흔들기'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함
-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관점에서도 이미 확고하게 입법된 내용을 뒤엎으면서까지 제도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2장 사법시험 연장론의 문제점

- 사법시험은 누구에게든 정규 법학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법학/비법학 전공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또 다시 암기 위주의 수험법학 공부에만 속성으로 몰입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임⁵⁾
- 로스쿨 현행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에서조차도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로스쿨 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법과대학 학부 체제의 부활이 재론될 것임. 준비 중인 법안에서도 법과대학 학부 부활에 관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예를 찾을 수 있음
 - 법과대학 학부가 부활하게 되고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비법학 분야의 각 전공별 교육이 파행화된 과거의 폐습이 반복될 것임.

※ 「[사설] 사법시험 존치는 법과대학 부활 전제돼야」

(법률저널 2015. 5. 22.자)

(전략)... 사법시험 존치가 더욱 실효성을 거두려면 로스쿨 대학의 법과대학 부활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변호사 중 일부는 정상적인 법률공부를 하지 않고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과대학이 존재해야만 적절한 법률공부를 받은 사람이 법률가가 되는 기본 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대는 법률실무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법률실무가 이외의 사람들도 법률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 기업, 언론,

5) 관련기사 - 서울대 법대,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반대”: 정상조 학장 “사법시험처럼 고시 낭인 양산할 것” (법률신문, 2013. 10. 2.자)

“정상조 서울대 법대 학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략) 정 학장은 이날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고시 낭인을 무더기로 양산한 사법시험 체제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로스쿨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 가난한 사람은 법조인이 되는 길이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이 아니라 장학금 확충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정 학장은 강조했다. 그는 ‘예비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은 전공 공부를 뒷전으로 미루고 체계적인 법학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라며 ‘예비시험을 도입하려면 법학교육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법대 학부부터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법률적 지식을 배경으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다. 법률가 양성기관인 로스쿨에서는 법학연구를 기대할 순 없다. 그렇다면 어디서 법학을 배울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오신환 의원이 준비하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서 기초법학과 법학연구의 사멸을 막기 위해 법과대학 부활을 담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법조인 양성과는 별개로, 학문 자체로서 시대상황에 맞는 한국의 법문화 향상 및 이론연구개발 등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은 법학교육을 위한 기본과정으로서 법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폐지하는 것은 법학의 기초법학연구의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 로스쿨 도입 이전의 사법시험을 전제로 하는 법과대학 학부 체제에서 정상적인 법률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는 별 다른 이견이 없음
- ▶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기초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현실밀착적 탐구형 법학교육, 학생들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법학교육이 싹트고 있음
- ▶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일반 법과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사법시험 존치는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니라, 나이 어린 신규 시험준비생의 사법시험 준비 유인만을 제공할 것임. 로스쿨 제도를 우회하는 '법률가 속성 배출 코스'로 이용될 것임. 존치가 가정사실화되면 세칭 일류대학의 학부생이 대다수를 점하게 될 것

※ 「법조인 선발 위원회는 '과거회귀' : 일본, '저소득층 배려' 한 예비시험 옛 사시 답습 문제만」
(내일신문 2015. 8. 25.자)

(전략)...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3년 5월 법무부의 의뢰로 펴낸 '각국의 변호사자격 취득 절차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경제적 약자' 배려 등을 이유로 변호사자격 취득 절차를 이원화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1년부터 옛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우리나라 로스쿨과 유사한 신사법시험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옛 사법시험이 매년 합격자수가 제한되고 합격률이 2~3%로 극히 낮은데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돼 폐해가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다 '경제적 사정'이 나쁘거나 이미 사회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사람을 배려한다는 이유

로 같은 해 로스쿨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예비시험'을 추가로 도입했다. 로스쿨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예비시험을 치르면 신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줌으로써 진입로를 둘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예비시험은 도입 후 기존의 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키웠다는 평가다.

먼저 법과대학원 수료자와 같은 수준의 능력을 평가하려다보니 시험 난이도가 옛 사법시험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예비시험 합격률이 2011년 1.8%, 2012년 3.0%로 매우 낮게 나타나 옛 사법시험의 병폐였던 고시낭인 양산이 재연될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로 자리잡지도 못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일본 예비시험 합격자[지원자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중 대학 재학생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4.98%였으며 이들의 예비시험 합격률이 92.9%로 압도적이었다. 저소득층을 위해 만든 창구가 실제로는 우수한 법학과 출신 학생들이 로스쿨 '우회' 방안으로 악용됐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원화 정책이 로스쿨제도의 도입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일본 로스쿨 도입은 시험점수 중심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법조양성"으로 법조를 개혁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예비시험 도입으로 로스쿨 과정 수료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게 해 두다 보니 공들여 만든 로스쿨이 와해되는 위협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에서 사법시험 제도를 2017년 이후에도 계속 존치시키면 실무현장에서 양쪽 출신 변호사가 계속 병존할 경우 출신 차이에 따른 나뉠현상이 생겨날 수 있으며 사법연수원 유지 비용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방안보다는 변호사시험 일원화의 방향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사시존치 병행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초 로스쿨 도입이 논의된 것이 대학교육 황폐화, 다양성 취약, 고시낭인 양산 등 사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는데 로스쿨에 문제가 있다고 다시 사시존치를 논하는 것은 과거 회귀라는 것. 최환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선진국 중에서 법조인 선발제도를 투트랙으로 병행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신사법시험을, 미국은 최종적으로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한다"며 "보다 나은 법조인 양성제도로 일원화해야지 이원화해 경쟁시키겠다는 것은 법조인이 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말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의 대립이 상당하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소외된 경제적 약자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 로스쿨로 진학하지 않는 서울대생들이 대부분 합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법시험 존치는 SKY 등 일부 명문대의 합격비율을 더욱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로스쿨 진입자를 기존과 같이 배출하는 이외에 추가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게 될 것임³³⁾

※ 「성낙인 총장, “서울대 입장에선 로스쿨 없는 게 낫지만 . . .”」

(헤럴드경제 2015. 12. 11.자)

“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안과 관련해 ‘(법대로) 로스쿨을 지원해주든지, 그렇지 않을 바엔 로스쿨을 없애고 옛날로 돌아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중략) 성 총장은 ‘전 세계에서 변호사 되는데 국가에서 2년간 고위공무원 월급 주며 공부시키는 나라가 없고, 또 변호사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나라도 없다’면서 ‘10년 전에 세팅된 룰(rule)을 다시 바꾸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총장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 이후 ‘법무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사법시험 주관기관 아니냐, 문제가 있었다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끝날 때가 되니 (공론화 과정 없이) 갑자기 발표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성 총장은 ‘서울대 입장에선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이 많은 만큼) 로스쿨이 없는 게 낫다’면서도, 사법시험 폐지가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2015. 12. 11.자)

※ 송석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 『법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법교육학회, 2015, pp.57-58.

“2014년에 실시된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204명이었는데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모두 31개교였다. 그중 상위 7개 대학의 합격자수가 146명이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의 합격자수는 경찰대 6인을 제외하면 19명에 불과하다. 합격자 중 고졸 이하는 물론,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중퇴 또는 재학의 학력을 지닌 자 역시 한 명도 없고 전원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였다. 한국사회의 대학서열 구조 속에서 사법시험제도를 부분적으로 존치했을 때의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사법시험 폐지가 예정된 하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암묵적 차별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건대, 사법시험이 존치 또는 폐지유예 될 경우 출신에 따른 갈등이 계속될 것
→ 법조직역 내에서의 갈등 지속은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임
- 따라서 사법시험 제도는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대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함



제3장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제언

1.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안정화하여 예측가능성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용

- 로스쿨 제도는 극소수를 선별하기 위한 선발시험이 아닌, 기본지식 충족하면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을 전제로 고안됨
→ 선발시험으로 운영 시 1)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준비 학원화 2) 다수의 불합격자 발생으로 인력 낭비 3) 수험법학의 부활 및 전문분야 법률 교육 소홀 등의 문제 발생
- 입학정원대비 75%수준으로 합격 인원을 엄격히 운영한 결과 불합격자 누적으로 인해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자격시험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회차(시행년도)	제1회(2012)	제2회(2013)	제3회(2014)	제4회(2015)	제5회(2016)
응시자(명)	1,665	2,046	2,292	2,561	2,864
합격자(명)	1,451	1,538	1,550	1,565	1,581
합격률(%)	87.75	75.17	67.62	61.10	55.20

-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소 1년 이상을 변호사시험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전문자격 시험이나 외국의 변호사 자격시험과 비교해 볼 때 합격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 비교 자료 1 - 타 전문자격시험⁶⁾ 운영 현황 (최근 5년간 합격률)

1) 의사 국가시험

회차(시행년도)	제76회(2011)	제77회(2012)	제78회(2013)	제79회(2014)	제80회(2015)
합격률(%)	93.1	92.2	93.8	94.6	93.5

*10년간 평균 합격률 : 93.54%

6) 대학(대학원)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이 연계되어있는 의료분야 자격시험 운영현황을 중심으로 조사. 자료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2) 약사 (66회 이후는 6년제 약대 기준)

회차(시행년도)	제63회(2012)	제64회(2013)	제65회(2014)	제66회(2015)	제67회(2016)
합격률(%)	88.9	60.1	45.7	97.2	94.8

*10년간 평균 합격률 : 81.32%

회차(시행년도)	제52회(2012)	제53회(2013)	제54회(2014)	제55회(2015)	제56회(2016)
합격률(%)	94.9	94.7	96.1	96.7	93.8

3) 간호사

*10년간 평균 합격률 : 94.33%

■ 비교 자료 2 - 외국의 변호사 자격시험 운영 현황

- 1) 미국 변호사시험 : 초시 합격률 전국 평균 69~79%, 재시 이상 35~40%
- 2) 독일 : 제1차 시험(사법관시보 임용시험) 약 76%, 제2차 시험(변호사 자격 부여 시험) 약 90%
- 3) 캐나다 : 모든 평가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pass rate은 없음. 자격시험의 pass rate은 대략 82~90% 정도로 매 학기마다 조금씩 상이함
- 4) 영국 - Legal Practice Course(LPC) 시험⁷⁾ : 77.2% (2006)
- 5) 프랑스 - 변호사 적격증명 취득시험(CAPA) : 2회 이상 낙제하는 경우가 드물⁸⁾
→ 각국의 제도가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로스쿨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일정한 변호사 양성과정을 거친 경우 대다수(일본 제외시 약 75%이상)의 해당 과정 수료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의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음
- 6) 일본 신사법시험 : 22.6% (2014년)⁹⁾

〈표〉 최근 10년간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률 추이

시행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응시자(명)	2,091	4,607	6,261	7,392	8,163	8,765	8,387	7,653	8,015
합격자(명)	1,009	1,851	2,065	2,043	2,074	2,063	2,102	2,049	1,810
합격률(%)	48.3	40.2	33	27.6	25.4	23.5	25.1	26.8	22.6

7) LPC과정 응시자가 이수하는 시험임.

8) 두 번째 낙제의 경우 변호사연수원 교육과정 재이수가 불가함. 단, 변호사연수원 이사회가 예외적으로 3번째 이수를 허용할 수 있음. 변호사연수생이 두 번 낙제를 하는 경우는 드물며 두 번 낙제를 하더라도 변호사연수원 이사회가 3번째 변호사연수원 과정이수를 거절한 경우 또한 드물.

9) 법무부는 일찍이 「각국의 법조인 선발 및 시험문제 유형에 관한 연구(2009)」에서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낮기 때문에, 법과대학원이 시험대비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당초 계획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일본 신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 사법시험과 달리 인위적으로 합격 인원을 제한할 법률상 근거가 없음

사법시험법	변호사시험법
제4조(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대법원 및 변호사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¹⁰⁾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일률적으로 합격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사법시험법과 달리 선발 예정인원이 아닌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만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합격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법률상 근거가 부족함

■ 선발시험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더라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실무 자질이 기존 선발제 하의 사법연수원 수료생보다 떨어지리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11) 12)

10)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1) 관련기사 - “로스쿨-사법연수원, 클래스 차이없다”: ‘법조인 전환기’ 심포지엄 치우차이 1년 내 개선될 것 (헤럴드경제 2011. 5. 12.자)

“(전략)... 그러나 로펌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본격 채용돼 능력이 검증되면 점차 이 차이가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철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로스쿨생을 인턴으로 쓰기 전에는 실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로스쿨생의 열의가 높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아직 확정 전이지만 채용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변호사(김앤장)는 ‘요즘 법조인은 구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고 경쟁심화로 능동적·창의적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능동적 자기계발 의지에 따라 향후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 “그건 그렇고 본인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서 6개월 인턴과정을 마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다들 매우 우수한 인재들이었다. 이들이 각 분야에 진출하여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한다면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는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실무적인 사건처리 능력이나 자문 능력은 적어도 1년

■ 변호사시험 합격률 개선 방안

[1안]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75%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음

[2안] 초시자 (당해 연도 졸업 응시자) 기준 상위 80% 선을 초시자 기준 합격선으로 정하고, 재시 이상 응시자의 경우에는 위 초시자 기준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절대치 기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상관없이 전원 합격하도록 하여 합격선을 일정하게 유지¹³⁾

2. 로스쿨 공정성 심사.평가센터의 도입

1) 입학전형 부문

- 논술, 자기소개서, 면접 등 정성평가 항목과 관련하여 공정성 시비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다면평가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일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전근대적 '객관식 시험' 만능주의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 현존하는 문제는 극복의 대상일 뿐 사법시험 존치의 이유가 될 수 없음
-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증거가 없음
-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의 직업 등 성장배경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정량화가 어렵다는 측면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정성 담보 등의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음
→ ① 법률가를 부모 또는 조부모로 두었고 이 점을 일부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지원자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실제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입학전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볼 근거도 없음
→ ② 부모의 직업 등을 일률적으로 기재하지 못하게 할 경우, 예컨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실직하신 아버님을 보면서 노동법 관련 전문지식을 쌓은 변호사를 꿈꾸게 되었다." 또는 "시민운동에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인권변호사로 성장할 것을 희망하게 되었다."는 등의 기재마저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③ 정량적 평가 기준에만 기대어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경우, 시험 잘 치는 연소자가 우선적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됨으로써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로스쿨 제도 취지에 역행하게 됨
→ ④ LEET 시험 등 정량적 평가 비중을 높이게 될 경우 사설 입시학원 등이 성행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입학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임

2) 학사운영 부문

- 일부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하여 학사를 파행으로 운영했다거나 또는 학점 부여에 있어서 다소간 공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음

정도의 인턴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6개월의 인턴과정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박찬 변호사[법무법인 경세 대표], 「젊은 법률가들에게」)

[http://www.snup.or.kr/ezboard.php?BID=board12&GID=root&mode=view&UID=16&CURRENT_PAGE=2&SEARCHTITLE=&searchkeyword=&category=&sysop=&fm=&BType=&ListMax=1)]

13) 매년 합격선의 절대치가 상승하는 현행 운영방식과는 달리, 최초 응시생의 80%의 선으로 합격 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음.

■ 학사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조사는 각 대학 차원의 자율적 시정과 더불어, 외부의 감사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입학전형 및 학점 부여와 강의 개설·진행 등 일반적 학사운영을 포함한 로스쿨 제도 운영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함

▶ 따라서 일률적 통제, 제한보다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해 나가되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온당함

→ 이에 「로스쿨 공정운영 심사·평가센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 로스쿨 공정성 심사·평가센터(가칭) 운영안

-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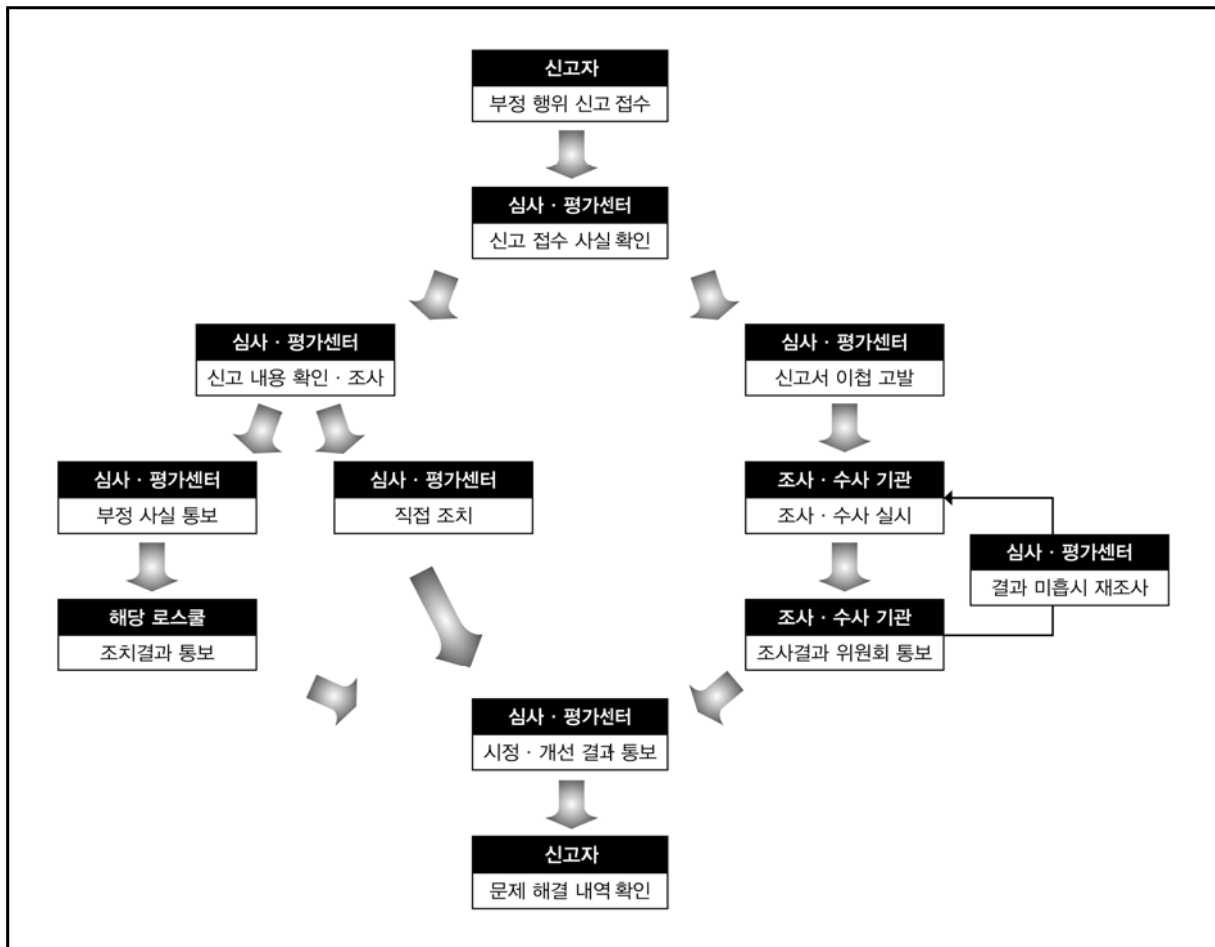
- 실지 조사 수행 상임 변호사 2~4인

- 비상임 심사·평가위원 5~8인 (법원,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을 포함하여 로스쿨 내·외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자 중 신임과 덕망이 높은 자)

- 공정성 심사·평가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누구든지 이 센터에 로스쿨 제도와 관련하여 불만 또는 이의가 있는 문제를 자유로이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실효적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함

- 외부로부터의 진정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공정운영 심사·평가센터를 독립심의기관으로 상설화하되 교육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산하에 설치함



〈도표1〉 로스쿨 공정운영 심사·평가센터 업무 절차 개요도

3. 방송통신교육과 연계된 예비 로스쿨의 도입 방안¹⁴⁾

- 정규 로스쿨에 다니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예비로스쿨 법학 석사 과정 도입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석사과정 도입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전문석사과정 입학생 선발 : LEET,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면접 등 기존 로스쿨에 준하는 방식으로 선발
 - 기본 법률 과목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개설된 인터넷 강의 과정으로 이수. 학점은 상대평가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
 - 법학전문석사 취득자 중에서 매년 500명 이내의 인원을 로스쿨 입학적격자로 하든가, 아니면 취득자

14) 본 대안은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본 항은 향후의 논의를 위한 아이디어의 제공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며, 필자의 정립된 입장은 아님. 이 안은 기존의 Open Law School 안과 상이함.

중에서 500명 이내의 인원이 로스쿨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중 1/2인 250명을 로스쿨에서 선발.
(25개 로스쿨에서 각10명씩 선발수용)

- 선발된 인원은 로스쿨의 주간 혹은 야간에 소정의 학점(45학점 이상) 취득 후 졸업.
- 졸업 및 학위 취득 : 졸업 요건 충족 후 졸업 시험 또는 학위 논문 심사 통과
- 변호사 자격 취득: 변호사시험 응시 및 합격.
- 이 방안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그렇지 않으면 합격률의 현저한 저하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의 본 취지와 충돌할 수 있음.

1) 관련기사 - 법대 '셀링' 고시원 '복적' (한겨레, 1995. 2. 18.자)

“대다수 법대생이 학교수업을 소홀히 한 채 저학년 때부터 고시전문학원에서 시험준비에 몰두하고 있어 법과대학이 법조인 양성이란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 **법대 입학동기 270명 가운데 200명 가량이 이미 고시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3·4학년생들은 아예 학교 수업을 빼먹고 고시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많다.** (중략) 학원에는 법과대학 교수, 현직 판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생까지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대교육의 파행적인 운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사법시험 응시생의 대다수가 1차시험에서 걸려지다보니 1차 사법시험의 경쟁률이 매우 높아서 법대생들은 재학시절의 대부분을 객관식시험 준비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객관식 1차시험에서 필수과목인 헌법학이 전공이므로 법학강의를 처음 듣는 저학년생에게 헌법1, 2를, 그리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연습을 강의했었다. **헌법1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호기심에 가득 찬 눈빛과 헌법연습을 수강하는 고학년 학생들의 고단하고 지친 모습, 주어진 시간내에 지문을 다 읽기도 어려워 반복을 통한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시험, 1차시험의 준비를 위해 판례의 요약문이나 결론만을 암기하다가 헌법연습 시간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판례를 처음으로 제대로 읽어보았다는 다수의 학생들,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사교육의 유흥을 뿌리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현상은 사법시험 정원이 늘어날수록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수험생과 출제자가 함께 소외되는 1차시험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러한 소외현상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한다.**” (송석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 - 그 도입논의 및 최근쟁점과 관련하여 -」, 『법교육연구』(제10권 제3호), 한국법교육학회, 2015, p.50.)

3) 로스쿨 제도 도입 논의 초반 무렵부터 ‘선발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의 변화는 가장 중심적인 논의의 축이었음.

“당시 세 추위와 대법원은 사법시험의 합격자수 증가를 넘어 법학교육제도를 포함하는 법률가양성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여 법학교육의 학제개편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권오승, 2000, p.112).

- **시험보다는 교육의 비중을 높이며, 법학교육의 정상화·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초소 양교육 및 전문영역교육을 강화해 나감.
-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춘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함.
- 이를 위하여 새로운 학제를 마련하고, 199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송석윤, 전개논문, p.27.)

4) 관련기사 - 성공적인 로스쿨체제를 사시준치주장으로 흔드는 이유가 나변(那邊)에 있는가? (최대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뉴스레터 2015. 9. 30.자)

“**종래에 사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와 일학년 때부터 고시과목 위주의 암기식 공부를 하고 강의 수강도 고시과목 위주로만 했다. 법대생의 경우의 비사시법률과목은, 타과생의 경우 자기 전공과목은, 겨우 학점이나 따는 정도였다.** 정치학과를 비롯한 사회대 인문대 등 여러 학과의 경우 과가 텅 빌 정도로 자기 전공과목은 팽개치고 고시학원 수강 등 고시공부에만 매달려 가히 캠퍼스 전체가 고시준비로 황폐화되다시피 했다. 그래서 로스쿨 체제는 대학 전체를 살리는 조치이기도 했다.”

5) 관련기사 - 대통령도 탄핵 가능한 남한 사회 보고 큰 충격 (중앙일보, 2016. 4. 7.자)

“탈북자 출신 1호 로스쿨생인 이서진(30·가명)씨는 스스로를 ‘흙수저 중의 흙수저’라고 말한다. (중략) 중국에서 힘겹게 생활하던 이씨는 2003년 10월 한국으로 들어왔다. 초·중·고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뒤 부산의 한 대안학교를 거쳐 고려대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이후 **2013년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첫 탈북자 출신 로스쿨생이 됐다.** (중략) 로스쿨이 부유층의 신분 세습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금수저’ 논란에 대해 이씨는 **‘나 같은 사람도 다니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탈북자 같은 특수계층이 법조인이 될 가능성은 제로(0)’라고 했다. 기존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준비생이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로스쿨 제도 속에서는 기초적인 생활비는 지원받을 방법이 있다는 의미에서다.**”

6) 관련기사 - “모두가 꿈을 이룰 수는 없지만,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승일 학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뉴스레터, 2015. 8. 17.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정확히는 우측 손을 제외한 삼지가 신경 마비로 인하여 불편합니다. 어릴 때 주된 기억들은 어머니의 등과 병원 침대 위가 무대였습니다. 늘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았고, 무서운 기구들에 몸을 맡겼고, 의사 선생님과 다른 환자들이 유일한 대인 관계였습니다. (중략)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휴학하고 학외에 집중하였습니다. 3학기 다니고 휴학한 후, 3학기 동안 생활비를 모아서 복학하고, 또 3학기 다니고 휴학해서 돈벌

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매일 8시간씩 일주일 내내 과외를 했습니다. 큰돈은 못 벌었지만, 제가 학교를 다니고 부모님을 부양 하며, 빚도 모두 갚았고,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는데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십년 동안 쉰 날이 합쳐서 한 달이 안 될 만큼, 일주일 내내 성실한 하나로 일했습니다. 대학교 때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러 신림동으로 떠나는 동기들이 부러웠습니다. 학원비랑 고시원비가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든다는 동기들의 말은 제게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중략) 대부분의 학우들도 책 한권 살 때마다 여러 번 고민할 정도로,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이 지도 않습니다. 매일 열람실과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시험 때는 날을 안 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학업에도 매진합니다. 만약 학우들이 부자였다면, 저부터도 박탈감이나 상실감에 못 버텨를 거라 생각합니다. 매년 일정 부분 이상을 특별 전형으 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뽑고 있고, 그 외에도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장애인이면서 기초 생활수급자인 절대적 빈곤 계층에게는 로스쿨만이 소위 개천의 용이 되는 길입니다. 하물며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이 러한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견에 휩싸여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해결책을 간과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 7) 관련기사 - ‘시각장애’ 김재왕 변호사 “장애 종류·정도 따라 개별적 지원 필요”: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씨, 대법 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연 (머니투데이, 2015. 11. 30.자)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씨(37)는 30일 ‘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지원 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략) 김 변호사는 또 ‘장애인이 있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만으 로도 반 이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물어보지 않는 것,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자기 식대로 도움을 주는 것 등은 피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략)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던 김 변호사는 대학 원 재학 중 왼쪽 눈마저 실명하게 됐다. 그는 시력을 잃은 뒤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중도 실명자를 위한 기초교육프로그램 을 이수했다. 이후 2005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년간 전문상담원으로 근무한 김 변호사는 2009년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김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익인권변호사단체인 ‘희망을 만드는 법’을 설립해 장애인 인권옹호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당한 지적장애인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8) 관련기사 - 서울대 로스쿨생 넷 중 한 명, 가구소득 하위 50% (중앙일보 2016. 3. 30.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과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학생이 71명으로 15.1%를 차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가구소득 219만원 이하(4인 가구 기준) 가정의 학생들이다. (중략) 서울대 로스쿨에서 전액 장학 금을 받는 학생은 총 132명으로 전체의 28.3%다. 국가 행정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형편이 어 려운 학생 중에서 18명이 심사를 거쳐 전액 장학금 제공 대상에 포함됐다. 부분 장학금을 받는 학생까지 합하면 총 44% 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 9) 관련기사 - 전관 변호사 49명, 年 20시간 의무 공익활동조차 안 했다: 본보 2011~2014년 변협 자료 입수 (한국일보 2016. 5. 6.자)
“검찰총장 등 판·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 49명이 연간 20시간의 의무공익활동도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한국 일보가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입수한 ‘전관 회원 변호사 공익활동의무 미이행자’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검찰총장 과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관 변호사 49명이 변호사법에 규정된 공익활동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 다. (중략)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에 파악된 49명의 전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른 최소한의 공익활동을 하지 않은 것 은 물론, 미이행시 대체하는 기금 납부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략) 대형로펌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법무법인(로 펴)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끼리 공익활동 시간 초과분을 다른 변호사에게 양도하는 게 가능해, 로펌 소속 전관들은 변호사단 체 및 공익재단 봉사 등으로 공익활동을 인정 받은 다른 비전관 변호사들의 봉사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 10) 관련기사 - “급여 적지만 행복”...새내기 공익변호사 5명 첫발 (법률신문 2014. 3. 28.자)
“2~3년 새 상근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이 10여 명이나 된다. 지난 40년간 배출된 공익전담변호사가 10여 명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세다. (중략) 김용혁(39·변시 1회) 변호사는 지난 1월 재단법인 동천에 등지를 들었 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권법학회 1대 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동천에서 로스쿨생 공익활동지원 장 학금을 받기도 했다. 또 로스쿨 동기들과 ‘서울대 공익변호사 양성기금’을 만들어 김재왕(36· 변시 1회) 희망법 변호사와 정 민영(34· 변시 2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의 급여 일부를 후원하고 있다. (중략) 일간지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정민영(34·변시 2회)씨는 평소 관심 분야였던 ‘표현의 자유’의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첫걸음을 뗐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현재 생활에 만족한 다’며 ‘적은 급여이지만 서울대 로스쿨 공익변호사양성기금에서 2년 간 지원을 받기로 해 동기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11) 관련기사 - 지역 로스쿨생, 예비 법조인으로 공익인권활동에 ‘한걸음’ (법률저널 2014. 2. 21.자)
“지역 로스쿨 학생들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진행해낸 성과를 거 루는 장이 열렸다.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20일 오후 3시 ‘제3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최종발표대회’를 진행했다. (중략) 엄정한 심사 끝에 대상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빛자루에 희망을’ 팀이, 최우수상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Stay’팀, 우수상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미연’ 팀에게 돌아갔다. (중략) 대상을 수상한 전남대 로스쿨 ‘빛자루에 희망을’ 팀은 자신들과 밀접한 곳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를 못 받고 있는 ‘학교 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학교 청소노동자들과의 밀도 있는 면담을 통해 그들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현 상황예 서 이뤄지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요인을 분석하여 소책자를 발간하고 배포 및 홍보함으로써 세간의 관심을 이끌 어 냈다.”
- 12) “학부에서의 다양한 배경을 지닌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은 전통적인 법조영역 이외의 직역에서 활동할 준비도 되어 있다. 법률가의 직역확대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16곳에 40명, 그 중 서울시는 2011년에 2명에 불과했던 소속 변호사 수가 현재 24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법률홍닥터제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에 20 명의 변호사를 신규 채용했고 경찰청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명의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18대 국회에서 3-4명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가 국회의원보좌관으로 진출했는데 19대 국회에서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만도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에서도 적지 않은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최근 1년간(2014. 9.~2015. 8.)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에 게시된 채용공고 중 공공기관 관련 내역을 살펴보면 양정부의 행정부처(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및 각종 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비서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 교육청, 공기업, 연구기관, 금융기관, 각종 협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학병원, 방송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법률가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가까운 예로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는 교수를 제외하고도 본부 기획처에 4명, 인권센터에 3명,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1명, 공과대학 공학교육컨설팅센터 1명, 법학전문대학원 법무교육지원실 3명 등 12명에 이른다. 이 중 10명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들은 대학 학사업무의 전문화와 대학사회에서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송석윤, 전제논문, pp.56-57.)

- 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별표 참조.
- 14) “독일에서 법률가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취득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제2차 국가시험의 합격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원제가 실시되는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에서 제2차 국가시험 합격자수는 1960년 2,137명, 1970년 2,758명, 1980년 4,123명, 1990년 6,8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독일통일 10년이 지난 2000년까지는 10,366명으로 대폭 늘었고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13년에는 7,491명을 기록하였다. 독일에서는 대입 수능시험인 아비투어에 합격하면 누구나 법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국가시험 합격을 역시 제1차 70% 내외, 제2차 80% 정도의 수준에서 정해지므로 이러한 신규법률가의 수치는 시장의 장기적 수요공급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참고로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수는 약 162,700명이다. 이는 2003년도에 비해 약 50%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공증인을 주업으로 하는 법률가 1,500명, 판사 22,400명, 검사 5,600명, 기타 행정공무원 28,000명을 추가하면 약 220,000명의 법률가가 독일에서 전통적 의미의 법조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독일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약 340,000명에 달한다. 따라서 전체 법률가의 3분의 1 정도는 변호사나 국가공무원이 아니지만 법률지식이 필요한 영역(기업체,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송석윤, 전제논문, p.42.)

- 15) 관련기사 - 돈 없으면 고시도 힘들어요: 신림동 고시학원들 독과점 체제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07. 9. 8.자)
“사법시험 전문학원은 전국에서 신림동의 전문고시학원 세 곳이 거의 전부인 상황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주로 이곳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중략) 하지만 많은 수의 수험생이 단 세 곳의 학원을 이용하다보니 학원 사이에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됐다. 매년 같은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수강료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략) 강의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현재 고시학원 세 곳의 한 회당 수강료는 평균 1만 4천원 선. (중략) 윤하영씨(가명·법학부·02)는 ‘많게는 50회가 넘게 구성된 강의도 있어 단 1천원의 인상도 큰 부담이 된다’며 ‘학원마다 하루 1500~2천명 정도의 수험생이 강의를 듣고 있어 막대한 이윤이 나오는데도 납득할 만한 인상요인 없이 매년 수강료가 인상된다’고 비판했다. (중략) 학원비 인상은 고시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유한희씨(가명·고려대 법학과·02)는 ‘계속해서 오르는 학원비와 동영상 강의료가 부담이 되지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 16) 물론,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에서도 이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법학과 개설 교과목 수강 또는 학점은행이나 방송통신대학교 통신교육 이수 등을 통한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교과 학점 취득을 선결조건으로 정해둔 점은 있었음. 그러나 비법학 전공자들로 하여금 법학 교과목을 선이수하도록 강제하였던 제도는 정규적 법학교육의 대체제 제공이었다기보다는 한정된 시간 내에 추가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던 탓에 기존 전공교과목을 등한시하도록 하는 유인구조로 기능하였던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법학 교과목 선이수만으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에 충분한 대비가 될 수도 없었으므로 현행 로스쿨 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바의 정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함.

- 17) 관련기사 - [칼럼] 법조인이 되는 길 (정진섭 유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률저널, 2011. 8. 12.자)
“과거 법조계는 획일적 단일문화가 주류였습니다. 1등 문화가 오래 지배해 왔습니다. 특히 법원, 검찰에 임관할 적에는 성격 순서열이 평생을 따라다니다시피 했습니다. 재야법조도 그에 못지 않게 학연·지연·혈연이 강조되고, 소수 출신은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문화는 그런 획일적 문화가 아닙니다. 창의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며, 각 대학별 특성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 18) 관련기사 - [거세지는 사시촌치 요구] 법조인들이 말하는 로스쿨 ‘빛과 그림자’ 6가지 (서울신문, 2015. 9. 6.자)
“한 서울지역 중견 변호사는 ‘변호사 숫자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 변호사들 스스로 생존을 위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다’면서 ‘테크앤로와 유사하게 기존 로펌이나 변호사들의 관심이 덜했던 전문 분야에 뛰어드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 것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수도권 한 판사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검사나 판사가 생각지도 못한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로스쿨 제도가 기존의 법조 분야의 틀을 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 19) 관련기사 - [주목이사람] 대한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 김승열 변호사 (법률신문 2016. 2. 1.자)
- 20) 관련기사 - [거세지는 사시촌치 요구] 법조인들이 말하는 로스쿨 ‘빛과 그림자’ 6가지 (서울신문, 2015. 9. 6.자)
“로스쿨 제도를 통해 ‘법전’이라는 한 우물만 판 게 아닌,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양성됐다. 로스쿨 진영이든 반(反) 로스쿨 진영이든 대부분 법조인들이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부분이다. 대학에서 다양한 학과를 전공한 법조인들이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2013년 치러진 55회 사시 합격자들의 전공 비중은 법학이 81.1%, 비법학이 18.9%였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의사나 약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진 로스쿨 출신 검사들이 검찰에 보강되면서 그만큼 전문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도 ‘로스쿨에 들어오기 전 회계나 지적재산권, 의료 등에서 경력을 쌓은 검사들은 해당 분야에서 기존 검사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면서 ‘검사 개인의 특성에 맞춰 연관 부서에 보내 관련 사건을 맡도록 하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늘면서 전통적인 변호사의 영역을 뛰어넘어 변호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다양한 분야와 배경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 업계로 진출하고 일반 형사·민사 등 기존 변호사들이 장악한 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의 발굴에 나선 결과다.

법조인들이 뽑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다음카카오 등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거친 구태연 변호사가 2012년 설립한 로펌으로, 국내 정보기술(IT) 법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로펌의 주축은 IT를 전공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다.

- 21) 관련기사 - 국내 로펌, 미국·중국·러시아·동남아·중동 10개국 13개 도시에 해외 사무소 개설: 해외 시장 개척 가속화 (조선일보, 2016. 4. 27.자)

“국내 로펌이 신천지 개척에 나서고 있다. 목적지는 해외 법률시장이다. 그동안 우리 로펌들의 해외 진출 지역은 중국·동남아시아에 국한됐다. 그마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 차례 쓴 맛을 봐야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부쩍 달라졌다. ‘토종(土種) 로펌’ 소리를 듣던 국내 로펌들이 전 세계 로펌들의 각축장인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동까지 진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10대 로펌에 해외 사무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개국 13개 도시에 해외 사무소를 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71명의 한국인 변호사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뛰고 있다. (중략)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로펌의 성장이나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22) 관련기사 - 서울대·하버드 로스쿨, 교류협정 맺어 (머니투데이, 2012. 1. 26.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최근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과 학생 교류협정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두 학교는 오는 3월부터 교환학생으로 매년 같은 수의 학생을 선발해 1~2학기 씩 상대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된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추가 학비부담 없이 하버드대 로스쿨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본교 학점으로도 인정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하버드대 로스쿨이 국내 로스쿨과 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생들이 국제적 법률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6년 5월 현재 한상호, 정병석, 김재훈, 박철, 소순무, 임승순, 김두식, 노영보 변호사 등 8명의 현직 변호사를 겸임교수에 보하여 재학생들에게 실무와 연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현재 실무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소장 변호사들을 임상법학(legal clinic) 강사로 임용하여 강의를 운영하고 있음.

- 24) 관련기사 - [김영빈 파운트 대표] 똑똑한 로봇이 내 자산 관리: 저비용 고효율 로보어드바이저로 출사표... 김 로저스도 주목한 스타트업 (이코노미스트, 2016. 2. 8.자)

“파운트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스타트업이다. 김영빈(32) 파운트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2년 간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지난 해 4월 파운트를 설립했다. 그만큼 로보어드바이저의 잠재력을 크게 봤다. 평소 친분이 있던 미국의 ‘투자 귀재’ 짐 로저스(74) 로저스홀딩스 회장도 최근 파운트의 공식 고문을 맡기로 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중략) 파운트는 우리은행을 통해 2월부터 베타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눈앞의 고수익률이 목표는 아니다. 고성장 신화가 사라진 뉴노멀(New Normal) 시대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저성장, 저금리에 저출산까지 겹친 한국에선 앞으로 어떤 투자로도 압도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겁니다.’ 김 대표는 ‘파운트의 로보어드바이저는 좀 더 안정적인 패시브 펀드(Passive Fund) 위주의 자산 배분으로 어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우선 국내 시장에서 인정받은 다음, 내년에는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기 졸업생의 사례임.**

- 25) ‘누적 합격률’ = 출원인원 중 합격하는 인원의 비율

- 26) 이재협,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제56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27)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제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장학금과 학비장기대여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모든 로스쿨에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비율은 39.3%이며 그 대부분이 경제사정을 기준으로 배분되고 있다. 로스쿨 전체 등록금의 액수가 약 960억인데 정부가 기존에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지급되던 비용인 약 800억(1,000명×4,000만원×2년) 중 일부만 지원해도 이러한 비용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경제사정에 적합한 맞춤형 장학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직접 상담하고 개별적으로 지도하면서 가정형편상 사법시험 준비를 생각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소수자보호정책은 제도교육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송석운, 전계논문, pp.53-54.)

- 28) 최근 언론에 보도된 모 로스쿨 입시 부정 의혹에 관하여 부연하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입시 청탁 의혹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로스쿨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어 내려온 모종의 ‘카르텔’ 구조의 문제**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청탁 등의 행태는 **사법시험 출신 기존 법조인들 사이의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 ‘기수 문화’에 기인한 것일 뿐, 로스쿨 제도의 문제가 아님.** 따라서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근거로 로스쿨 제도 자체가 공격받게 되는 것은 부당함. 로스쿨 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존 법조인들의 ‘끼리끼리 문화’, ‘기수 문화’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임.

- 29) “하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의 **확실적인 기준으로 한 줄로 세우면 그 결과는 투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확실적인 기준이 공정한 것이고 특히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에서 320개의 객관식문제와 20점 만점의 체력장 성적만으로 모든 수험생을 한 줄로 세웠던 1980년대의 입시제도는 매우 투명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공정한 입시제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송석운, 전계논문, p.55.)

- 30) 관련기사 - 입시결과 공개가 로스쿨 의혹 벗겨줄 것...‘정성평가 비중 높여야’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로스쿨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뉴스1 2016. 5. 9.자)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로스쿨 교수협의회 상임대표)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로스쿨 입시 개혁 방향에 대해 투명한 입학사정 결과 공개를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해답으로 제시했다. 또 한 교수는 정성평가 비중 확대가 올바른 학생을

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 공개가 정성평가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중략) 지난 2006년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 연구 책임자였던 한상희 교수는 ‘미국의 경우 입학사정 결과 데이터와 등록금, 생활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 입시 사정 결과를 모두 공개하게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항들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략) 한상희 교수는 이번 교육부 조사 결과와 반응에 대해 ‘로스쿨 입시 과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투명하지 않아서 생기는 의혹’이라고 되짚으며 ‘로스쿨들은 의혹에 대해 변명하고 빠져나갈 것을 고민하지 말고 의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31) 관련기사 - [로스쿨 달라져야 한다 中] 변호사시험 위주 수업·과도한 등록금 부담 개선해야 (아시아투데이 2016. 1. 5.자)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가 배제된 변호사시험 관련 과목 위주의 수업진행과 과도하게 비싼 로스쿨 등록금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지방 로스쿨에선 특성화 과목의 수강률이 10%도 안됐다. 로스쿨 도입 당시의 특성화 취지에 맞지 않게 변호사시험 위주로 커리큘럼이 구성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로스쿨 측과 재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특성화 과목을 잘 마련해놓아도 소용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제5회 변호사시험의 응시 접수자는 3115명으로 이 가운데 2864명이 시험에 응시해 91.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올해 합격자 정원이 1500명인 점을 감안하면 합격률은 약 52%에 그칠 전망이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25%,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초 로스쿨 도입 취지였던 특성화 교육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32) 관련기사 - [300대 기업 법무팀 설문] 2015 대한민국 로스쿨 랭킹 (한경Business 2015. 12. 29.자)
 “서울대 로스쿨은 재일동포 실업가였던 학봉 이기학 선생을 기리기 위해 ‘학봉상’을 제정하고 올해 제1회 학봉상 논문 공모 및 연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문화 교류와 양국 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논문과 연구 계획을 공모했다. 한국과 일본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 시민도 다수 지원했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연구자,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는 것이 서울대의 설명이다. 서울대는 지난 8월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법이론 연구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연구센터를 통해 법철학·법정책학·법사회학·법사학·법인류학 등 기초법 분야를 한국의 법적 현실과 문화에 맞춘 학문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서울대는 정의·불편부당·도덕성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본 ‘정의·불편부당·도덕성 교육’항목에서도 1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올랐다. 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7월부터 ‘임상법학 1’ 수업을 선보였다. 총 6개 강좌로 개설된 임상법학 1 수업에서는 공익 소속을 난민 인권, 여성 인권 등의 분야로 나눠 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해 이해하고 인권 단체 실무자 또는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자리는 물론 실제 공익인권 소송 수행에 참여해 검토보고서·소송서면 등을 작성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 33) “2014년에 실시된 제56회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204명이었는데 합격자를 배출한 대학은 모두 31개교였다. 그중 상위 7개 대학의 합격자수가 146명이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의 합격자수는 경찰대 6인을 제외하면 19명... 합격자 중 고졸 이하는 물론, 3년제 이하 대학 졸업, 중퇴 또는 재학의 학력을 지닌 자 역시 한 명도 없고 전원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였다. 한국사회의 대학서열 구조 속에서 사법시험제도를 부분적으로 존치했을 때의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송석윤, 전개논문, pp.57-58.)